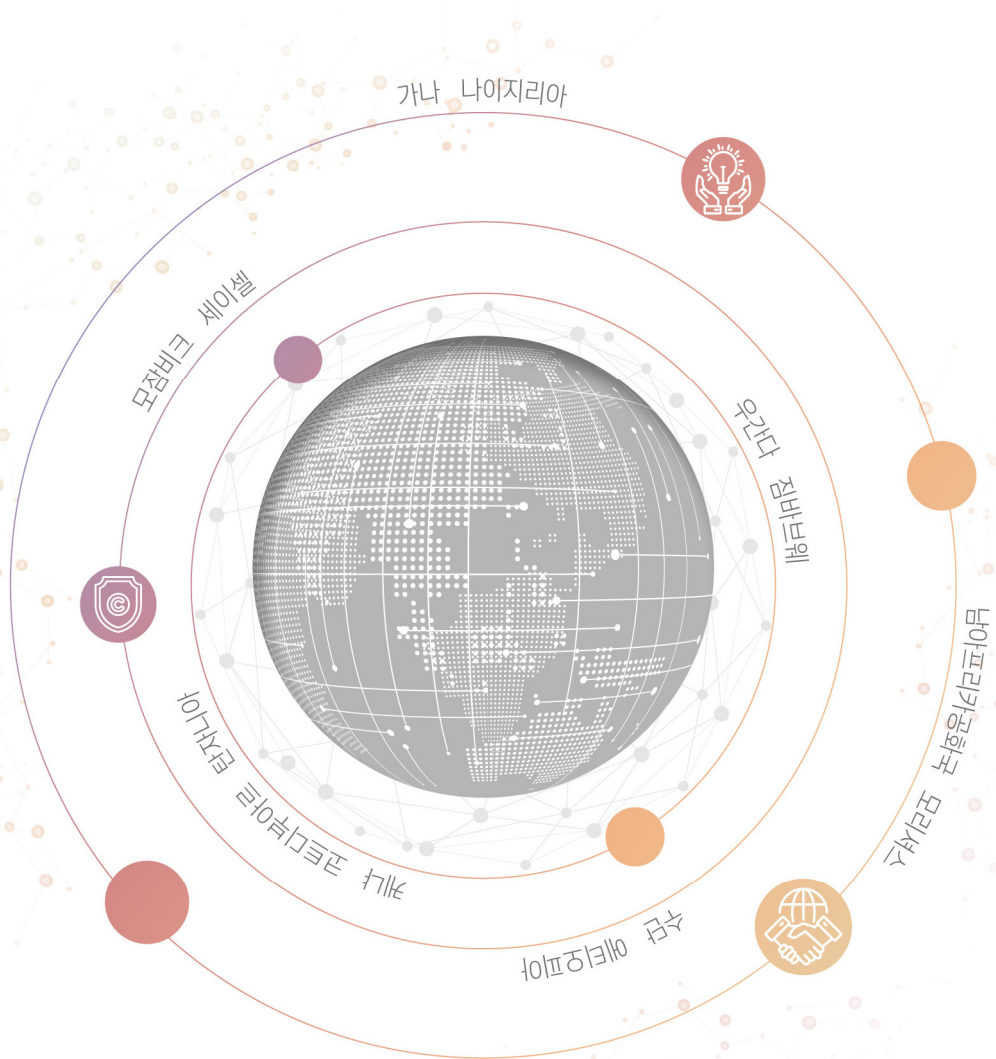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b>I. 가나</b>	<b>1</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3
<b>II. 나이지리아</b>	<b>25</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3
<b>III. 남아프리카공화국</b>	<b>45</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4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51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67
<b>IV. 모리셔스</b>	<b>71</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7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7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85
<b>V. 모잠비크</b>	<b>87</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8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93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08
<b>VI. 세이셸</b>	<b>111</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1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29
<b>VII. 수단</b>	<b>131</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3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3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46

---

**VIII. 에티오피아** **14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5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5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70
- 04. 기타..... 172

---

**IX. 우간다** **173**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7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7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91
- 04. 지식재산 관련 법률..... 192
- 05. 관납료..... 193

---

**X. 짐바브웨** **197**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9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05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19

---

**XI. 케냐** **221**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2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27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41
- 04.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245

---

**XII. 코트디부아르** **247**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4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52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66

---

**XIII. 탄자니아** **26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7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75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85
- 04. 지식재산관련 법령..... 286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I. 가나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3



## 1.1. 개요

가나에서의 특허 보호는 국내 출원 또는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RIPO: Afric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또는 PCT 출원으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 출원이나 ARIPO 출원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수 국가에 출원하려는 출원인은 국내 출원보다는 PCT 출원이나 ARIPO 출원을 많이 이용한다.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형식심사 뿐만 아니라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은 없고, 특허가 허여되면 심사관은 허여된 특허의 공보를 공고한다.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7년간 보호된다. 실용신안이 허여되거나 거절되기 전 어느 때나 특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특허 출원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나의 일반등록처(특허청)는 의류 디자인에 관한 출원만 처리하고, 비-의류 디자인 출원은 ARIPO로 이전되어 심사 후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최초 5년간 유효하며, 5년씩 최대 2회 갱신가능하다.

가나의 상표 제도는 다른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형식 및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공개 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자 혹은 실시권자가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는 등록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가나는 지식재산권법으로 특허법,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디자인(토포 그래프)법, 저작권법, 지리적 표시법 등을 두고 있다.

가나는 다음의 국제/ 지역 조약의 가입국이다.

- 1991 베른 조약
- 1984 하라레 의정서(ARIPO)
- 2008 마드리드 의정서
- 1997 특허협력 조약(PCT)
- 2006 WIPO 저작권 협약
- 2008 헤이그 협약
- 1978 루사카 협약(ARIPO)
- 1976 파리 조약
- 1976 WIPO 조약
- 1995 WTO/TRIPS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관련 법률

### 가. 지식재산 관련 기관

가나의 현 내각에는 표에 나타난 15개 부처를 포함하여 전체 38개의 부처가 있으며,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업무는 검찰 및 법무부(Ministry of Attorney General and Minister of Justice)에서 관할한다(2019년 3월 기준).<sup>1)</sup>

부처명	장관 (2019년 3월 기준)
국가안보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Albert Kan Dapaah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Alan Kyerematen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Ken Ofori Atta
보건부(Ministry of Health)	Kwaku Agyeman Manu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Dominic Nitiwul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mbrose Dery
식품·농업부(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Owusu Afriyie Akoto
외교·지역통합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Regional Integration)	Shirley Ayorkor Botchwey (MP)
검찰 및 법무부(Ministry of Attorney General and Minister of Justice)	Gloria Akuffo
지방정부·지방개발부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ural Development)	Hajia Alima Mahama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atthew Opoku Prempeh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John Peter Amewu
모니터링·평가부(Ministry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Anthony Akoto Osei
지역 재조직·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Reorganisation and Development)	Daniel Kwaku Botwe (MP)
국토·자원부(Ministry of Lands and Natural Resources)	Kwaku Asomah-Cheremeh

1) 외교부 자료

검찰 및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부서가 있으며, 이중에서 저작권청(Copyright Office)과 일반 등록처(Registrar-General's Department)가 지재권 업무를 담당한다.<sup>2)</sup>

Attorney-General's Department	General Legal Council
<b>Copyright Office</b>	Law Reform Commission
Council for Law Reporting	Legal Aid Scheme
Economic and Organised Crime Office	<b>Registrar-General's Department</b>

### 1) 저작권청(Ghana Copyright Office)

1985년에 설립된 저작권 사무소(Ghana Copyright Office)는 가나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부서로서, 2005년 저작권법(법 690) 제66조에 명시된 저작권 사무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청은 저작권 관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저작권법 66조에 따라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구현하고 저작권 관리를 제공
- 저작권 침해 사례의 조사 및 시정, 저작권 법원에 의해 해결되도록 유보되지 않은 분쟁의 해결
- 외부 저작권 협력업무
- 국가가 소유한 저작권을 관리
-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기타 업무 수행
- 저작권 저작물, 제작물, 출판물 및 협회 등록
- 일반 대중과 저작권자에게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2) [www.copyright.gov.gh](http://www.copyright.gov.gh)



저작권청의 연락처 및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명	Competent administration Copyright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홈페이지	<a href="http://www.copyright.gov.gh">http://www.copyright.gov.gh</a> , <a href="https://www.aripo.org/ghana">https://www.aripo.org/ghana</a>
주소	Private Mail Bag, Ministries Post Office, Accra - Ghana
전화	(233) 302 229190
팩스	(233) 302 229190
이메일	info@copyright.gov.gh
기관장	Ms. Yaa Attafua

## 2) 일반 등록처

일반 등록처는 식민지 시대에 1950년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부서의 임무는 특히 기업, 산업재산권, 결혼, 부동산 관리 및 공공 신탁 등록과 같은 법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재권 관리로 아이디어, 프로세스, 브랜드 또는 제품을 보호하고 비권리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법률 중에서 지재권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 디자인 법, 2003 [Act 660]
- 2) 상표법 2004 [Act 664]
- 3) 특허법 2003 [Act 657]

일반 등록처의 연락처 및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명	Competent administration Registrar General's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주소	GA-053-3087 Haile Selassie Avenue Ridge P.O. Box 118, Accra
전화	(233) 593 793 942
이메일	jemimamoware@gmail.com, graceissahaque@hotmail.com
기관장	Mrs. Grace Issahaque

3)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 일반현황

- 성격: 아프리카 정부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기구
- 연혁: 1976.12.9 Lusaka 협약에 의해 창설(1978 발효)  
.1981. ARIPO 사무국 설립
- 위치: 짐바브웨 Harare

나) 주요임무

- 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
- 특허 허여 및 상표·산업디자인 등록
- 허여된 특허 및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행정
- 중소기업, 정부, 연구기관, 발명자에 대한 정보제공
- 회원국 자문, 회원국 특허청 교육, 인식제고 활동

다) 회원국

- 가입국(Member State, 18개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리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르완다

라) Harare 프로토콜(특허·산업 디자인분야, '84.4.25 발효)

- ARIPO에 특허 허여, 산업디자인·실용신안 등록 권한 부여
- 단일 출원 및 ARIPO의 실체심사  
- (가입국)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ARIPO 회원국 가입

마) ARIPO 사무국 인원

- 현재 45명(특허 심사관:5+3(예정)명, 상표 심사관 4명)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바) ARIPO 사무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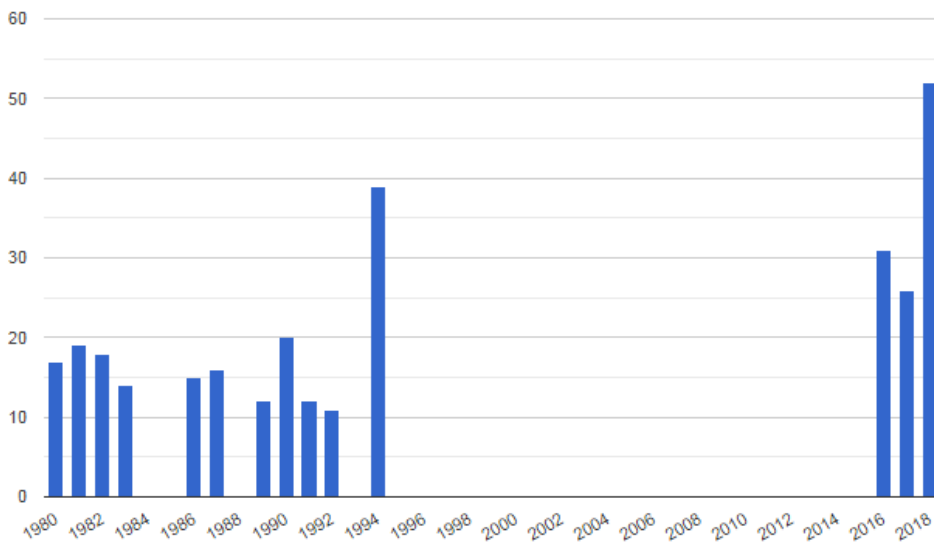
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가나는 지식재산권법으로 1965년에 상표법 No. 270, 2004년 상표법 No. 664, 1970년 상표규정 및 2003년에 지리적 표시법 No. 659가 있으며, 특허법으로는 1992년 특허법 No. 305, 2003년 특허법 No. 657 및 1996년 특허 규정이 있다. 디자인법으로 2003년 산업 디자인법 No. 660 및 2004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디자인(토포그래프)법 No. 667이 있다. 저작권법은 2009년 저작권법 No. 788로 개정된 2005년 디자인법 No. 690과 2010년 저작권 규정이 있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3)</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	-	-	-	-	-
2015	-	-	883	4,238	-	-
2016	14	17	900	4,627	453	156
2017	15	11	928	4,149	735	266
2018	13	39	833	4,515	796	92

아래 그래프는 가나의 지재권 현황 중 특허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2018년에 전체 302건의 특허가 조사되었으며, 이는 상표 등록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이나 디자인 대비 많은 건수이다(통계 조건: 파리 조약 및 PCT 특허 출원 포함).<sup>4)</sup>



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GH](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GH)

4) <http://www3.wipo.int/ipstats/index.htm?tab=patent>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가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견, 과학적 및 수학적 이론
- 미생물 이외의 식물 및 동물
- 사업을 하거나 순수하게 정신적 작용 또는 게임을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 수술 또는 요법에 의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해 행해지는 진단방법(보호대상의 제한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미적용)
- 인간, 동물, 식물의 삶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나 윤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는 발명
-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프로세스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프로세스
- 식물 변종

### 나. 등록요건

발명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출원인은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해당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개월 이내에 출원인 또는 이의 정당한 승계인이 발명을 개시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시 제출 서류

특허 출원인은 이하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다.

- 비-조약 출원
- 파리 조약 하에 최초 출원된 우선일이 유효일 되는 조약 출원
- 가나가 지정된 PCT 하에 국제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단계 출원
- 원 출원이 하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분할 출원
- 특허 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실용신안 출원

특허 보호는 국내 출원 또는 지정한 ARIPO(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 Afric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또는 PCT 출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가나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 출원이나 ARIPO 출원을 통해 가나 특허를 진행하면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수 국가에 출원하려는 자는 국내 출원보다는 PCT 출원이나 ARIPO 출원을 많이 이용한다. 하라레 의정서 하의 출원(즉, ARIPO 출원)은 가나 특허청에 출원하거나(이 경우, 진행을 위해 ARIPO 청으로 이관되어야 함), 하라레에 있는 ARIPO 청에 출원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세부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영어)
- 공식적인 도면(필요한 경우)
- 우선권 인증사본 서류(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 양도 서류(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등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는 상기서류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공개된 국제출원 사본
- 국제조사 보고서 사본
- 특허성에 대한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 사본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2) 대리인 선임여부

가나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3) 심사청구

형식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 모든 형식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후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가 개시된다. 실질 심사의 목적은 심사관이 국제조사 보고서,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 상응하는 외국 특허에 관한 조사 및 심사 보고서, 상응하는 외국 특허에 대한 최종 거절 결정, 외부 조사 및 심사관의 요구로 수행되는 조사 및 심사 보고서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특허가 허여되면 심사관은 허여된 특허의 공보를 공고해야 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은 특허가 제품인 경우,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를 제공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가 방법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방법 특허에 대해 상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양도, 자발적인 실시권 허용이 가능하나, 소유권 변동이나 실시권 계약은 특허청에 기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양수자 또는 실시자에 의한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단순히 사인된 양도 서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또는
- 라이선스 계약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2) 특허권 효력 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연차료는 출원일 기준으로 납부 가능하다. 연차료의 추가 납부에 대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가산료가 부과된다.

3)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는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어느 국가에서도 시장에 제품 출시, 실험적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출원일 전에 선의로 행해진 행동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침해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민사 또는 형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경고, 손해배상, 벌금, 구류 및 일반법에 제공된 모든 구제방법을 포함한다.

5) 강제실시권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3년, 이중 늦게 만료되는 날 까지 특허 발명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마. 심판제도**

특허청장(Registrar)은 특허법(Patent ACT) 2003 제657호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행정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Registrar)이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일반적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sup>5)</sup>

특허법(Patent ACT) 2003 제657호의 해당 조항에 언급된 행위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수행한 사람은 2,000 penalty units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바. 수수료**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 1년 후부터 매년 특허청에 연차 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 소정의 할증료 납부시 연차 수수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허용된다. 연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이 철회되거나 특허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5) Ghana Patents ACT, 2003 (ACT 657)



## 2.2. 실용신안 증명서

새롭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증명서를 제공한다.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만료된다.

실용신안이 허여되거나 거절되기 전 어느 때나 특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사하게 특허 출원은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은 선 또는 색치의 조합, 선 또는 색채가 관련되거나 삼차원의 형태 또는 재료로 정의된다. 의류 디자인은 조합, 형태 또는 재료가 산업품 또는 수공품에 특별한 외관을제공하며 산업품 또는 수공품용 패턴으로 작용하는 산업 디자인이다.

### 나. 등록요건

#### 1) 등록되는 디자인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공지된 디자인 또는 공지된 형태의 조합과 상당히 상이하면 신규로 간주한다. 2003년 산업 디자인법 제660호가 제정되었지만 실행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나의 일반 등록처(즉, 특허청)는 의류 디자인에 관한 출원만 처리하고 있다.

가나 일반 등록처에 출원된 비-의류 디자인 출원은 향후 심사 처리를 위해 ARIPO로 이전되고 ARIPO에 의해 심사되어 등록된다. 가나가 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나를 지정하는 ARIPO 출원을 통해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나는 디자인의 국제 규제를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했지만, 2003년 법은 헤이그 등록 시스템의 실행 규정에 대해서 제공하고 않고 있다. 또한 공중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

2)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인 세부 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양도 서류(출원인 창작자가 아닌 경우)
- 디자인 표현
- 우선권 서류의 인증 사본(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3) 출원인

출원인은 창작자 또는 이의 정당한 승계인이다.

4) 우선권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조약국의 우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디자인의 공개가 출원인이나 정당한 승계인에 위한 행위이거나 제 3자에 의한 남용의 결과인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출원에 대해 신규성과 디자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

1) 보호기간

디자인 등록의 최초 기간은 5년이며, 갱신료를 지불하면 5년씩 2회 연장된다. 늦은 갱신료 납부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가산료가 청구된다.

2) 디자인 등록의 효과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이용하고 타인에게 디자인을 이용하게 허락할 권리를 갖는다. 이용은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또는 이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입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3) 양도 및 라이선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양도하고 자발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소유권 변동이나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처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법적 효과가 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양도인 또는 라이선서의 위임장
- 단순히 사인된 양도서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단순히 사인된 라이선스 계약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4) 침해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민사 또는 형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경고, 손해배상, 벌금, 구류 및 일반법에 제공된 모든 구제방법을 포함한다.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의 보호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및 집합 상표이다. 상표는 개인 이름, 문자, 숫자 및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표시의 조합이다.

### 나. 등록요건

동일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나에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상표 또는 상표명의 번역을 구성하는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색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실제 사용에서 색채의 사용은 허용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가나에서 유명하고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은 출원의 상표 사용이 유명 상표권자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우선권 서류

파리 조약 또는 WTO 회원국 국민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의 인증 사본은 가나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2)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인 세부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보호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상표의 인쇄물
- 우선권 서류 인증사본(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3) 분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가 적용된다. 각각의 분류에 대해 각각 출원해야 한다.

### 4) 심사

형식 심사 및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출원이 받아들여지면 공개된다.

### 5) 이의 신청

공보에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해 2개월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을 때
- 상품명일 때
- 당해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지 않을 때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유래, 본성, 또는 특성에 대해 대중 또는 무역서클을 오도할 때

- 국내 또는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요소, 문장, 깃발, 엠블럼, 명칭, 공식적 표시, 특징과 동일하거나 모방하거나 포함할 때
- 유명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다른 기업의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또는 상표명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거나 이의 번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가나에서 유명하고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지는 않지만 출원의 상표 사용이 유명 상표권자와 관련이 있다고 암시하여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출원 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상표가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경우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등록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10년간 연장된다. 이전 상표법 하에 등록된 상표권은 원 등록일 또는 최종 갱신일로부터 14년 동안 연장되며 갱신 시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따라 재분류된다.

### 2) 상표의 취소/무효

고등법원은 상표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불사용의 경우, 등록관은 등록에서 등록을 제거할 수 있다.

### 3) 상표의 취소/무효 사유

고등법원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을 증명하면 상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에 사용되는 보통명사가 될 때 무효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상표는 불사용의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있다.

### 4) 사용의무 및 무효

소유자 또는 실시권자가 계속해서 5년 동안 등록된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는 등록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소유자가 상표를 포기할 의사 없이 상표사용을 입증할만한 특수 상황이 있으면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양도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소유권 변동은 등록될 때까지 제 3자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양수인의 사인된 위임장
- 양 당사자가 사인한 양도 서류 또는 인증 사본

6) 라이선싱/등록 사용자

상표의 라이선싱은 가능하며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될 때 까지 제3자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라이선서의 사인된 위임장
- 양 당사자가 사인한 라이선스 계약 서류 또는 인증 사본

7) 등록에 의한 권리

상표 등록으로 상표권자는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등록된 소유자의 권리는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어 혼동이 야기되는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지의 사용에까지 미친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면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8) 상표의 침해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당해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된다.

마. 비용

- 상표 검색 : \$ 110.00
- 상표 신청 : \$ 200.00
- 상표 인증 : \$ 200.00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은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기본 권리로, 해당 작품의 작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야 하며, 저작권은 아이디어, 개념, 과정, 방법, 또는 자연과 유사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저작자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문화적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되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학 및 예술 작품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소설, 동화책, 영화 대본, 정기 간행물, 기사 등의 책
- 회화, 드로잉, 로고, 조각, 석판화, 건축 드로잉 등 예술 작품
- 음악 및 사운드 녹음
- 영화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
- 파생 작품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작가는 저작권의 제1 소유자이며 작품과 관련된 독점적 경제적 권리와 유일한 인격권을 갖는다. 경제적 권리는 다음을 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포함 한다.

- 작품의 재생산
- 작품의 번역, 각색 또는 배열 또는 변형
- 작품의 대중 공연, 방송, 작품의 대중과 통신
- 작품의 복제의 배포-작품의 복제의 대중에 상업적 대여

### 다.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저작권은 작가의 생애 동안과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시청각 작품 또는 사운드 녹음의 경우 보호 기간은 70년이다. 인격권은 영원히 지속된다.

2) 양도 및 라이선싱

경제적인 권리는 양도 가능하며 인격권은 작가에 계속 남아 있으며, 경제적인 권리는 라이선스할 수 있고 라이선스는 구두 또는 서면일 수 있다.

3) 저작권 보호의 예외

저작권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재생산, 번역물을 만들 때, 출처와 저자가 인정되는 인용을 위해 사용할 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 보호가 제한된다.

라. 등록요건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에서 제시한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캐릭터 원본
- 2) 직접 또는 장치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
- 3) 시민 또는 일반적으로 가나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생성됨
- 4) 가나에서 처음 출판되거나 국외에서 출판된 경우, 출판된 후 30일 이내에 가나에서 출판되어야 함
- 5) 가나에 관한 저작물이어야 하며,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부여할 의무가 있어야 함

마. 취득절차, 등록 기간

저작물 등록은 음악, 책, 영화, 로고, 그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저작권 보호 작품을 등록한다. 등록은 자발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 1) 작업 기록의 유지 목적
- 2) 소유자 권리의 홍보 목적
- 3) 지식재산의 소유권 및 인증에 대한 증거 제공

또한 저작권청은 저작물의 보관소 역할을 하며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한 자는 작품 사본이 부족한 경우 저작권청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예로 가나의 2017년 저작권 등록 통계를 나타내었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일련 번호	카테고리	등록수
1	문학 작품	429
2	음악 / 사운드 녹음	424
3	로고	59
4	시청각 작품	48
5	예술 작품	24
6	컴퓨터 소프트웨어	11
합 계		995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때 신청자는 유효한 신분증(예 : 주민등록증, 여권, 유권자 ID 또는 DVLA 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 1) 사무실에 작품 사본 2부 제출
- 2) 소정의 수수료 지불
- 3) 등록 양식 작성
- 4) 등록증은 30일 이내에 발급됨

## 바. 비용

저작권 등록비는 한번 지불하며, 갱신 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수수료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다.

일련 번호	설명/작업 유형	수수료(GH ¢)
1	등록 양식 판매	10.00
2	문학 작품	40.00
3	뮤지컬 작품 / 음성	30.00
4	심벌 마크	100.00
5	예술 작품	60.00
6	시청각 (영화 뮤직 비디오 등)	60.00
7	컴퓨터 소프트웨어	150.00
8	분쟁 해결	25.00
9	검색 요청	20.00
10	세부 사항 수정 요청	20.00
11	인증된 실제 사본 요청	20.00

### 3.1. 행정구제

#### 가. 세관 집행

특히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에 관련이 되는 기관으로는 가나 조세 당국의 세관과가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세관에 의한 효과적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세관 직원은 침해물품을 포함하는 선적이 있다고 생각되면 국경에서 그 선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세관 직원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 이외에 침해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저작권 분쟁은 예를 들어, 작가와 출판사 또는 각본 작가와 영화 제작자 사이에서 특정 저작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당사자 간에 종종 발생한다. 저작권청(Ghana Copyright Office)은 공식적인 법원 시스템이 아닌 대체 분쟁 해결절차(ADR)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권리 보유자는 저작권청에 신청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 3.2. 형사구제

가나 경찰 서비스(Police Service)에는 범죄 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CID)의 상업 범죄 조직(Commercial Crime Unit, CCU)이 있다. 가나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침해 물품에 대해 권리자는 CCU에 형사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CCU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조사한다. CID는 신속한 대응 조직이 있어서 위조제품의 빠른 전파를 방지할 수 있다. 형법 1960은 지식재산의 위조를 포함하여 위조의 유형을 기재하고 있다. 특허법 하에 침해죄를 지은 자는 최대 2년의 구금에 처해진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Ⅱ. 나이지리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43



### 1.1. 개요

나이지리아의 특허는 현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출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나이지리아 지식재산청은 별도의 실체 특허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 진행 중인 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대상에 되는 디자인은 선, 색채 또는 이 둘의 조합 및 색채와 삼차원적 형태를 의미하며, 디자인 심사 역시,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디자인이 공공질서/윤리에 반하는지를 심사하여 충족되면, 해당 디자인 출원은 등록되고 등록 인증서를 부여한다.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방식 및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이의 신청은 공보에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상표 출원은 현지 IP 에이전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전자적(electronically)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 전자 등록 시스템(NCeRS, 저작권 eRegistration)은 저작물 창작자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은 1990년 나이지리아 연맹의 저작권법 Cap 68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나이지리아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나이지리아 저작권 위원회이다. 나이지리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 인접권으로는 공연 권리와 민속 표현에 대한 권리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다음의 국제/지역 조약의 가입국이다:

- 1993 베른 조약
- 1963 파리 조약
- 2005 특허협력 조약(PCT)
- 2005 특허법 조약
- 1993 로마 조약
- 1995 WIPO 조약
- 1995 WTO/TRIPS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관련 법률

### 가. 지식재산 관련 기관

지식재산관련 기관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과 지식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이 있으며, 저작권청은 정보문화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소속이다. 나이지리아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저작권청 소속의 나이지리아 저작권 위원회이다. 기관별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다.

#### 1) 저작권청(Copyright Office)<sup>6)</sup>

기관명	Competent administration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NCC) Federal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홈페이지	<a href="http://www.copyright.gov.ng/">http://www.copyright.gov.ng/</a>
주소	Federal Secretariat Complex, Phase 1, Annex II, Ground Floor, Shehu Shagari Way, Maitama, P.M.B. 406 Garki, Abuja-FCT, Nigeria
전화	(234) 70 9881 2628 (234) 855 958 357
이메일	<a href="mailto:info@copyright.gov.ng">info@copyright.gov.ng</a>
기관장	Mr. John Ohireime Asein

#### 2) 지식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청은 산업무역투자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소속이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명	Competent administration Commercial Law Department Trademarks, Patents and Designs Registry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홈페이지	<a href="http://www.iponigeria.com/#/">http://www.iponigeria.com/#/</a>

#### 3) 상표 등록처(Trade Mark Registry)

기관명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주소	Block D, Room 239, Old Federal Secretariat, P.M.B. 88, Area 1, Garki-Abuja, Nigeria

6) [https://www.wipo.int/directory/en/contact.jsp?country\\_id=128&type=ADMIN](https://www.wipo.int/directory/en/contact.jsp?country_id=128&type=ADMIN)

4) 특허 및 디자인 등록처(Patent and Design Registry)

기관명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주소	Block D, Room 231, Old Federal Secretariat, P.M.B. 88, Area 1, Garki-Abuja, Nigeria
전화	(234) 803 334 8806 (234) 803 320 4663
이메일	Trademarks Registry: iponigeria@gmail.com Trademarks Registry: infortrademarknigeria@gmail.com Patents and Designs Registry: iponigeria@yahoo.com Patents and Designs Registry: patentsanddesigns@gmail.com

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나이지리아는 상표법으로 1967년 상표법 No. 29(나이지리아 연방법 chapter 436, 1990) 및 1967년 상표규정이 있으며, 특허법으로는 1970년 특허 및 디자인법 No. 60(나이지리아 연방법 chapter 344, 1990) 및 1971년 특허 규칙이 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1970년 특허 및 디자인 법 No. 60(나이지리아 연방법 chapter 344, 1990) 및 1971년 디자인 규칙이 있고, 저작권법으로는 1992년 저작권 개정 법령 No. 98 및 1999년 No. 42에 의해 개정된 1988년 저작권법 No 43(나이지리아 연방법 chapter 68, 1990) 및 1999년 저작권 규정(보안장치), 1999년 저작권 규정(비디오 대여), 1993년 저작권 규정(수집 사회, Collecting Societies)이 있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7)</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	-	-	-	-	-
2015	-	-	-	-	-	-
2016	85	150	-	-	640	59
2017	100	180	-	-	910	63
2018	120	218	-	-	1,146	26

7)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NG](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NG)

## 2.1. 특허

특허 보호는 국내 출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PCT의 가입국이며 PCT 국내 단계 출원이 나이지리아 특허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수수료는 NGN 13,000이다.

### 가. 보호 대상

다음과 같은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다:

- 식물 또는 동물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과정(미생물학적 과정 및 이의 결과물은 제외)
- 공공의 질서 또는 윤리에 반하는 발명의 공개나 이용
- 과학적 자연의 원리 및 발견

### 나. 등록요건

#### 1) 등록 가능한 발명

발명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2) 출원인

출원인은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해당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3) 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발명자 또는 이의 정당한 승계인이 발명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람회에 전시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 취득절차 및 비용**

**1) 출원 시 제출 서류**

특허 출원인은 이하의 방법을 통해 나이지리아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 나이지리아 특허청에 직접 출원
- 파리 조약 하에 최초 출원된 우선일이 유효일이 되는 조약 출원
- 나이지리아가 지정된 PCT 하에 국제 출원을 기본으로 국내 단계 출원
- 원 출원이 하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분할 출원 중 하나로 출원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세부사항
- 위임장(단순히 사인된)
- 영어 명세서(청구항, 도면, 요약서를 포함)
- 우선권 서류 인증사본(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 양도 서류(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단순히 사인된) 등

**2) 대리인 선임여부**

외국인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3) 조약 우선권 주장**

조약국에 특허 출원한 출원인은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심사**

실체 심사는 없으며 모든 방식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가 허여된다.

**5) 이의신청**

보류 중인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없다.

**6) 공개**

심사 후에, 필요한 요건이 만족되면 심사관은 특허를 허여한다. 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한 후에, 허여된 특허의 상세 사항은 특허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7) 출원 비용

특허 청구항 및 기술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이지리아 특허출원은 대체적으로 미화 1,235 USD가 소요된다고 한다.<sup>8)</sup>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타인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 특허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
- 판매나 사용을 위해 제품을 비축하는 것
- 특허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
- 특허된 프로세스로부터 직접 얻은 제품에 대해 상술한 행위를 하는 것

### 2)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

상술한 권리는 특허의 우선일 출원일 전에 선의로 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3) 특허권 효력 기간

나이지리아에서 얻은 특허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는 규정된 연차 갱신 수수료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다. 매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4) 양도 및 라이선스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양도, 자발적인 라이선스 허용이 가능하나,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청에 기록되지 않으면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단순히 사인된 양도 서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또는
- 라이선스 계약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8) [https://www.google.com/search?biw=1680&bih=932&sxsrf=ALeKk00r5BynKfHa8eEeLj0yUeVWwOzSgA%3A1603860010687&ei=KvaYX-jCKYLO-QaJo5R4&q=nigeria+patent+office&oq=Nigeria+patent+of&gs\\_lcp=CgZwc3ktYWIQARgAMgUIABDLATIFCAAQywyEYBAgAEB46BAgjECc6BwgAEBQqhwJQgR9YpSZg4jNoAHAAeACAAAYcCiAHJBjIBBTauMi4xmAEAoAEBqgEHZ3dzLXdpesABAQ&sclient=psy-ab#spf=1603860119685](https://www.google.com/search?biw=1680&bih=932&sxsrf=ALeKk00r5BynKfHa8eEeLj0yUeVWwOzSgA%3A1603860010687&ei=KvaYX-jCKYLO-QaJo5R4&q=nigeria+patent+office&oq=Nigeria+patent+of&gs_lcp=CgZwc3ktYWIQARgAMgUIABDLATIFCAAQywyEYBAgAEB46BAgjECc6BwgAEBQqhwJQgR9YpSZg4jNoAHAAeACAAAYcCiAHJBjIBBTauMi4xmAEAoAEBqgEHZ3dzLXdpesABAQ&sclient=psy-ab#spf=1603860119685)

5) 강제 실시권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에 강제 실시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허된 발명이 나이지리아에서 실시되지 않을 때
- 실시 정도가 합리적인 기간으로 특허된 발명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
- 나이지리아에서의 실시가 수입에 의해 방해될 때
- 나이지리아에서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의 구축이 실시 부족에 의해 방해될 때

후속 특허가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를 구성하고 상이한 산업 목적에 필요한 반면,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 후속 특허를 실시할 수 없을 때 강제 실시권이 또한 허용될 수 있다.

6) 특허 무효

이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법에 정한 이유로 특허 무효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 명세서 기재가 특허를 받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때
- 발명의 설명 기재가 발명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고 및/또는 클레임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거나 클레임이 발명의 설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이전 출원 또는 이전 외국 우선권에 대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나이지리아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

7) 침해

나이지리아에서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시 이외 타인의 특허된 발명의 이용은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연방 고등법원에 침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금지 명령, 손해 배상, 및 이익 환수를 포함한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2.2.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나이지리아에서 보호되는 디자인은 선, 색채 또는 이 둘의 조합 및 색채와 삼차원적 형태를 의미하며 산업적 프로세스에 의해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패턴 또는 모델로 사용되는 것이다.

### 나. 등록 요건

등록 가능한 산업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공식적으로 인정된 박람회 등에 전시한 후에 6개월 내에 출원된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디자인의 로카르노 국제 분류(Locarn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esign)는 적용되지 않으나, 법은 출원 시에 디자인이 적용될 제품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은 나이지리아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또는 조약국에 먼저 출원한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조약 국내 출원이 있다.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은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나이지리아에 출원해야 한다.

#### 1) 대리인 선임

외국 출원인은 서비스를 위해 국내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 2) 출원 시 제출 서류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세부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출원인의 등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언문 또는 양도 서류
- 디자인을 나타내는 적합한 그래픽 표현 또는 이의 표본
- 우선권 서류의 인증사본(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이 동일한 종류이거나 동일한 부류인 경우, 하나의 출원은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법은 ‘봉인된 표지(sealed cover)’ 하의 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비밀로 유지되며, 임시 인증서가 발행된다. 12개월 후 담당관은 출원을 심사하여 출원이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등록 인증서를 부여한다.

### 3) 심사

심사관은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디자인이 공공질서/윤리에 반하는지를 심사하여 충족되면, 디자인은 등록되고 등록 인증서를 부여한다. 단,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디자인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은 없다. 등록 후 언제든지 이해 당사자는 디자인이 신규성이 없거나 공공질서/윤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방 고등법원에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라. 디자인권의 내용

신규 디자인의 등록은 소유자에게 타인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제공한다.

- 제품의 제조에 디자인을 재생산하는 것
- 디자인을 재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고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

### 마.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디자인 등록의 최초 기간은 5년이며,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두 번의 5년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늦은 갱신 수수료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2) 양도 및 라이선스

디자인권은 양도될 수 있으며 라이선스될 수 있다.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해 효과가 있다. 등록 서류는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과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원본 또는 인증사본)이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인증마크이다.

### 나. 등록요건

상표는 구별 가능한 특징을 포함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타 제품, 서비스와 구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상표는 장치,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이름, 사인, 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상표 소유주가 색채가 다른 상표를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상표는 하나의 등록 상표 하에 시리즈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조약 우선권

1967년 법은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제공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상표청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허용한다.

#### 2) 대리인 선임

외국인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3) 출원 시 제출 서류

상표등록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상표청에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인 세부 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상표의 전자인쇄물

#### 4) 심사

방식 및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5) 출원공개제도

이의신청을 위해 상표 출원은 공개된다.

6) 이의 신청

상표 출원이 일단 수리되면 출원은 이의 신청을 위해 공개된다. 이의 신청은 공보에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1달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의 신청인은 1달의 증거 제출 기간을 갖는다. 이의 신청인이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의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표가 식별가능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또는 사용에 의해 식별되도록 적응되지 않거나 필수적인 특별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상표의 일부가 법원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기만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것 같은 요소를 가질 때
- 상표가 법 또는 윤리에 반하는 경우
- 상표가 추악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질 때
- 상표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거나 기만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표는 등록원부에서 삭제되고 상표 등록은 취소된다.

7) 상품의 분류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는 국제 분류(Nice Agreement)를 적용할 수 있다. 상표 규정 스케줄에 포함된 분류로 서비스 분류를 통합시키는 규칙이 2007년에 시작되었다. 나이지리아는 단일-분류 출원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보호를 요하는 각각의 분류마다 별도로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8) 전자출원

상표는 현지 IP 에이전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전자적(electronically)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전자 출원은 기존 종이출원의 수동 처리와 함께 제공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원인은 수수료 납부 당일에 자동으로 전자출원에 대한 확인 통지를 받게 되며, Quickteller.com을 통해 직불 카드를 사용하거나 Skye Bank Plc에서 결제할 수도 있다. 전자 출원의 이점 중 하나는 상태 확인 모듈로써 확인서에 제공된 온라인 지원 ID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원서의 진행경과를 추적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 출원이 권장되고 있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9) 소요시간

나이지리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상표등록은 등록 출원일로부터 7년간 유효하며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로 14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수수료에 대해 1달간 유예기간이 있다.

### 2)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상표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 이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기만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를 구성한다.

### 3) 사용 의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의무가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즉,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청 또는 법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상품에 사용하려는 선의의 의도 없이,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경우
- 취소 신청 전 1달 전까지 5년 또는 그 이상 연속해서 상표를 연관된 상품에 선의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 4) 양도

상표는 양도가 가능하며 제 3자에 대해 효과가 있으려면, 양도는 원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양수인의 위임장
- 양도 서류



5) 라이선싱/등록 사용자

자발적인 라이선싱 및 등록 사용자 계약이 가능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소유자의 위임장
- 등록 사용자 계약
- 법정 선언 및 사건 진술

2.4. 저작권

가. 개요

1970년 법령 61호는 나이지리아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는 최초의 원주민 법적 문서였다. 이 법령은 나이지리아 내전이 끝난 직후에 공포되었지만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첨단 기술 제품의 유입을 예측하지 못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많이 만들었다.

원래 저작권 소유자였던 예술가, 작가 및 제작자의 압력이 증가하여, 당시 연방 군사 정부는 1988년 저작권 법령 47호를 법으로 공포했으며, 현재는 연방의 저작권법 C28 법률로 존재한다. 적절하게 기술된 이 법은 창의적 저작물의 포괄적인 보호를 통해 저자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을 뿐 만 아니라 처음으로 나이지리아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문제를 관리하는 저작권 위원회를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당시 나이지리아 국군 총사령관 이브라힘 바방 기다 장군(GCFR)은 1989년에 이사회와 함께 시작된 나이지리아 저작권 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본 위원회는 나이지리아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문제의 관리,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 후 나이지리아 저작권법은 저작권(개정) 법령 (제 98호)에 의해 두 번 개정되었다. 1992년 저작권법 개정(1998년 법령 47호) 이전에 나이지리아 저작권 위원회는 나이지리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행정 기관의 역할을 대부분 수행했으나, 법의 규정을 집행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1992년 법 개정안의 결과 중 하나는 법을 집행할 특정 권한을 가진 저작권 검사관을 임명하기 위한 상기 법의 섹션 32A(현재 나이지리아의 Cap C28 법률 연맹의 섹션 38)에 있는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조항이었으며, 법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저작권 검사관은 경찰법에 따른 경찰의 권한과 유사한 저작권법 집행 권한을 갖게 되었다.

2006년 2월 연방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연방 대통령은 정부 기관과 Parastatals의 조화에 관한 2000년 연방 정부 백서를 실행하여 나이지리아 저작권 위원회 감독 책임을 연방 문화 관광부에서 연방 법무부로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의 목적은 위원회의 권한을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사법 행정과 적절하게 조정하고 저작권 시스템의 국제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것이다. 행정, 집행 및 규제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아부자에 본부를 두고 나이지리아의 6개 지정학적 지역에 9개의 구역 사무소와 5개의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다.

#### 나.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문학 작품
- 음악 작품
- 미술 작품
- 촬영 필름
- 사운드 레코딩
- 방송

문학작품은 소설, 이야기, 시적 작품; 연극, 무대 연출, 필름 시나리오, 방송 스크립트, 안무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교과서, 논문, 에세이, 기사, 백과사전, 사전, 디렉터리, 편지, 리포트, 메모, 강연, 연설 및 설교, 법원 결정을 제외한 법 리포트, 데이터의 서면 표 및 편집을 포함한다.

미술작품은 그림, 드로잉, 에칭, 리소그래피, 목판화, 조각, 인쇄물, 지도, 계획, 다이어그램, 사진; 건축 작품, 예술적 장인의 작품을 포함 한다.

#### 다.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소유권은 원 저자에게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에 고유한 경제적인 권리와 인격권이 있다. 경제적인 권리는 이전이나 라이선싱될 수 있으나 저작 인격권은 저자에게 남아 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자임을 주장할 권리, 작품의 왜곡, 절단, 또는 명예나 평판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경멸적인 행동도 반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자의 일생 동안 양도할 수 없으며 이전할 수 없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는 아래와 같다.

- 어떠한 재료 형태로든 재생산하는 것
- 작품을 발행하는 것
- 작품을 공중에 공연하는 것
- 작품을 번역하고, 재생산하여 공중에 공연하는 것
- 영화 필름 또는 작품의 녹음을 만드는 것
- 판매, 대여, 임대, 고용에 의해 작품의 복사를 대중에 배포하는 것
- 작품을 방송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것
- 작품의 각색물 또는 번역물을 만드는 것
- 각색물 또는 번역물에 대해 상술한 행위를 하는 것

### 라.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문학, 음악, 및 미술 작품(사진 제외)의 경우, 저작권은 저자의 일생동안 및 사후 70년이다. 다른 작품, 즉 영화 필름 및 사진, 사운드 레코딩 및 방송은 제작일 또는 공중에 이용가능한 때부터 50년이다.

#### 2)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싱

저작권은 양도에 의해 이전될 수 있으며, 라이선싱 될 수 있다. 라이선싱은 서면을 통해야 하고 양도인 또는 라이선서의 사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 3) 저작권 보호의 예외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으로부터 배제된다.

- 과학 연구, 개인적 사용, 비평 및 리뷰를 목적으로 상술한 행위를 하는 것
-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 작품의 필름 또는 방송에 포함되는 것
-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 작품의 복제품을 재생산 또는 배포하는 것
- 학교 또는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특정하게 사용하는 것

## 마. 등록요건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작품은 작품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작품이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면 저자는 나이지리아 시민이거나, 나이지리아에 체류하거나 보통 거주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품은 나이지리아에서 창작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는 나이지리아가 가입한 조약국 국민 또는 거주자, 이들 국가, UN, OAU(Organisation of African Unity)에서 처음 공개된 작품까지 확대된다.

최근에 구축된 나이지리아 저작권 전자 등록 시스템<sup>9)</sup>(NCeRS, 저작권 eRegistration)은 저작물 창작자 또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e-Registration은 저작권 고지의 기존 데이터 수집 체계를 확장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는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의 정보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와 더 폭 넓은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위원회 웹 사이트([www.copyright.gov.ng](http://www.copyright.gov.ng)) 링크 또는 전자 등록 포털([www.eregistration.copyright.gov.ng](http://www.eregistration.copyright.gov.ng))에서 직접 NCeRS 포털에 로그인하고 계정을 만들면 된다.

## 바. 비용

e-Registration System(NCeRS)으로 완성된 양식은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인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 저작권 등록비/이전 등록 : 10,000 NGN
- 인증서의 인증된 True Copy 발급 : 5,000 NGN
- 인증된 실제 사본 양식 발행 : 5,000 NGN

수수료는 나이지리아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 나이지리아 나이라 또는 미국 달러로 지불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9) 데스크 전화 번호: 08183413611, 09019011230

### 3.1. 사법구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이익의 계정, 침해 물품의 인도를 포함한다.

#### 가. 상표 침해의 구제

상표 침해가 발생하면 상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 금지 명령
- 손해배상
- 침해 상품의 인도 및 /또는 파괴
- 침해 상표 제거

손해배상 청구는 이익 손실을 이루는 손해에 대한 청구이며 로열티 손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 나. 디자인 침해의 구제

등록된 소유자 이외의 타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이용하면 침해를 구성한다.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는 소송은 연방 고등법원에서 시작하며 구제수단으로는 침해 금지, 손해 배상 및 일실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유보된 행동을 하는 것 또는 침해 물품임을 알고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이익의 계정, 침해 물품의 인도를 포함한다. 특정 침해 행위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 3.2. 형사구제

특정한 침해의 경우 형사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로는 벌금 및 구금이 포함된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Ⅲ. 남아프리카공화국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4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51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67



# 01

## 지식재산제도 개요

### 1.1. 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약칭)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고, ①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진보성을 가지는(진보성) ③ 신규의(신규성)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아공에는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제도가 없으며, 완전 명세서에서 기술되거나 클레임 된 발명과 관련되는 추가,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가 부여된다. 남아공에는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제도가 없고, 우선심사제도도 없다.

남아공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법률 및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특허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기능적 디자인과 미적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가능하며, 이 중 기능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진부하지 않아야 하며, 미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디자인권은 등록 통지가 있고 출원인에 의한 공고가 있는 후 바로 부여되며, 기능적 디자인은 10년, 미적 디자인은 15년간 보호된다.

남아공의 상표제도는 다른 국가와 대체로 유사하며,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춰야 하고 등록 받을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남아공에서는 1상표 다류 1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 건의 상표는 하나의 상품류만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상표가 공고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 말소 산정 기간은 5년이다.

이 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남아공의 지식재산제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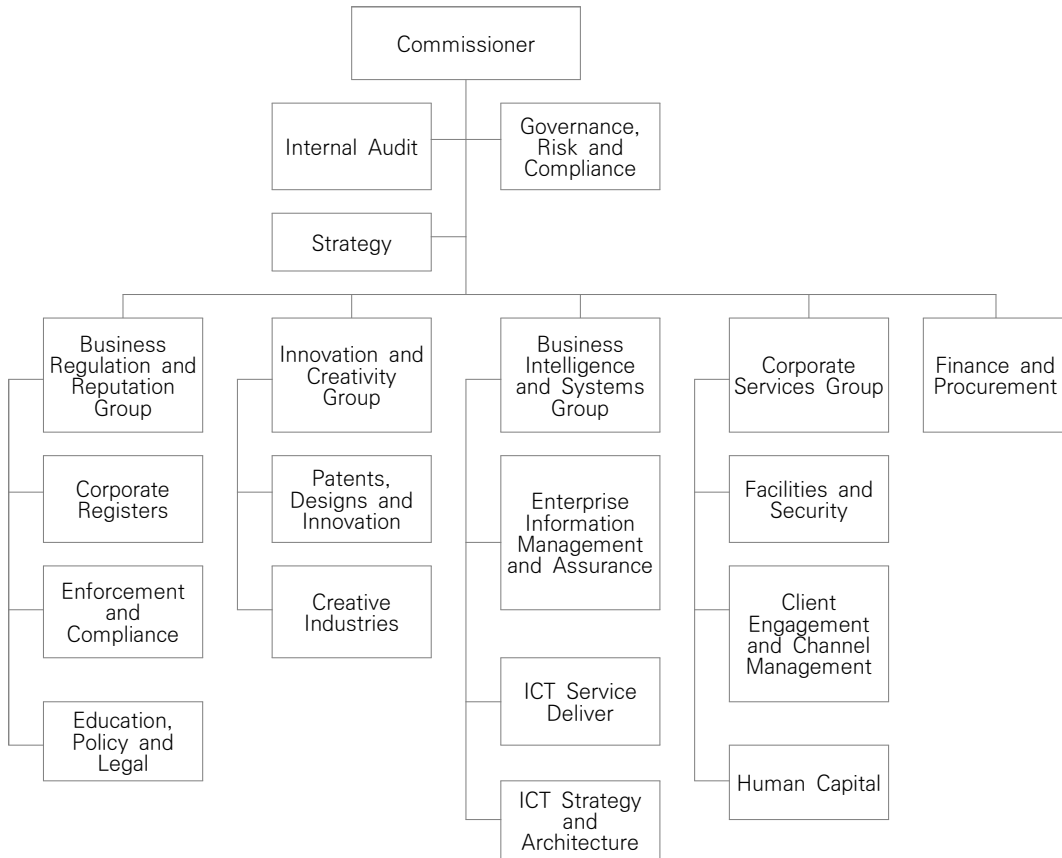
권리	관련법	특징
특허권	특허법	출원일로부터 20년 CIPC가 관리
디자인권	디자인법	미적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15년 기능적 디자인 - 등록일로부터 10년 CIPC가 관리
상표권	상표법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 원산지 등 보호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 무한 갱신 가능 CIPC가 관리
소프트프로그램	저작권법	창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 CIPC가 관리
저작권	저작권법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보호 발표, 유포일의 다음해 1.1.부터 50년간 보호 CIPC가 관리
부정경쟁, 영업비밀	일반 법률	일반법률에 따라 보호
집적회로 배치설계	디자인법	출원일로부터 10년 CIPC가 관리

이 외, 남아공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9. 3. 16.)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그림] 남아공 CIPC 조직도<sup>10)</sup>



기업 및 지식재산권위원회(CIPC,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는 2011. 5. 1. 발효된 기업법에 따라, 종래의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사무소(CIPRO)와 기업 및 지식재산집행사무소(OCIPE)의 합병으로 만들어졌다. CIPC<sup>11)</sup>는 남아공 내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및 저작권) 등록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회사 및 협동조합의 등록 및 유지관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0) <http://www.cipc.co.za/index.php/about/structure/>

11) <http://www.cipc.co.za/>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2)</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802	6,750	20,475	14,943	772	1,201
2015	889	6,608	21,543	15,430	723	1,237
2016	704	6,506	22,734	15,242	1,087	1,107
2017	728	6,816	16,027	10,224	1,012	1,114
2018	657	6,258	22,550	15,987	977	966

12)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ZA](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ZA)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이 보호 대상이다. 남아공 특허법은 제25조 제2항에 열거된 a) 발견, b) 과학상의 이론, c) 수학적 방법, d) 문예, 연극, 음악 혹은 미술작품 또는 그 외의 미적 창작물, e) 정신 활동, 유희 또는 사업을 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f) 컴퓨터프로그램, g) 정보의 게시는 발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i) 공개 또는 실시가 불쾌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조장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발명 (제25조 제4항)
- ii) 동물, 식물, 동물 혹은 식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인 방법에 대하여, 미생물학적인 과정 또는 그와같은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닌 것 (제25조 제4항)

### 나. 등록요건

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①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진보성을 가지는(진보성) ③ 신규의(신규성)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제25조 제1항).

신규의 발명이라고 함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직전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제25조 제5항)

외과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인간 또는 동물의 몸의 처치 또는 인간 혹은 동물의 몸에 대해 행해지는 진단의 방법에 관한 발명은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제25조 제11항) 보호대상이 아니다.

진보성이 있다고 함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직전에 공지된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제25조 제10항)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자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은 발명자 혹은 발명자로부터 출원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발명자와 출원권을 취득한 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제27조)

### 2) 출원

특허출원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를 첨부한다. 출원시 각 명세서에는 이것이 가명세서인지 완전 명세서인지를 나타내어야 한다.(제32조 제1항)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을 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이를 가명세서로 취급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다.(제38조)

가명세서는 발명을 적절히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이상 18개월 이내에 가명세서를 대체하는 완전 명세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실효된다.(제40조)

완전 명세서의 경우 발명의 요약, 실시예 등을 포함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항은 단일의 발명과 관련되고, 명확하며, 명세서로 개시되는 사항에 적절히 기초를 두어야 한다.(제32조)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야기하는 등(제81조), 등록관 또는 그 외 직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제82조), 특허청 직원 또는 종업원과 특허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는 경우(제83조), 물품이 특허를 받고 있다는 허위 표시하는 경우(제85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아공에는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제도가 없으며,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 제도가 있다.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주발명)가 출원 또는 부여되고 있으며 완전 명세서에서 기술되거나 클레임된 발명과 관련되는 추가,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추가특허가 부여된다. 추가 특허는 주발명에 비해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의 부여가 거절되거나 취소 무효되지 않고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허의 부여기간은 주발명의 특허 부여 기간으로 한다. 주발명과 관련된 특허가 양도, 취소, 거절 또는 포기되는 경우 추가 특허는 독립특허가 된다.

### III.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3) 심사

특허청은 출원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방식 및 실체에 관한 심사를 하여 수리를 통지를 한다. 출원인은 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공고를 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한다.(제42, 44조)

남아공에는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제도가 없고, 우선심사제도도 없다.

비밀취급명령(제80조) 규정에 따라 국익을 위해서 발명에 관한 출원 또는 그 외의 서류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장관은 해당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등록관에게 명할 수 있다. 비밀취급명령에 의해 발명이 비밀로 유지되어 해당 발명의 소유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장관은 합의된 적당한 보상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재에 의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할 때에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적당한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 4) 공고 및 공중에 의한 열람

수리의 통지 후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에 의해 등록관이 인정되는 연장 기간 내에 공보에 공고되어야 한다.(42조) 특허 출원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 후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43조)

#### 5) 보정 및 정정

특허등록관 또는 특임재판관은 특허, 특허출원 또는 출원의 수행 중에 제출된 서류의 오기 또는 서류의 보정을 할 수 있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에 의하여 정정의 청구도 가능하다. 명세서의 경우,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언제라도 특허법 제51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서의 보정을 등록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6) 소요 시간

남아공에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4년이 소요된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보호범위

특허권은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된다. 특허권자는 특허와 관련된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 판매의 제공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 2) 실시 허락 제도

실시 허락 제도는 남아공 내에 특허발명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부에 “license of right”라는 문구가 이서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서가 된 특허의 경우 누구나 특허재판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실시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3) 강제실시권

특허권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강제 실시권을 특허재판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56조에는 특허권의 남용을 판단하는 간주규정이 존재한다. 강제실시권은 비배타적이며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전할 수 없다.(제56조 제5항)

## 마. 심판제도

누구나 특허가 부여될 수 없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된 경우 특허권 존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특허재판관은 특허를 취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 바. 비용

남아공 특허 출원에는 약 250~300만원(국내 대리인 서비스 비용과 관납료 포함)이 소요된다. 현행 관납료 및 수수료는 특허법 시행규칙(Patent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CIPC 홈페이지([www.cipc.co.za](http://www.cipc.co.za))에서 검색 가능하다.

## 2.2. 디자인

### 가. 보호대상

기능적 디자인과 미적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제14조 제4항)

미적 디자인은 물품에 응용되는 디자인으로, 물품의 모양, 형상, 윤곽 혹은 장식 등이 시각에 호소하며 시각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을 말하며(제1조 제1항), 물품이 수행되도록 의도된 기능에 의해서만 필요하게 되는 물품의 특징 또는 구조의 방법 혹은 원리는 미적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니다(14조 제5항).

기능적 디자인은 물품에 응용되는 디자인으로 물품의 모양, 형상 혹은 윤곽의 목적 등이 해당 디자인이 응용되는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필요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기계, 차량 또는 설비의 예비 부품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모양, 형상 또는 윤곽의 특징은 기능적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니다.(14조 제5항) 기능적 디자인에는 직접회로 배치설계를 포함한다.(제1조 제1항)

### 나. 등록요건

미적 디자인의 경우 신규하고 독창성을 가져야 하고 기능적 디자인의 경우 신규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진부하지 않아야 한다.(제14조 제1항)

등록 출원일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의 직전까지 기술수준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되지 않은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제14조 제2항)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인

디자인의 소유자는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디자인의 소유자란 다음을 말한다.(제1조)

- a) 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b) 디자인의 창작자가 타인을 위해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수행받는 해당 타인 또는 어떤 사람 또는 c) 고용되어 행동하는 그 사람의 종업원이 합의에 의해 타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 해당 타인 d) 디자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했을 경우 해당 타인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2) 출원

출원서에는 출원인, 디자인 명칭, 이용분야, 창작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디자인이 적용될 상품류가 명시되어야 하며, 등록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디자인이 적용될 상품류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 내용은 디자인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보호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최종 설명에 해당한다.

## 3) 심사 및 등록

디자인 등록관은 출원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방식 및 실체에 관한 심사를 하여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등록한다. 동일한 디자인을 미적 디자인, 기능적 디자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디자인이 등록 출원 되거나 디자인이 등록되고 해당 디자인 혹은 그 일부를 같은 류 또는 다른 류에 등록하기 위하여 동일 출원인은 추가 출원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 출원은 그 대상이 미적 디자인인 경우 신규하고 독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고, 기능적 디자인인 경우 신규성이 없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진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야기하는 등(제47조), 등록관 또는 그 외 직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제48조), 등록디자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경우(제49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공고 및 공중에 의한 열람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 등록관은 신속하게 등록증을 출원인에 교부하고 해당 등록의 통지를 공보에 공고하도록 한다. 공고 후 등록부에 등록, 출원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디자인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19조)

## 5) 보정 및 정정

등록관 또는 재판소는 등록증, 디자인등록 출원 또는 출원의 수행 중에 제출된 서류의 오기 또는 서류의 보정을 할 수 있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에 의하여 정정의 청구도 가능하다.

디자인 등록 출원인 또는 디자인 등록 소유자는 언제라도 디자인법 제27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 III.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경우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서의 보정을 등록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6) 소요 시간

남아공 디자인권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보호범위

디자인권은 등록 통지가 있고 출원인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 바로 부여된다. 존속기간은 갱신료 납부를 조건으로 미적 디자인은 15년, 기능적 디자인은 10년이다.(제22조)

디자인 등록의 효과는 등록기간 내 디자인이 등록된 상품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을 제조, 수입,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권리를 국내에 부여하며 그 결과 해당 소유자가 등록을 이유로 생기는 모든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다.(제20조 제1항)

다만, 집적회로의 배치의 형태로 된 등록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의 권리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열거된 사람에 의해서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제20조 제3항)

- a) 개인적인 목적 또는 평가, 분석, 연구 혹은 학술만의 목적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 b) 위법으로 만들어진 등록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집적 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가 결합된 물품을 수입 또는 처분한 사람으로, 해당 집적회로 또는 물품의 취득 시에 해당 집적회로 또는 물품이 위법으로 만들어진 등록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있던 것을 몰랐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해당 등록디자인이 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충분한 고지를 받은 경우, 로열티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금액을 등록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함

##### 2) 강제실시권

등록디자인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강제 실시권을 재판소에게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법 제21조 제2항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의 남용을 판단하는 간주규정이 존재한다. 강제실시권은 비배타적이며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전할 수 없다.(제21조 제5항)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마. 심판제도

누구나 디자인 등록이 될 수 없는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재판소는 등록을 취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31조)

- a) 디자인 등록 출원이 권한을 가지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지 않은 경우
- b) 디자인 등록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주장의 근거가 된 사람의 권리를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c) 해당 디자인이 제14조에 규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d) 신청이 중대한 허위의 진술 또는 표시를 포함하며, 진술 또는 표시를 한 시점에 디자인 등록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 바. 비용

남아공 디자인 출원에는 약 150~200만원(국내 및 현지 대리인 서비스 비용과 관납료 포함)이 소요된다. 현행 관납료 및 수수료는 특허법 시행규칙(Patent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CIPC 홈페이지([www.cipc.co.za](http://www.cipc.co.za))에서 검색 가능하다.

## 사. 기타

### 1) 비밀 취급 명령(제46조)

국익을 위해서 디자인에 관한 출원 또는 그 외의 서류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장관은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등록관에게 명할 수 있다.

비밀취급명령에 의해 디자인이 비밀로 유지되어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장관은 합의된 적당한 보상액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재에 의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할 때에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적당한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 2) 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원래 디자인 소유자의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사기에 의해 취득한 등록이 포기되어 취소된 경우, 재판소는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 등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에 근거해 행해진 청구에 의해 삭제된 등록과 동일한 일자를 교부하여 해당인에게 해당 디자인 등록이 부여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33조)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장 그림에 의해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도안 명칭, 서명 단어 문자, 숫자, 형상, 외형, 모양, 장식, 색채, 상품의 용기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은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 나. 등록요건

종류별 분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식별력), 상표법 제10조에서 열거하는 다음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식별할 수 있거나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본다.(제9조 제2항)

남아공 상표법 제14조에는 “정당한 동시적 사용 제도(Honest current use)”가 있다. 즉, 선등록유사상표의 존재 또는 주지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또는 등록말소의 이유를 가진 상표 등록출원이나 등록상표라도, 정당한 동시적 사용의 경우나 그러한 사용에 상응하는 그 외의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거나 상표등록부에서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인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 2) 출원

출원인은 상표견본, 출원인의 명칭 주소, 상품 또는 서비스업 류(1출원 1류 제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개수 제한이 없음), 우선권주장 여부 및 이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상표 다류 1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상표 출원당 하나의 상품류만 지정할 수 있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3) 심사 및 등록

상표 등록관은 출원서류가 제출된 경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서류를 출원인에게 교부한다. 등록관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정/변경/조건 또는 제한을 조건으로 출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 방식 및 실체에 관한 심사를 하여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수리한다.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부여한다.(제16조).

상표등록출원이 수리되면 출원인은 즉시 등록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출원 수리 후 출원인의 해태에 의해 수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의 미완료 사실을 통지 한 후 법률에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0조)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야기하는 등(제60조), 등록관 또는 그 외 직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제61조), 상표를 등록된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경우(제62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이의신청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라도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등록관이 허여하는 이보다 긴 기간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남아공 상표법은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의 신청 이유에 제한 없이 수리된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지 못하도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 소요 시간

남아공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년이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은 신청에 의해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다.

### 2) 등록상표의 갱신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최소 등록상표의 만료일 또는 등록상표의 최종 갱신의 만료일로부터 10년간씩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최종등록의 만료 6월 전부터 만료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등록 상표의 만료 후 1월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은 최종 등록의 만료일에 해당 등록 상표를 말소할 수 있다. 갱신 수수료 불납으로 등록상표가 만료된 경우라도 해당 등록상표는 최종 등록 만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부 상의 상표로 간주되며 그 기간 내에 행해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장애가 될 수 있다.

### 3)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말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등록관의 신청에 의거하여 해당 등록상표는 등록부에서 말소 할 수 있다.(제27조)

- a)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취지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인의 선의의 의도 없이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의 소유자 또는 실제로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등록 말소 신청 전 3월의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 선의로 실시하지 않은 것
- b) 등록증의 교부일로부터 연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 상표의 소유자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등록상표 말소 신청일 전 3월의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에 있어 선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 c) 재판소 또는 등록관이 발하는 통지를 조건으로 법인의 명의 또는 자연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등록 말소 신청일보다 2년 이상 전에 해당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해당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상표의 양도와 관련된 등록 신청이 되지 않은 것

#### 4) 실시권

등록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의 등록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상표가 등록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되는 경우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는 등록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상표법 제27조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를 피할 수 있다.

#### 5) 양도

상표는 출원전의 것이라도 양도 가능하며 등록관은 양도 또는 이전에 근거하여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자가 그 상표의 등록출원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 양도는 서면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서명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며 양도 또는 이전의 신청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2월보다 늦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 마. 심판제도

등록관의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고재판소 지방 지부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바. 비용

남아공 상표 출원(1개류)에는 약 150만원(국내 및 현지 대리인 서비스 비용과 관납료 포함)이 소요된다. 현행 관납료 및 수수료는 특허법 시행규칙(Patent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CIPC 홈페이지([www.cipc.co.za](http://www.cipc.co.za))에서 검색 가능하다.

## 2.4.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남아공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을 a) 어문, b) 음악작품, c) 예술작품, d) 촬영용 영화, e) 사운드 녹음(음원), f) 방송, g) 프로그램 전달 신호, h) 출판된 책, l)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열거하고 있다.(제1조)

그 외 방송 또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이 기록, 녹음, 디지털 데이터 또는 신호로 표현되거나 기타 자료 형식으로 축소되지 않는한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

방송의 경우 방송이 되어야만, 프로그램 전달 신호는 위성에 의해 전송되어야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제1조 제2A항)

저작물의 제작 과정에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제1조 제3항)

### 나. 저작권의 내용

남아공 저작권법은 제6 내지 11B조에 각 저작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소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 1) 어문 또는 음악작품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복제, (b) 배포, (c) 공연, (d) 전시, (e) 공중 송신, (f) 개작, (g) 개작과 관련하여 (a)에서 (e)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 2) 예술 작품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복제, (b) 배포, (c) 영화 촬영 또는 방송에 저작물 포함 (d) 공중 송신, (f) 개작, (g) 개작과 관련하여 (a)에서 (d)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 3) 촬영용 영화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영화의 재생, (b) 공연, (c) 방송, (d) 공중 송신 e) 개작 f) 개작과 관련하여 (a)에서 (d)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e) 영화 사본을 직간접 적으로 대여, 제공 또는 공개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4) 사운드 녹음(음원)에 부여되는 저작권: (a) 음원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녹음본의 제작 (b) 음원의 복제물을 직간접으로 거래의 방법을 통해 제공, 노출 (c) 방송 (d) 공중 송신 (e) 공연
- 5) 방송에 부여되는 저작권: (a) 복제(정지사진 포함) (b) 재방송 (c) 공중 송신
- 6) 프로그램 전달 신호에 부여되는 저작권: 배포자가 대중이나 국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포
- 7) 출판된 책에 부여되는 저작권: 복제
- 8) 컴퓨터프로그램에 부여되는 저작권: (a) 복제, (b) 게시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게시, (c)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 (d) 방송, (e) 공중 송신, (f) 개작 (e) 개작과 관련하여 (a)부터 (e) 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g) 컴퓨터프로그램 사본을 거래를 통해 제공 또는 노출하는 행위

#### 다.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어문, 음악작품, 사진 외 예술작품의 경우 저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다만 출판된 책, 공연, 기록의 판매, 방송을 통해 개작 등이 일어난 경우 그 해 연말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영화 촬영용 필름, 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작업이 수행되는 연말로부터 50년이며, 사운드 녹음, 출판된 책, 방송, 프로그램 전달 신호는 발행 또는 신호가 전송된 해의 연말로부터 50년이다.

##### 2) 음원 저작물의 로열티 지급 관련 규정

합의가 없는 경우 누구라도 저작권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 없이 음원을 방송, 전송, 재생할 수 없으며, 로열티 금액은 음원 사용자, 실연자, 저작권재산권자 사이 또는 대표수집단체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실연자와 저작권 소유자는 로열티를 공유해야 하며, 실연자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대표 수집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로열티 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

로열티 금액, 실연자의 로열티 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고, 동의를 통해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다.

### III.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3)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

##### 가) 복제에 대한 예외

법에 따라 허용된 복제물에 대한 복제는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된다.(제13조)

##### 나) 저작권 보호의 예외

어문 및 음악 저작물의 사용 중 다음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중 일부 규정은 출처(또는 저자)를 표기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제12조)

- 1) 연구목적, 사적이용, 비평 또는 검토 목적, 시사사건을 보고하기 위한 사용
- 2) 사법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 또는 복제
- 3) 공정한 관행과 양립되는 선에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시된 저작물의 요약에 대한 인용
- 4) 교육용출판물 음성 또는 영상기록에 삽화로 목적이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
- 5)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을 위한 일시적 복제
- 6) 강의 등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의 복제 또는 방송
- 7) 경제, 정치 종교적 주제에 대한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에 게재된 기사
- 8) 법적 성격의 공식 텍스트, 정치적 성격의 연설 등
- 9) 상기 1) 내지 7)의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각색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경우
- 10) 상기 1) 내지 4), 6), 7)의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각색하는 경우
- 11) 상기 1) 내지 4), 6), 7), 10)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 1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녹화, 재생 장비를 선의로 시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그 외 예술작품(제15조), 촬영 영화(제16조), 음원(제17조), 방송(제18조), 프로그램 전달 신호(제19조), 출판된 책(제20조), 컴퓨터프로그램(제21조)에도 위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 4) 실시권, 양도 등

저작권은 동산으로 양도될 수 있으며, 장래의 제작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양도나 라이선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저작권의 양도 및 독점적 라이선스는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비독점적 라이선스의 경우 구두, 서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의해 부여된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철회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 철회되지 않는다.

#### 라. 저작인격권(제20조, Moral rights)

저작자는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자의 평판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왜곡, 훼손 기타 수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 마. 등록요건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 등

##### 1) 등록 요건

저작권은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국내 또는 조약 대상국 내에서 출판 또는 공개하였을 때 부여받는다.

##### 2) 업무상 저작물 등

저작자가 신문, 정기간행물 등 소유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어문 또는 예술작품을 신문 등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신문사, 정기간행물 등이 소유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사진, 영화 촬영 음원 녹음 등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 경우, 그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자가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저작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저작물을 만든 경우, 고용한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

## 2.5. 위조품 법(Counterfeit Goods Act)

남아공에는 위조제품(counterfeit goods depot)의 취급에 관하여 조사, 압수, 몰수 및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위조품 법이 별도로 존재하며, 법이 규정한 위조행위는 아래와 같다.

- a)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의 허가 없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본을 제작 생산하는 행위
- b) 상품, 제조, 생산 또는 제조 또는 상품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라이선스에 따라 제조, 생산된 상품과 혼동되거나 보호 상품으로 혼동되는 모조품을 제작 생산 하거나 제품에 적용하는 행위

### 3.1. 특허

#### 가. 침해행위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허가받지 않은 자가 발명의 제조, 사용, 실시, 판매, 제공, 수입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특허권자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특허권자는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등록부에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실시권자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제65조 제5항) 실시권자는 공동으로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나, 다만 강제 실시권자의 경우 통지는 불필요하다.

금지명령, 침해와 관련된 표장의 제거 또는 표장과 제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인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제65조 제3항)

#### 다. 침해소송을 받은 경우 대응

침해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특허권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방어 목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제65조 제4항)

특허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 협박한 사람이 권리자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협박을 받은 자는 협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침해 소송 제기시 반소로 제기할 수도 있다.(제70조)

#### 라. 손해배상의 산정

침해시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도록 하는데 적당한 수단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피고에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금지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손해배상 대신 자신의 선택에 따라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제35조 제(3)-(d)항), 재판소는 손해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제35조 제4항)

### 마. 특허가 일부 무효인 경우

침해 소송에서 완전 명세서의 일부 청구항이 유효하나 그 외 청구항이 무효라고 특임재판관이 판단하고 소송 절차에서 특허의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특임재판관은 보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반소에 의한 명령의 적용을 연기하고 명령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부가한 조건에 따라 명세서가 보정되면, 보정 전에 유효하였고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청구항에 관하여 원고를 구제한다.

## 3.2. 디자인

### 가. 침해행위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가 업으로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등록 소유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등록 소유자는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등록부에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실시권자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하며(제35조 제2항), 실시권자는 공동으로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강제 실시권자의 경우 통지는 불필요하다.

금지명령, 침해와 관련된 표장의 제거 또는 표장과 제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인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제35조 제3항)

### 다. 침해소송을 받은 경우 대응

침해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디자인의 등록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방어 목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제35조 제5항)

등록된 디자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 협박한 사람이 권리자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협박을 받은 자는 협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침해 소송 제기시 반소로 제기할 수도 있다.(제37조)

### 라. 손해배상의 산정

원고는 손해배상 대신 자신의 선택에 따라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제35조 제(3)-(d)항), 재판소는 손해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제35조 제4항)

### 3.3. 상표

#### 가. 침해행위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에만 상표법에 따른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 행위는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 (a)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기만하는 표장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허가받지 않고 업으로 사용하는 것
- (b) 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극히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허가받지 않고 업으로 사용하여, 그러한 사용에 의해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c)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주지한 것이며,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현저한 특징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허가받지 않고 업으로 사용하는 것

#### 나.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상표등록에 의한 권리의 침해는 재판소에 소송에 따라 구제할 수 있고, 금지명령, 침해와 관련된 표장의 제거 또는 표장과 제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인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등록부에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사용자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사용자 누구라도 해당 소송에 참가하여 침해의 결과로 생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제34조 제5항)

#### 다. 손해배상의 산정

원고는 손해배상 대신 자신의 선택에 따라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제34조 제(d)항), 재판소는 손해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 3.4. 저작권

#### 가. 민사적 절차

##### 1) 침해행위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있는 행위를 국내에서 하거나 다른 이에 하게 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제24조 제1항)

##### 2)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저작권 침해는 소송에 따라 구제할 수 있고, 침해에 대하여 침해 금지, 침해 사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저작권자 및 독점적 사용권 역시 저작권자와 동일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 명령 등을 하지 않는다.

##### 3) 손해배상의 산정

침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침해의 악의성(flagrancy)을 고려하고 침해로 인해 피고(침해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원고는 손해배상 대신 자신의 선택에 따라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제24조 제1A항)

침해가 있었으나, 침해 당시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4조 제2항)

#### 나. 형사적 절차

저작권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rand 이하의 벌금, 재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 rand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IV. 모리셔스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7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76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85





## 1.1. 개요

모리셔스에서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인정되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019년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등록요건으로는 절대적인 신규성이며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보호기간은 6년이며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하다.

선이나 색상의 구성, 3차원 구성 또는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거나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이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추가로 5년씩 최대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상품을 개별화하고 구별하는 모든 표지 중에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 가능하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된다.

모리셔스는, 1875년에 특허법, 1868년에 상표법, 1986년에 저작권법(1997년에 개정)을 제정하였다. 모리셔스는 1976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하였다. 또한, WTO/TRIPS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모리셔스는 2019년 7월 30일 산업재산권 법안을 처리하여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실용신안, 식물품종(plant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해당 산업재산권법은, 특허협력조약(PCT), 헤이그 협정, 그리고 마드리드 의정서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었다.

모리셔스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지정에 의해 진입할 수는 없다. 또한 우선권 주장에 의한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시 모리셔스가 헤이그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모리셔스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13) <http://www.mauritustrade.mu/en/intellectual-property-policy>, 모리셔스 상공회의소(MCCI) 리포트 "marc insights issue 1", [https://www.wipo.int/members/en/details.jsp?country\\_id=120](https://www.wipo.int/members/en/details.jsp?country_id=120), <https://www.agip.com/>, <http://www.mric.mu/English/Pages/default.aspx> [Mauritius 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 모리셔스 국세청(MAURITIUS REVENUE AUTHORITY), HSBC report "Doing business in Mauritius" in 2016, 모리셔스 상공회의소(MCCI), MARC 소개, 모리셔스 국제통상부 리포트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 Practical Guide for Business & Entrepreneurs"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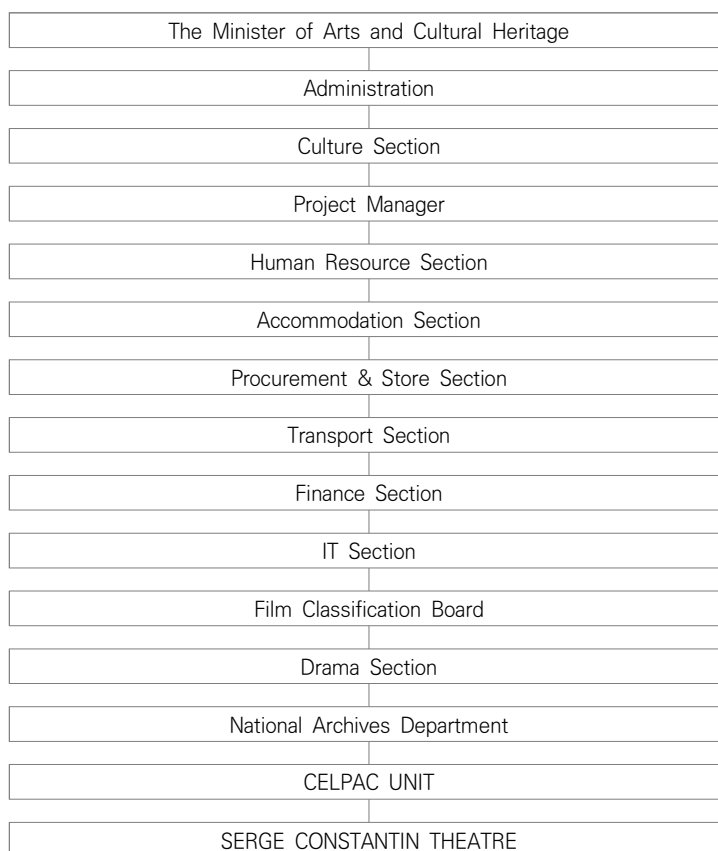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물질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미가입	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 가. 예술 문화부(Ministry of Arts and Culture)

저작권은, 예술 문화부(Ministry of Arts and Culture)에서 관리한다. 모리셔스의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모리셔스 작가 협회(Mauritius Society of Authors, MASA)’는 회원(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림] 모리셔스 예술문화부 조직도<sup>14)</sup>



14) <https://culture.govmu.org/Pages/About%20Us/Senior-Staff--Organisation.aspx>

**나. 모리셔스 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Mauritius)**

특허와 상표는,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ternational Trade) 산하 모리셔스 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Mauritius)에서 관리한다.

**다. 산업재산권 심판원 및 대법원**

산업재산권 심판원(Tribunal)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며,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 이유는 법률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는 없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5)</sup>**

구분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3	18	855	1,000	-	-
2015	1	20	991	1,058	-	-
2016	2	36	1,110	1,218	-	-
2017	1	18	1,035	1,057	-	-
2018	16	13	2,523	2,704	75	24

15)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mu](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mu)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의 종류는 물건의 발명(product patent)과 방법의 발명(process patent)이 있다.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은 이하의 사항인데, 모리셔스의 산업재산권법(특허법이 포함된 법률) 상의 불특허 대상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제52조 제2항과 유사하다.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사업 수행, 순전히 정신적 행위 수행 또는 게임을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 신체의 치료 방법 및 인체 또는 동물 신체에 대한 진단 방법
- 이 법 제 136조에 규정된 의약품
- 미생물 이외의 식물과 동물,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
- 식물 품종

또한,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인류, 동식물에게 유해한 발명,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발명이나 기타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명 등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출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개되는 정도는 각 특허에서 “실시 가능한 개시(enabling disclosure)”에 의한다. 실시 가능한 개시는, 해당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의 일 실시예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개시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당 발명의 일 실시예는 해당 발명의 최적의 실시예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나. 등록요건

등록요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요건과 동일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들 수 있다. 선행기술은 출원일(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발명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대해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자명하지 않으면, 그 발명은 진보한 것으로 본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모리셔스의 경우에도 출원 일시를 기준으로 권리 획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이나 제3국에 출원하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기간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12개월이다.

특허 출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서
- 공증된 선언서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명에 대한 설명 및 청구범위(영어로 작성)
- 도면(필요한 경우)
- 양도증서(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증 필요)
- 출원인의 연락처 및 주소

출원인의 통상 주소지가 모리셔스 외부인 경우, 특허출원서는 모리셔스에 거주하는 법률가(legal practitioner)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위임장은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일은 출원일 이전 2개월 이내여야 한다.

조약우선권에 의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과 함께 선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리셔스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지정에 의해 진입할 수는 없다.

### 라. 특허권의 효력

이전 특허법의 경우 특허 출원 이후 14년까지 특허권이 유효하였으나, 2002년 특허법의 경우 특허 출원 이후 20년까지 특허권이 유효하게 되었다. 등록 이후 매해 등록유지료(annual fee)가 부과되며, 등록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특허는 취하 간주된다. 2002년 특허법에서는, 갱신료(renewal fee)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침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판매에의 제공 및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특허 실시권자와 특허 소유자는 모두 금전적 손해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모리셔스 산업재산청은, 특허가 이용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게 이용되는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은 해당 특허발명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입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에 이용된다. 강제실시권이 발효되는 시기는, 특허 출원 후 4년 이후 또는 등록 후 3년 이후이다.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의 불사용 또는 불충분 사용이 정당함을 모리셔스 산업재산청에 소명하면,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면할 수 있다.

### 마. 관납료

(단위: Rs<sup>16)</sup>)

항목	비용
특허 출원서 제출	3,000
특허 출원 취하	0
특허 출원의 보정	0
특허 출원 오류의 정정	0
특허 사본	100 (/1장)
특허 변경 요청	2,000
강제실시권 발행 요청	25,000
1-2년차 등록유지료	0
3-4년차 등록유지료	1,000(/1년)
5-9년차 등록유지료	5,000(/1년)
10-14년차 등록유지료	15,000(/1년)
15차 이상 등록유지료	25,000(/1년)

## 2.2. 디자인 (산업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의 구성, 3차원 구성 또는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거나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은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시각(visual appearance)에 의해 판단된다. 디자인 보호의 목적은, 오로지 기술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제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16) Rs (루피, 모리셔스의 화폐 단위), 1 Rs = 29.21 KW (2020.10.01. 기준)

## 나. 등록요건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novelty)이 요구된다. 디자인 출원일(우선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가거나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의 경우, 공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 출원하면 그 공개는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디자인 출원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적절한 그래픽 자료
- 디자인의 물품 표시
- 3차원인 경우, 표본
- 위임장
- 공지에의 관련 서류
- 우선권 관련 서류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공지 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분디자인 및 복수디자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관납료는 2,000 Rs이고, 등록에 필요한 관납료는 4,000 Rs이다. 디자인 출원서 제출 및 위임장에 관한 내용은,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다.

조약우선권에 의해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과 함께 선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에 의한 디자인 출원시 모리셔스가 헤이그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디자인권자는 금전적 손해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추가로 5년씩 최대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갱신할 수 있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는 특정 기업의 상품을 개별화하고 구별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며, 모리셔스에서 상표(넓은 의미, trademark)는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인 상표(좁은 의미, trademark)와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서비스표(service mark)로 구분된다.

모리셔스는 파리협약(제6조)에 따라 주지·저명 상표<sup>17)</sup>를 보호한다. 주지·저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타인의) 출원을 등록 거절하며, 주지·저명 상표가 미등록인 경우에도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저명 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또는 개인) 그 자체 또는 그 상품/서비스를 식별하지만, 단체 표장(collective mark)은 특정 표장을 사용하는 군(群)을 지칭하거나 해당 표장이 사용되는 제품에 의해 만족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모리셔스 상표법에서, 단체 표장은 “상표 출원서에 기재된 표지로서,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단체 표장의 등록권자의 통제 하에서 사용하고, 개별 원산지 또는 상품/서비스의 품질과 같은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한다.

### 나. 등록요건

모리셔스 산업디자인법은 등록 불가능한 상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한국 상표법 및 주요국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유사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용어 (generic term, 예를 들어 지정 상품이 “음료수”이고 표지가 “drink”인 경우)
- 기술적 표지 (descriptive signs, 예를 들어 지정 상품이 “안마 의자”이고 표지가 “comfortable”인 경우)
- 원산지 표시 (geographical origin, 예외로 후술될 ‘지리적 표시’ 참조)
-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표지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
-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지
- 공중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지

17) 주지·저명 상표는 “Coca Cola”와 같은 정도로 공중에 알려진 상표를 의미한다.

- 국가의 상징 및 정부간 조직을 나타내는 표지 (국가 또는 국가간 조직이 허용하는 경우 가능)
-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표지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상표(넓은 의미)의 출원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위임장 (공증 필요,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필요)
- 상표 사본 5부
- 지정 물품/서비스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상품/서비스)

상표 출원시 2개의 지정 물품의 경우 관납료는 2,000 Rs이며, 지정 물품의 추가시 각 물품당 1,000 Rs의 관납료가 추가로 발생된다. 상표 출원서 제출 및 위임장에 관한 내용은,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다.

조약우선권에 의해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과 함께 선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에 의한 상표 출원시 모리셔스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10년의 등록 유효 기간을 가지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심판에서 무효로 되거나 불사용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은 등록 이후에 상황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상표가 등록 이후 일반적 용어(generic term)로 되는 경우<sup>18)</sup>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구현된 물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상표권자는 모두 금전적 손해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8) 예를 들어 “셀로판(CELLOPHANE)”

## 2.4. 저작권

### 가. 보호대상

모리셔스의 저작권법은 1997년 개정되었다. 예술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저작물 또는 그 파생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모리셔스는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베른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보호되는 작품은 모리셔스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예술/문화/과학 분야의 산출물
- 삽화, 지도, 사진, 그림, 회화, 조각, 건축
- 강의, 설교, 연설
- 드라마 극본 또는 드라마 음악 작품
- 음악 작품
- 안무 또는 판토마임
- 컴퓨터 프로그램
- 법원 또는 심판원의 판결/심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 절차, 개념(원리), 발견, 데이터 그 자체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은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공문서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나.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저작물이 확정되면 발생된다.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복제 또는 파생 저작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도덕적 권리는, 저작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물의 왜곡, 훼손, 변경 등을 방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50년 후에 만료된다. 저작물이 공동 소유권인 경우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는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50년 후에 만료된다.

익명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50년 동안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가 유지되고, 저작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50년 후까지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가 유지된다. 시청각 작품의 경우 제작일로부터 50년 동안, 승인된 방송 또는 통신의 경우 승인된 연도의 연말부터 50년 동안,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가 유지된다. 사진 작품 또는 응용 예술 작품의 경우 제작일로부터 25년 동안,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가 유지된다.

### 라. 등록요건

저작물은 원본(original)이어야 하며, 기재되거나 기록되거나 고정되는 등 물리적인 형태이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모리셔스 국민이거나 거주자이거나, 저작물이 모리셔스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이어야 한다.

## 2.5. 기타

### 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002년 제정된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은 지리적 표시를 법으로 보호한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해당 지리적 원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해당 제품의 표시'로 정의된다. 지리적 표시는 등록 없이도 보호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여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산물 생산자 또는 수공품 제작자 등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는 행위는 최대 250,000 Rs의 벌금 및 최대 5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이다. 그러나 1994년 4월 15일(WTO/TRIPs 협약 발효) 이전에 10년 이상 지리적 표시를 사용했거나 해당 기간 이전에 선의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왔던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01  
가나(Ghana)

02  
니제리아(Nigeria)

03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4  
모리셔스(Mauritius)

05  
모잠비크(Mozambique)

### 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Layout designs)

2002년 제정된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에 관한 법률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보호한다. 집적회로의 개발 및 제조는 상세한 계획 및 배치설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당한 비용의 투자의 결과이므로, 무단 복제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 다. 불공정 행위 방지

불공정 행위(지식재산권에 관한) 방지에 관한 법률은, 2002년도에 제정되어, 몰수나 손해배상에 관계없이 반경쟁적(anti-competitive) 행위로 간주되는 일련의 행위에 제재를 가한다. 이 법은 모든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른 기업 또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평판에 손상을 가하거나 대중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이 법에 의해 제재된다.

### 3.1. 사법구제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모리셔스의 산업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리셔스 법원은 압수된 제품이 위조품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대리인을 요구하는 점<sup>19)</sup>에 비추어, 모리셔스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모리셔스에 공식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모리셔스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기관은, 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IPO), 외교부 국제 무역과, 산업재산권 심판원(Industrial Property Tribunal), 모리셔스 작가 협회(Mauritius Society of Authors, MASA), 예술문화부(Ministry of Arts and Culture and the Customs), 모리셔스 상공회의소, 중재 및 조정 센터(The Mauritiu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MCCI, MARC) 그리고 모리셔스 국세청이다.

특히, 디자인, 단체 표장, 상표 또는 저작권의 소유자(승인된 사용자 및 대리인 포함)는, 의심스러운 상품의 통관을 중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면은 2년 동안 유효하다. 제출되는 서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또는 승인의 증명
- (모리셔스 산업재산청이 부여하고 모리셔스 영토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 등록 증명서
-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의 경우 해당 권리가 성립함을 주장하는 진술서
- 위임장(신청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
- 20,000 Rs 은행 유치금

통관 중지 물품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개인용으로 소장된 소량의 비상업적 물품, 소형화물로 운송되거나 승객 등에 지참된 물품
- 모리셔스 관세법 공고일 이전에 주문 또는 배송된 상품, 공고일 이전에 이미 수입되거나 제조된 상품

19) 출처: 'mauritius-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export.gov

모리셔스 상공회의소의 중재 및 조정 센터(Mcci 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이하 'MARC')는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기관이며, 1996년 설립되어 국가 법원 소송 이전에 대안으로서 중재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MARC는 MARC 법정(court)과 MARC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MARC 상설 사무국은 MARC를 관리한다.

중재 및 조정은 국가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모리셔스에서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MARC에 중재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3. 형사구제

법원은 특허법에 근거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품의 몰수와 함께 최대 250,000 Rs의 벌금 또는/ 및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은 특허법과 함께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모리셔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초범의 경우 300,000 Rs 이하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500,000 Rs 이하의 벌금과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V. 모잠비크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8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9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08





### 1.1. 개요

모잠비크의 특허출원 방법은 모잠비크 국내 출원(National filing in Mozambique), ARIPO 아프리카 지역 기구를 통한 출원, PCT 조약을 통한 출원, PCT 출원을 통한 ARIPO 지역 단계(regional phase) 진입 방법이 있다.

출원인은 모잠비크에서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 출원된 특허 또는 기타 보호 권리의 모든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IPI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특허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실린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인은 이의 기간 동안 3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이며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같은 기간 최장 25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산업재산 공보에 산업디자인을 게재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상표의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해당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서가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의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선언서(DIU)를 매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모잠비크의 IP 법제화를 다룬 주요 법률<sup>20)</sup>은 산업재산법(the Industrial Property Code:Co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Decree 4/2006, 1999년 법 개정)과 저작권법(Lei de Dreitos de Author, Law 4.12001)이다.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법률로 모잠비크는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WTO/TRIPs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협약, 파리협력조약, PCT 조약,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니스 협정 등과 같은 특허와 지식재산에 관한 많은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모잠비크는 베른 협약의 준수를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8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WIPO VIP 조약)에 서명했다.

20)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Mozambique 2013 p.68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촉진을 위하여 IP Strategy 2008-2018 전략을 시행했다. 이 전략은 IP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 2008-18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21)</sup>

1.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 과학 기술 연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급 및 교육
2. 창의적인 문화 개발
3. 개선된 지식재산권 제도 관리

상기 전략은 약 50%가 이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상표 및 특허 등록 장려, 지방 및 대학의 혁신가 식별 및 특허 출원 초안 작성 지원, 교육 활동, 등록자에 대한 법률 및 수수료 인하 및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sup>22)</sup>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모잠비크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 크게 3곳이며,<sup>23)</sup> IPI(특허청), Ministry of Culture(문화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과학기술부)이다.

### 가. IPI(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부)

IPI는 산업재산권의 관리를 담당하며, 2006년 Code of Industrial Property(산업재산법)의 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IPI는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산업무역부) 산하에 있으며, 기존에 부처 내에서 수행되었던 업무(특허, 지리적 표시, 브랜드화 포함)를 담당하고 있다.

21)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Mozambique 2013 p.68

22) WTO - Trade Policy Review Body-Trade Policy review - Report by the Secretariat: Mozambique p.73

23)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Mozambique 2013. p.68([https://www.oecd-ilibrary.org/finance-and-investment/oecd-investment-policy-reviews-mozambique-2013\\_9789264203310-en](https://www.oecd-ilibrary.org/finance-and-investment/oecd-investment-policy-reviews-mozambique-2013_9789264203310-en))

## V. 모잠비크(Mozambique)

[그림] 모잠비크 IPI 조직도<sup>24)</sup>



<b>사이트</b>	http://www.ipi.gov.mz
<b>주소</b>	Rua Consiglieri Pedroso no. 165, Box 1072 Maputo, Mozambique
<b>전화번호</b>	(258) 8 430 062 15 (258) 21 354 900
<b>이메일</b>	ipi@ipi.gov.mz jose.meque@ipi.gov.mz

### 나.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관광문화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조정하고 시행할 책임을 가진다. 국립도서기록원(National Institute of Books and Records)을 통해, 저작권 관련 이슈를 처리하고 있다.

<b>주소</b>	P.O. Box 679, Avenue Agostinho Neto, No. 960 Maputo. Mozambique
<b>전화번호</b>	(258) 848 71 81 50 (258) 848 71 81 52 (258) 21 43 10 68
<b>이메일</b>	Ivanbond59@gmail.com Ivanbond21@gmail.com

24) 수출입은행, 모잠비크·파라과이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지원 (국문) 2015. p.50

#### 다.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적 이슈를 담당하며 IP Strategy 2008-2018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의 작성 및 추진을 주도하였다.

사이트	<a href="http://www.mct.gov.mz">http://www.mct.gov.mz</a>
주소	Av. Patrice Lumumba No. 770, Maputo, Mozambique
전화번호	(+258) 213 528 00 (+258) 213 528 15
이메일	benilanga@hotmail.com benjamim.langa@mct.gov.mz

#### 라. ARIPO(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기구)

사이트	<a href="https://www.aripo.org/mozambique">https://www.aripo.org/mozambique</a>
주소	P.O. Box 4030, Av. Ho Chi Minh, No. 1135 lo Andar, Maputo, Mozambique
전화번호	(258 1) 354 900 (258 82) 3014 374 (258 84) 3006 215
이메일	ungulani@yahoo.com.br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25)</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4	46	1,274	3,998	22	124
2015	24	30	1,157	4,166	30	88
2016	15	25	1,295	4,038	29	49
2017	24	26	1,278	3,631	30	50
2018	34	13	1,247	3,881	5	64

25)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MZ](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MZ)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특허는 제품(기계, 제조품), 공정 또는 새롭고 유용한 개선사항에 대해 부여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치료, 수술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다음과 같다.

- 자연 법칙 및 수학적 방법뿐 아니라 발견
- 심미적 디자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정신적 활동, 게임 또는 경영 수행을 위한 시스템, 규칙 및 방법
- 자료 및 추상적 아이디어의 제시

### 나. 등록요건

특허를 얻을 수 있으려면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모잠비크에서 신규성 의제 사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 출원인이나 출원인의 승계자(predecessor)가 출판물 또는 정부가 공식 개최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모전(competitions), 전시 및 무역 박람회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승계자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저지른 남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 전자의 경우(출원인이 당한 경우), 출원인이 출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이 서면으로 발명이 효과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선언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모잠비크가 인정하는 특허가능한 청구항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제품(products)
- 프로세스(process)
- 방법(methods)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 등록절차

모잠비크의 일반적인 특허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 출원
- 방식심사(수정기간 2개월)
- 선행기술 보고서(Report)
- 공개
- 실체 심사
- 특허권 부여

### 2) 출원시 필수정보

특허 출원시 제출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특허 출원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 발명의 명칭, 설명, 청구항 및 요약서(포르투갈어)
- 발명자의 성명, 국적 및 주소
-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아닌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선언서
- 다른 국가에서 제출된 동일한 발명과 관련된 특허의 출원에 관한 정보
- 해당될 경우 우선권 정보 및 우선권 출원서(인증된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제공, 나중에 제출할 수 있음)
- 공증된 위임장(추후 제출 가능)

### 3) 결함의 시정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항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인은 그 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항에 대한 포르투갈어 번역 제공을 출원시에 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 분할출원

IPI 국장은, 최초에 제출된 출원서가 복수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180 일 이내에 분할출원 하도록 통지해야한다.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필요한 수정에 대해 어떠한 보정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거절된다.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을 IPI 국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주어진 통지에 따르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부여 받는다.

5) 변경출원

특허출원인은 출원 심사에 앞서, 언제든지 특허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법적 대리권

법적 대리 권한은 IPI에서 다음의 방법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거나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모잠비크에 설립되거나 본거지가 있는 경우)
- 본사가 모잠비크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적 대리인 또는 적법하게 선발된 직원을 통하는 경우
- IPI가 투자한 공식 산업재산권 대리인

7) 외국 출원정보의 제출

출원인은 모잠비크에서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 출원된 특허 또는 기타 보호권리의 모든 출원일자과 출원번호를 IPI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사항도 제출해야한다.

- 외국에서 실시한 조사 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받은 모든 서류의 사본(a copy of any communications)
- 외국 출원으로 부여받은 특허 또는 기타 보호권에 대한 사본
- 외국 출원을 거부하거나 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 또는 잠정 결정의 사본
- 외국 출원에 따라 부여된 특허 또는 기타 보호권을 부여하는 결정에 대한 사본

8) 방식 심사

출원일이 생성되면, IPI는 출원서 서식 및 그 양식에 대하여 규제 조항을 검토하여,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IPI는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국내 또는 국제 전문가에게 기술적 지원 제공을 요청하거나 특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9) 출원 공개

특허의 요약서 사본은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게재한다.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표하지 않으며, 출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다. 출원 공개 후, 누구나 출원 관련 청구항,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10) 종업원/직무발명

발명자가 종업원인 경우, 특허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발명이 발명 활동을 제공하는 고용 계약의 이행 중에 발생한 경우 또는 고용인이 특별히 할당하거나 부여한 연구 또는 연구 계약의 맥락에서 종업원에 의해 수행된 실제 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는 고용주에 속한다.
- 발명이 기업, 영리 회사 또는 다른 법인의 활동의 일부인 경우, 이들 단체는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라. 출원의 종류

모잠비크의 특허권 보호방법은 아래와 같다.

- 모잠비크 국내 출원 (National filing in Mozambique)
- ARIPO 아프리카 지역 기구를 통한 출원
- ARIPO나 PCT 출원을 통한 지역 단계(regional phase) 진입
-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 마.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연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2) 실시권(licenses)

실시권 설정을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로 부터의 공증 위임장이 필요하며 공증된 실시계약(license agreement)이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 3) 발명의 양도

양도를 신청하는 날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 공증된 위임장(notarized Power of Attorney)
- 공증된 양도증서(Deed of Assignment) (포르투갈어로 번역 검증되어야 함)
- 공개된 (국제)출원서

### 바. 이의신청

특허권 부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실린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비용의 납부를 조건으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인은 이의 기간 동안 3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IPI는 이의 신청서의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대응하도록 통지한다.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 신청에 대응하는 기간은 이해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1 번만(30일) 연장할 수 있다.

IPI의 국장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상기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산업상 이용 가능한 모든 새로운 발명은 실용신안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

### 나. 등록요건

산업재산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실용신안을 공개하는 것은, 그 공개 연기 또는 이월 요청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01

가나(Ghana)

02

나이지리아(Nigeria)

03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4

모리셔스(Mauritius)

05

모잠비크(Mozambique)

#### 다. 실용신안권의 효력

##### 1) 실용신안 존속 기간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 2) 실용신안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실용신안의 유효 기간 동안, 실용신안 권리자는 제품에 "modelo de utilidade número ..." (실용신안 번호 ...) 또는 "Mod. Util. N.º ...", "M.U. N.º ..."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3) 실용신안 출원 변경

심사 단계 전, 출원인은 실용신안 출원을 한 번만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실용신안 출원의 제출일을 특허의 출원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 2.3. 디자인

#### 가. 개요

모잠비크의 디자인 관련 법률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Decree No. 47/2015에 의해 승인된 산업재산법(Industrial Property Code)이다. 모잠비크에서 디자인권 보호를 받는 방법은 이하의 3가지가 있다.

- 모잠비크 국내 디자인 출원
- ARIPO를 통해 지역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
- 우선권 인정을 통한 출원

#### 나. 등록요건

디자인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출원일 또는 우선권 출원일 이전에 유형적 형태로 공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 무효 또는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등록의 대상이 된 디자인
  - 2) 해당 기술에 정통한 사람에 의해 알려지고 수행될 수 있는 것
  - 3) 잘 알려진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공공 영역의 일부가 된 산업 디자인
- b)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관습에 위배되는 디자인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시 필수사항

디자인권 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 모델 또는 디자인의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적절한 그래픽 표현
- 창작자의 성명, 국적, 주소
- 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한다고 선언하는 선언서
- 해당될 경우 우선권 정보 및 우선권 관련 문서(인증된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 추후 제출 가능)
- 위임장(공증 필요, 추후 제출 가능)

##### 2) 우선권

파리 조약의 조건에 따라 회원국 또는 WTO 회원국, ARIPO 회원국에서 정식으로 디자인 출원을 한 사람은 모잠비크에 디자인 출원시 우선권을 인정받는다.

##### 3) 출원 공개

디자인 출원은 공개 중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출원 즉시 산업재산공보에 공개된다.

##### 4) 디자인권에 관한 규칙 적용

특허에 관한 규정을 필요시 변경을 가하여 디자인 출원에 적용한다. 단, 규정에 모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같은 기간 최장 25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 2) 디자인 등록으로 부여된 권리

등록된 디자인권은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 대상의 생산,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의 독점권을 침해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을 침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Desenho Nr..." (Design Nr...) 또는 약칭 "D. Nr ..."의 표기를 디자인권 관련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 외에 모잠비크에 등록된 디자인을 이용하는 디자인 출원은, 해당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3) 지역 등록 효과

모잠비크를 지정국으로 하고 ARIPO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은 IPI가 ARIPO에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을 통지하지 않는 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효력을 모잠비크 내에서도 갖는다.

### 4) 디자인권 양도시 필요한 서류

- 공증받은 위임장
- 공증받은 양도증서 원본이나 인증서(단, 포르투갈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 마.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산업재산 공보에 산업디자인을 게재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 할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 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2.4. 상표

### 가. 개요

2020년 5월 15일, 모잠비크는 ARIPO를 통한 상표 출원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0년 8월 15일 이후로 ARIPO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 나. 보호대상

모잠비크에서 상표 보호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한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또는 관습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마크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특징, 즉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즉 지리적 원산지,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해 소비자 또는 대중을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안 된다.
- 무기, 국기, 엠블럼, 동전, 도피처(escutcheons), 방패, 약어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기타 국내 및 국외 공공 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에 속하는 다른 공식 상징물의 특징을 복제, 모방, 또는 포함할 수 없다. (단, 국제 및 지역 대회 또는 그런 지역 단체나 조직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
- 검사 및 보증 관련 공식 뱃지, 도장 및 우표, 사설/사적 엠블럼 또는 적십자와 유사한 조직의 이름을 복제할 수 없다.
- 모잠비크에서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된다.
- 모잠비크에서 등록된 다른 상표의 특징적인 요소를 복제 또는 모방해서는 안 된다.
- 보호가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포괄적, 공통적, 일반적, 또는 단순한 서술적 특징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 다. 등록요건

모잠비크의 상표권 거절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제품의 형상 또는 제품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하는 것만으로 표장을 구성한 경우
- 상표가 제품의 종류, 품질, 수량, 목적, 가치, 지리적 원산지, 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 시기 또는 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경우
- 상표가 현재 언어 또는 관행적으로 쓰는 표시로 구성된 경우

- 상표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단, 색상이 특정하게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결합되거나 그래픽, 문구 등 구별되는 방식으로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 출원인이 불공정한 경쟁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의도에 관계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상표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

상표 출원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출원인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인 경우, 적절한 영업 허가/사업면허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Boletim da República(공식 관보)에 게재된 정관(articles)이나, 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업 증명서
- 상표의 2개의 그래픽 이미지
- 한 장의 복사본(photo-copy)
- 출원인이 모잠비크 대리인인 경우, 외국 상표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허가서(모잠비크에서 외국기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승인)
- 출원인이 아니지만 표장에 특정 인물의 이름, 회사명, 휘장 또는 그림이 나타난 경우, 기재되어 있는 그 인물의 승인

### 2) 출원 공개

모든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IPI는 승인된 출원서를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 3) 등록 자격

상표의 등록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사업가, 생산업자, 무역업자, 농민, 장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생산자 및 경제 단체이다. 단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를 법적으로 부여받거나, 인증/보증된 상표를 가진 기업에 부여된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정 품질에 사용될 수 있다.

인증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 활동을 감독, 관리 또는 인증하는 기업체에 주어진다.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업의 정관 및 헌장에 쓰인 목표 및 개념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다.

4) 국제상표 등록

1981년 8월 14일부터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모잠비크 국민이거나 모잠비크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협정의 조건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모잠비크 국민이거나 모잠비크 거주지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상표 출원인은 198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의정서의 당사자가 된다.

5) 국내상표 등록

상표 등록 신청은 포르투갈어로 해야 한다. 이 때 IPI에 해당 수수료 납부 증명서, 표장의 사본 및 상표 등록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접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실제 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상표만 출원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는 1957년 6월 15일 니스 협정 및 그에 따른 수정사항에 따라 규정된 국제 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IPI는 우선권 주장 출원서의 사본(인증된)을 요청할 수 있다.

6) 상표 분류

상표 분류는 NICE 분류를 채용하며, 다류 출원(multi-class)은 인정되지 않고 단일류 출원(single-class)만 인정된다.

마. 상표권의 효력

1) 등록으로 부여된 권리

상표 등록은 소유자에게 상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가진 상표권자가 있다면, 우선일 또는 출원일이 빠른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준비행위(preparatory act)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표의 등록 기간 동안 상표권자는 제품에 "marca registada"(등록 상표)라는 단어 또는 기호 ®를 사용할 수 있다.



## 2) 실시권 설정

제 3 자에 대해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IPI에 계약이 등록되어야 한다.

## 3) 주지 상표

모잠비크 일반인 대중들 사이에 잘 알려진 상표는 주지 상표로 간주된다. 잘 알려진 다른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상표를 구성함으로써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어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그 상표 출원은 거절되거나 무효화된다. 이러한 상표 등록의 거절 또는 취소에 대해 이해 관계자는 자신의 상표가 모잠비크에서 등록이 되거나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이의신청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 4) 유명 상표

모잠비크 또는 세계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의 경우, 유명 상표로 간주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 또는 세계에서 저명한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 하여 구성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로 된다. 이는 유명한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5) 상표 사용 선언서(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등록일부터 5년마다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상표 사용 선언서를 IPI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사용 선언서의 제출 기한은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 선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표는 제3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IPI의 국장은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등록 절차 중에 제3자의 권리에 저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선언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요청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 사용 선언서를 제출하고 그것의 사용을 증명하게 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은 다시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 6) 보호 기간 및 갱신

상표의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 년간 유효하며 해당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 7) 이의신청(Opposition)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서가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이의신청은 출원인에게 이의 신청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통지되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응답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8) 불사용 취소(Use requirement and cancellation)

불사용 기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선언서(DIU)를 매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 2.5. 저작권

2013년 모잠비크는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하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가입했다. 또 같은 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 작품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가입하였다.<sup>26)</sup>

## 2.6. 기타

## 가. 식물신품종(plant varieties) 보호

모잠비크는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 나. 지리적 표시

## 1) 일반 원칙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가 등록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 재산이 된다. 그 지역에서 특색 있는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6) WTO, Trade Policy Review: Mozambique p.10

## 2) 적용 규칙

상표법에서 지리적 표시에 적용 가능한 규칙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여 지리적 표시에 적용된다.

## 3) 지역의 경계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가 속한 지역에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경계는 용도 및 관습, 그리고 더 높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지역 및 생산 분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지역 및 국가 경제의 높은 이익을 불러오기 위해서이다.

## 4) 등록 신청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 신청은 특별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 IPI에 해당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법적으로 등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대한 전통적 규제 조건 또는 특정 지리적 영역의 경계에 대한 정보

## 5) 등록거절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은 거부된다.

- 등록 신청이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이미 등록된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복제 또는 모방한 경우
- 특정 제품의 특성, 품질, 지리적 기원에 대해 대중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거나,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 등록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록 후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는 그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또한, 상품의 진정한 지리적 기원에 관하여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할 의도를 가진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적으로 부당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상기 권리는 제품의 지리적 원산지 표시에 구매자를 오인할 수 있는 수식 표현 및 그림의 배치 또는 기타의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7) 등록 기간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는 무기한 존속한다. 소유권은 등록 전이라도 허위 사실로부터 보호된다. 등록의 유효 기간 동안, 사용이 승인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Denominação de origem registada" (등록된 원산지 표시) 또는 "DO"
- "Indicação geográfica registada"(등록된 지리적 표시) 또는 "IG"

### 8) 권리 소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가 상품의 제조 공정 또는 특정 유형의 알려진 제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변경된 경우, 이해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이 소멸된다.

### 9) 권리 양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다.

가나(Ghana) 01

니제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3.1. 사법 구제

#### 가. 법원 체계

대법원(Supreme Tribunal)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고등법원(District Courts)은 1심 법원이 회부한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해 재판을 실시하며, 고등법원 판사는 직업 법률가 출신이 아니다.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은 모든 형사 및 민사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다. 판사는 직업 법률가 출신이 아닌 선출직이며 각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 나. 관할권

일반 법원(Common Court)은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관할권을 가진다.

#### 다. 임시적 권리 구제 제도

이해 관계자는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시적 권리 구제조치를 일반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라. 항소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 제기해야 한다.

### 3.2. 행정 구제

#### 가. 산업재산권 감독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총 감사관은 침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산업무역부의 감사관은 IPI와 협의하여 위법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감사관은 IPI와 협의하여 사건이 적절하고 일반국민 또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일반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절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산업무역부 또는 IPI의 주도로 실시하거나 이해 관계자의 고발에 따라 착수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산업무역부 감사관과 IPI는 함께 합동조직(joint brigade)을 설치한다.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견된다면, 합동조직은 조서를 작성하여, 산업무역부와 IPI에 제출해야 한다. IPI 국장의 보고를 받은 산업무역부 감사관은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서 권한은 법적으로 허용된 산업 또는 상업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실시되는 활동을 중지시키는 권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 항소**

IPI 국장의 보고를 듣고 제재를 행한 산업무역부 감사관의 조치는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그 항소는 관련 제재의 통지가 발행된 후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산업무역부 장관은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라.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제품 또는 상품의 압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압류된다. 압류는 세관 당국의 주도로 상공부 총감과 협력하여 실시하며,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해 관계자는 압수된 상품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세관 당국에 요구할 수 있고 세관 법원(Customs Court)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해 관계자는 세관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압수된 상품 및 산업재산권 침해를 위해 사용된 자료나 도구는 국가에 몰수된다. 국가에 몰수 신고 받은 품목은 일부 또는 그 특색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관할 법원은 당국이 유해하다고 선언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중 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상품의 파괴를 명령한다.

**마. 벌금 납부**

벌금의 자진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5일이다. 납부는 산업무역부 총감이 발행하는 납입 서식을 사용하여 사업소의 소재지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세입부서(the revenue department in the area)에 맡길 수 있다. 벌금이 자진 납부 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관할 법원에 회부된다.

가나(Ghana) 01

나이지리아(Nigeria) 02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3

모리셔스(Mauritius) 04

모잠비크(Mozambique) 05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VI. 세이셸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1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16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29





## 1.1. 개요

세이셸(SEYCHELLES)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1901년 처음 제정), 상표법(1977년 처음 제정) 및 저작권법(1984년 처음 제정)에 의해 규율된다. 특허와 상표는 세이셸 일반등록청(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서 관리하고, 저작권은 세이셸 문화부(Department of Culture)에서 관리한다. 2014년에는, 특허, 상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산업디자인(디자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를 포괄하는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 이후 14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며, 7년 연장이 가능하다.

선이나 색상의 구성 또는 3차원 형상으로서 적용되는 산업물품 또는 수공물품에 독특한 외관을 제공하거나 패턴이 되는 것이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5년씩 2번 갱신 가능하다.

세이셸 상표법은 상표(trademark), 증명표장(certificate mark), 시리즈 표장(series marks) 및 저명 상표의 방어 상표(defensive marks)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상표는 등록 이후 7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 14년씩 갱신할 수 있다.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예술 작품, 문학/음악 작품의 공연, 영화, 음원, 방송과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25년간 존속된다.

또한 영국(United Kingdom)에서 등록받은 특허 및 디자인은 세이셸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영국 등록 특허 또는 디자인을 등록하는 특허 출원은, 영국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되어야 한다.

세이셸에서, 일반등록청과 문화부 이외에, 사법부, 경찰, 세관, 소기업 진흥기관(Smal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SEnPA) 및 국립 예술 위원회 등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7) 출처: "PRACTICAL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IN AFRICA" written by Adams & Adams, WIPO 리포트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PLAN FOR THE REPUBLIC OF SEYCHELLES"

세이셸은 2000년에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였고 2002년에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과 특허 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하였다. 세이셸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창설을 계획하고 지식재산청을 통해 I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ARIPO')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외, 세이셸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2002. 11. 7.)	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 가. 재무부 국제통상과(The international Trade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국제통상과는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과 무역 협정 협상을 담당한다. 국제통상과는 지식재산 태스크포스의 구심점으로서 기능을 한다.

### 나. 일반등록청(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일반등록청은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상표 등록 및 특허 발생을 담당한다. WIPO의 지원으로 상표 관련 업무의 효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허 관련 업무의 효율도 개선될 계획이 있다.

### 다. 문화부(Department of Culture) /

#### 작가 및 작곡가 협회(Seychelles Society of Authors and Composers)

세이셸 문화부는 저작권을 관리한다. 작가 및 작곡가 협회는 저작권이 발생하는 회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라. WIPO 협력동향

세이셸 정부는 2010년 11월 WIPO와 MOU를 체결하며 지식재산권의 개발 및 집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WIPO에 세이셸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7가지 과제가 설정되었다.

- IP(지식재산)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 IP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 IP 제도 프레임워크 강화
- IP 집행 강화
- IP 인식의 생성 및 강화
- IP 시스템의 사용 강화
- 국가 IP 시스템과 국제 IP 시스템의 연결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28)</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	-	-	-	-	-
2015	-	-	-	-	-	-
2016	-	14	13	511	-	-
2017	-	46	58	479	-	-
2018	-	17	67	690	-	-

28)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C](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C)

## 2.1. 특허

세이셸의 특허 출원은, (i) 일반(비조약우선) 특허 출원, (ii) 조약우선 특허 출원, (iii)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 단계 진입 출원(national phase application), 그리고 (iv) 영국 등록 특허(UK granted patent)의 등록을 위한 출원으로 구분된다. 세이셸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나, 양도증서가 요구된다.

### 가. 보호대상

세이셸 특허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인 1901년 처음 제정되었고 수 차례 개정되었다. 세이셸 특허법<sup>30)</sup>은, 필수품, 작동 기계 및 운송 수단, 화학 및 야금, 제지류, 건축/건설, 기계공학, 물리, 전기 등으로 특허를 분류하여 이들 분야에 관한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세이셸 특허법은,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이셸 특허법은, 일반등록청이 심사부를 구성하고 심사부는 선행기술 조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이 특허 심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행기술에 의해 예상되지 않는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행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지예외가 인정되며, 그 유예 기간은 12개월이다.

영국 등록 특허를 등록하는 특허 출원은, 영국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되어야 한다. 조약우선 특허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이셸 특허법은, 청구항(독립항)이 전제부와 특징부로 구성된 two-part form으로 작성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유럽특허청(EPO)의 실무와 유사하다.

29) 출처: "PRACTICAL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IN AFRICA" written by Adams & Adams, WIPO 리포트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PLAN FOR THE REPUBLIC OF SEYCHELLES", WTO report "Industrial Property Act of Seychelles", <https://www.spoor.com/en/africa-ip-expertise/seychelles/registered-designs/>

30) 2014년 제정된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특허'에 관한 규정을 의미함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특허 출원시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국 외부에서 서명한 경우 영국 영사가 합법화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증만 요구된다.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등록청(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 제출한다.

일반/조약우선/국내 단계 진입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출원인 인적 사항
- 공증된 위임장
- 발명의 양도증(필요시)
- 영어로 작성된 명세서(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 포함)
- 우선권 증명 서류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보고서 사본

영국 등록 특허의 등록에 필요한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출원인 인적 사항
- 공증된 위임장
- 영국 특허(UK patent)의 등본
- 영국 특허 감사관 인증서 (certificate of the UK Comptroller of Patents)

특허 출원의 보완이 인정된다.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완되어야 하며 늦어도 1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허 출원서가 완결되면, 완결된 특허 출원서는 일반등록청에 의해 공시된다.

등록되기 이전에 보정(amendments)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정의 범위는 출원시 제출된 출원서의 발명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 즉 보정에 의해 신규 사항이 추가될 수 없다.

**라.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출원일 이후 14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며, 7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허권 유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영국 등록 특허를 세이셸에 등록하는 특허는 영국 등록 특허와 함께 만료되며 영국 등록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 한하여 유효하다.

특허권자는 등록 특허의 실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특허권이 제한된다.

- 특허 발명과 관련된 실험 목적으로만 실시되는 행위
-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실시된 특허 물품에 관한 행위
- 세이셸의 영공/영토/영해에 진입하는 타 국가의 항공기/차량/선박에서의 실시 행위

양도 및 실시권은 제3자에 대해 유효하도록登記되어야 한다.登記될 서류는, 공증되거나 합법화된 위임장, 그리고 공증되거나 합법화된 양도증/실시계약서이다.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은 해당 등록 특허 발명이 사용되지 않거나 공중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다. 세이셸 특허법에 의하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등록 발명의 제조, 실시, 유통을 제3자에게 인가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완결된 특허 출원서의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사유는 (i)무권리자 출원, (ii)선등록발명 출원이다.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 결과 특허 등록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은 등록된다.

### 바. 비용

(단위: SR)<sup>31)</sup>

항목	관납료
특허 출원	3,000
특허 분할 출원	1,500
자진 보정	500
지시에 의한 보정	500
강제실시권 청구	500
특허 국제 출원	5,000
국제 출원 전송	1,000
조사 및 심사 (심사부에서 청구하는 관납료는 별도)	500

31) 1 SR = 63.32 KW (2020.10.14. 기준)

## VI. 세이셸(Seychelles)

항목	관납료
특허 문서 사본	500
2 ~ 4년차 등록 유지	1,000(/year)
5년차 등록 유지	1,500
6년차 등록 유지	2,000
7년차 등록 유지	3,000
8년차 등록 유지	4,000
9년차 등록 유지	5,000
10 ~ 19년차 등록 유지	10,000(/year)
20년차 등록 유지	12,000
등록유지료의 연체에 대한 추가요금	10%
권리자 변경	500
실시권 설정에 따른 권리 관계 변경	10,000
오기의 정정	250

### 2.2. 디자인

세이셸은 2014년도에 제정된 산업재산권법에서 디자인(산업디자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United Kingdom)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세이셸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 받은 이후 세이셸에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가. 보호대상

세이셸 디자인법<sup>32)</sup>은, 디자인의 물품에 대하여 32개의 항목(class)으로 분류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의 구성 또는 3차원 형상으로서 적용되는 산업물품 또는 수공물품에 독특한 외관을 제공하거나 패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32) 2014년 제정된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의미함

## 나. 등록요건

디자인은 신규성(novelty)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은 디자인 출원일 또는 그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서,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공개한 경우 그 공개는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아니한다.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오로지 기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디자인은 등록 거절된다.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물품에 적용된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 다. 필요 서류

디자인 출원시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국 외부에서 서명한 경우 영국 영사가 합법화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증만 요구된다.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등록청(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 제출한다.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공증된 위임장
-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견본 부가 제출 가능)
- 디자인이 사용될 제품의 종류 및 등급 표시
- 영어로 작성된 출원서(출원인/창작자 정보, 디자인 설명 등)
- 우선권 증명 서류

## 라. 디자인권의 효력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디자인을 창작하는 경우, 그 디자인은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는 경우,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귀속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출원일(우선일)이 빠른 자에게 디자인권이 인정된다. 등록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만 유효하다.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5년씩 2번 갱신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양도) 가능하며, 실시권 설정 또한 가능하다.



## 마. 비용

(단위: SR)

항목	관납료
디자인 출원	2,000
디자인 등록증 발급	500
디자인권의 갱신	2,000(/5 years)
갱신 기한 도과시 추가 납부	500
강제실시권 신청	500
실시권 등록 신청	200
디자인권자의 변경 등록 신청	200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세이셸 상표법은 1978년에 제정되었고 1991년에 개정되었다. 세이셸 상표법은 아래에 상술되는 상표(trademark), 증명표장(certificate mark), 시리즈 표장(series marks) 및 저명 상표의 방어 상표(defensive marks)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 1) 상표(trade marks)

상표는 상품(goods) 또는/ 및 서비스(service)에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의 표장을 의미한다. 상표의 목적은 상거래 과정에서 상품/서비스와 상표의 연결을 표시하는 것이다.

#### 2)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단체표장은 상품/서비스에 관한 표장으로서,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또는 기타 공통적인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한다. 단체표장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법인)의 사용을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 3) 증명표장(certificate mark)

증명표장은 상품/서비스에 관한 표장으로서, 원산지, 재료, 제조 방식, 품질, 정확성 또는 기타 특징과 관련하여 인증되지 않은 다른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증명표장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4) 시리즈 표장(series marks)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다수의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해당 다수의 상표를 시리즈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해당 다수의 상표 중에서 일부를 등록할 수도 있다.

#### 5) 방어 상표(defensive marks)

세이셸 상표법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상표로 저명한 등록 상표가 다른 상품/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해당 상표권자의 출처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록 상표가 다른 상품/서비스에 사용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서비스에 관한 해당 등록 상표를 방어 상표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 1) 거절이유

상표 출원의 등록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 출원 표지(mark)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 출원 표지가 오인/혼동을 유발하거나, 법률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sup>33)</sup>한 표지(mark)와 동일·유사한 지정 상품/서비스인 경우

타인의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그 타인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인 경우에도, 상표 출원인이 선의로 출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상황의 경우 일반등록청 또는 법원은 상표 출원인과 타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상표 출원인에 의하여 동일 상품류/서비스류에 대한 동일·유사 표장이 출원되는 경우, 각 상표 출원인에 관한 권리가 법원에서 결정되거나 합의되기 전까지, 일반등록청은 각 상표 출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2) 색상 제한(limitation to color)

상표는 전체 또는 일부가 하나 이상의 지정된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표가 색상의 제한 없이 등록된 경우, 그 상표는 모든 색상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33) 오인·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

## 다. 취득절차

### 1) 상표 출원 절차

상표 출원시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국 외부에서 서명한 경우 영국 영사가 합법화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증만 요구된다.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등록청(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 제출한다.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출원인 인적 사항
- 공증된 위임장
- 상표(trademark) 사본 (8매), 또는 JPEG 형식의 파일
- 상품류/서비스류 목록
- 출원인의 상거래 활동사항에 관한 정보 (예: 상인, 제조업자)
-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보 (예: “사용 중”, “사용 예정”)
- 조약 우선권 증명 서류
- 특례 우선권<sup>34)</sup> 증명 서류

상표 출원시 지정 상품/서비스를 선택한다. 상품류/서비스류 구분은 국제 분류인 니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세이셸은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의 회원이므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표 출원이 접수되면 심사가 진행된다. 상표 출원 심사는, 상표 자체로서의 적격성과 선출원 상표와의 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상표 출원이 등록되면, 출원 상표는 공고된다.

### 2) 등록 상표의 보정

상표권자는 일반등록청에 등록 상표의 보정을 위한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상표의 보정은 등록 상표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4) 박람회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의 그 출품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우선권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발생

상표권은 처음 등록 이후 7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 14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등록 표장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타인의)는, 해당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여기서 타인은, 등록 표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상표권은 양도될 수 있다. 상표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위임장과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한다.

### 2) 상표사용권

방어 상표를 제외한 상표의 사용권이 인정된다. 상표사용권자(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일반등록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제출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위임장(공증 필요)
- 선언서와 성명서(영어로)
- 사용권 협약서(영어로)

### 3) 상표권 효력의 제한

전술된 바와 같이 동일·유사한 복수의 등록 표장 중 일 표장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등록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또한,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해당 등록 상표의 등록일 이전부터 또는 해당 등록 상표의 사용 이전부터 사용된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장의 이름을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상품의 특징이나 품질을 선의로 기술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해당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정보제공

이해관계인은 상표 출원의 공시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상표 출원의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및 정보 제공은, 등록 거절이유에 대한 진술서가 요구된다.

이의 신청 또는 정보 제공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상표 출원인에게 거절통지서가 발송되고, 상표 출원인은 답변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답변서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포기 간주된다.

양측(상표출원인, 이의신청인/정보제공인)에게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주장은 포기 간주된다. 일반등록청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심리하여 해당 상표 출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 2) 등록 상표의 취소/소멸

상표법은 등록 상표의 취소 및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법원 또는 일반등록청은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한 등록 상표를 소멸시킬 수 있다. 소멸 사유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한 등록 상표가 선의 사용 의도 없이 등록되었고 소멸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불사용에 선의가 없거나,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5년 동안 해당 상표의 불사용에 선의가 없을 경우이다.

한편 법원 또는 일반등록청은, 해당 등록 상표의 선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등록 상표의 불사용이 상표권자에게 귀책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 상표의 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상표가 기술적 단어(descriptive word)를 포함하는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다.

-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특허 기술에 의해 제조되었고 해당 특허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 해당 단어가 해당 상품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표 무효의 예외에 해당한다.
- 기술적 단어에 추가적 요소가 부가된 경우 일반등록청은 해당 등록 상표가 무효로 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등록 상표 중에서 기술적 단어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바. 비용

(단위: SR)

항목	관납료
상표 출원 (증명표장 출원)	1,000 (3,000)
조약 우선권 주장 / 특례 우선권 주장	500
상표 등록 이의 신청	1,000
등록증 발급	500
등록 상표 양수인의 등록	500 (200/additional mark)
상표 등록 갱신/증명표장 등록 갱신/기한도과시 추가	1,000/2,000/500
상표권자(사용권자)의 주소 변경	500 (200/additional mark)
등록 상표 사본 신청	200 (100/additional page)
상표의 양도 또는 사용권 계약의 등록	200
오기의 정정	300

## 2.4. 저작권

### 가. 보호대상

세이셸 저작권법은 1984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991년에 개정되었다. 세이셸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예술 작품, 문학/음악 작품의 공연, 영화, 음원, 방송과 같은 저작물이다. 또한 세이셸의 민속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기도 하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권은, 저작물이 위임이나 고용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은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는 양도되거나 사용권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번역 및 개작을 포함한 복제, 저작물에 관하여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저작물의 방송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세이셸 민속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세이셸 정부의 지시와 통제 하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세이셸 정부에 귀속된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은, 세이셸이 당사국이며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는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거주자에게도 확장된다. 저작물의 소유권 등록 및 저작물에 관련된 계약, 사용권(license), 양도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음악 작품 및 예술 작품(사진과 공연 제외)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25년까지 유효하다. 다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이 완성되거나 공개된 이후 25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 과학적 연구, 개인적 사용, 비평 및 검토 등을 목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저작물을 사용(실시)하는 행위
- 사법 절차에서 사용(실시)하는 행위
-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실시)하는 행위

#### 라. 등록요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세이셸 국적자이거나 세이셸에 거주하여야 하거나, 저작물이 세이셸에서 최초로 공개되어야 한다. 저작권이 존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다.

## 2.5 지리적 표시

#### 가.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 지역을 원산지로서 하거나 그 지역에서 유래된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품질, 평판 및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역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된 산업재산권법의 일부이며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규정한다.

## 나. 출원인의 제한

지리적 표시는, 출원서에 명시된 상품에 관련하여 출원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정부 기관으로 출원인이 제한된다.

## 다. 지리적 표시 출원

지리적 표시 출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 등록이 요청되는 지역(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상품
-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질, 평판 및 기타 특성

## 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효력

등록부에 명시된 지역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제3자가 해당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권리가 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그 보호기간의 한정이 없다.

지리적 표시가 지역(지리적 표시)에서 유래하지 않은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 출원시 거절될 수 있고, 등록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에 의해 법원에 무효 청구될 수 있다.



### 3.1. 사법구제

#### 가. 잠정조치(가처분/가압류 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 세관 절차를 완료한 이후 상거래 수입 및 수출 상품의 유통이 예상되는 경우
-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가 파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나. 증명책임의 전환<sup>35)</sup>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해당 등록 특허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경우, 법원은 피고(침해자)에게 실시 행위가 해당 등록 특허의 프로세스와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제조 및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피고(침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반대 증거가 없다면 등록 특허의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신규한 경우에, 특허권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다. 소제기 제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권리자가 그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단, 침해자가 침해행위임을 알고 실시하였거나 불공정 행위로서 실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라. 항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 통지 이후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5)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이며, 침해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이란 지식재산권 침해 입증의 곤란함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침해자)에게 증명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https://namu.wiki/>)

## 3.2. 형사구제

### 가. 특허권

특허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 특허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 실시, 전시, 은닉, 양수, 수출, 수입하는 행위
- 특허권의 공정 발명을 사용(실시)하는 행위

### 나.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실시, 은닉, 양수, 수출, 수입하는 행위는 형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 다. 상표권

상표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 등록 상표의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이미 부착된 등록 상표를 변경하는 행위

### 라.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 지리적 표시가 적용된 제품을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전시하는 행위
- 제품, 용기, 포장, 리본, 라벨, 송장, 포스터 등에 "A 타입(type)", "A 종(species)", "A 시스템(system)", "A와 유사한", "A 대응의", "A와 동일한"과 같은 문구로 제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는 행위(여기서 "A"는 지리적 표시를 의미)

법원은 세이셸에서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고의 침해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 침해의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침해의 심각성과 권리자/소비자/대중/국가에 미치는 피해에 따라 상기 징역에 추가하여 최소 50,000 세이셸루피(SR)에서 최대 500,000 세이셸루피(SR)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VII. 수단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3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35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46



## 1.1. 개요

수단은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하지 않으며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출원에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등록된 특허가 갖추어야할 요건으로서 흠결시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된다.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도 실체심사를 하지 않으며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출원에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신규성은 등록된 디자인이 갖추어야할 요건으로서 흠결시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된다. 디자인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시각적 기호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또한, 수단 저작권법은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예술 작품, 문학/음악 작품의 공연, 영화, 음원, 방송, 소프트웨어, 과학논문과 같은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의 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수단의 저작권법은 등록처에 의해 저작권 기록부가 작성될 것을 규정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된다.

수단의 지식재산권 법률은 현대적이면서 집행 가능하도록 제정되어 있으나, 특히 온라인 침해 방지 및 세관 조치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절차의 결함, 지식재산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 문제, 그리고 세관 조치의 제한된 효과 역시 지식재산 분야의 개선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다.

수단은 지식재산에 관한 다음의 조약 및 협정의 가맹국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협약

36) 출처: "PRACTICAL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IN AFRICA" written by Adams & Adams, WIPO Report "IP in Sudan" by Adil Khalid Hassan Hilal & Migdam Elsheikh Abdelgani, Doctoral thes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ir Exploitation under the Sudanese Laws and TRIPs Agreement" by Samia Awad Mohamed Hassan

- 특허협력조약(PCT)
-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이하 'ARIPO')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 가. 수단 특허청(Sudan Patent Office)

특허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특허 업무를 처리한다.

### 나. 수단 디자인청(Sudan Industrial Design Office)

디자인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디자인 업무를 처리한다.

### 다. 등록처(Registrar)

수단 법률에 의거하여 수단 상공부 장관(the Minister of Commerce and Supply)이 임명하며, 상표 등록부를 관리하고 상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라. 수단 관세청(Customs Authority)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국내외 상품의 수입 통관을 통제한다.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37)</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	8	1,616	3,788	545	-
2015	267	1	1,333	3,416	230	20
2016	284	1	1,332	3,442	348	33
2017	281	12	1,558	3,488	488	57
2018	349	31	1,780	3,565	114	47

37)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D](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D)

## 2.1. 특허/실용신안<sup>39)</sup>

### 가. 보호대상

수단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학적 성질의 원리(principle) 또는 발견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이라면 수단의 특허법에 따른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 무방하다.

### 나. 등록요건

수단 특허법은 실제심사를 하지 않으며 후술되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출원에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아래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등록된 특허가 갖추어야할 요건으로서 흠결시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된다.

#### 1) 신규성

수단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일(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내용은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신규성이 있는 발명은 선행기술에 의해 예상되지 않는 발명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예외가 인정된다. 출원인이 공식적인 전시회에서 특허 출원 발명을 공개하고 특허 출원일이 공개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그 공개는 예외적으로 신규성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특허법에서 공지 예외는, 출원인에 의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되고 공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적용된다. 수단의 공지 예외 조항은 우리 특허법과 비교하여 공개의 범주와 유예기간이 다르다.

#### 2) 진보성

수단 특허법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은 출원일 기준으로 출원 발명에 관련된 기술로부터 자명(obvious)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는 미국 특허법의 진보성(non-obviousness)의 정의와 맥을 같이 한다.

38) 출처: "PRACTICAL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IN AFRICA" written by Adams & Adams, WIPO Report "IP in Sudan" by Adil Khalid Hassan Hilal & Migdam Elsheitk Abdelgani, Doctoral thes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ir Exploitation under the Sudanese Laws and TRIPs Agreement" by Samia Awad Mohamed Hassan, SUDAN Patents Act (Act No. 58 of 1971)

39) 수단 특허법은 1971년 제정되었고 특허법 시행령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단 특허법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수단 특허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규정은 선진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수단 특허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또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 다. 취득절차

### 1) 특허 출원 유형

수단에서 특허 출원시 선택할 수 있는 특허 출원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일반 특허 출원(non-convention application)
- 조약우선 특허 출원(convention application),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일 인정
- 국내단계 출원(national phase application), PCT에서 수단이 지정국인 경우
- ARIPO 출원, 수단을 지정하는 경우
- 분할 출원,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 2) 특허 출원시 제출 자료

- 출원인 정보
- 위임장 (공증/인증 필요 없음)
- 선언서/양도증
- 특허출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을 포함하며, 아랍어로 작성하되 영어로 작성된 경우 아랍어 번역문을 제출)
- 우선권 인증 서류 (필요시)
- PCT 국제예비보고서 (필요시)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증명서와 그 정관의 등본(PCT 신청시 필요하지 않음)



3) 방식심사

출원 신청서류가 구비되어있는지 여부,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sup>40)</sup> 여부, 우선권 주장시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심사된다. 출원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그 특허 출원은 등록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 관련 서류가 미흡한 경우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하나의 발명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특허법의 한정요구(Request of Restriction)와 유사하다.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분할출원이 가능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시 그 출원일(등록적격성 판단 및 특허등록만료일 기산점을 위한)은 본래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적용된다.

4) 실체 심사 및 등록여부 결정

수단 특허법에 따르면, 방식 심사를 통과한 특허 출원은 실체 심사 없이 등록된다.(무심사주의<sup>41)</sup> 운영)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공보에 특허등록번호와 함께 게시된다.

라.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되며, 대한민국 특허법 제81조의3과 같은 ‘특허권의 회복’ 제도는 수단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료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이전) 가능하며,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1) 특허 무효 소송

특허 출원의 무심사주의를 보완하여, 수단에서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의 무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특허 발명이 선출원주의에 반(反)하는 경우<sup>42)</sup>

40) ‘일 발명 일 출원’으로서 하나의 특허 출원에 하나의 발명이 포함될 것이 요구됨

41) 대한민국의 경우 1998년 실용신안에 무심사주의가 채택되었고 2006년 심사주의로 회귀함

42)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된 경우

## 2)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제3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할 권리가 부여된다.

### (a) 물건 발명인 경우

- 특허제품(물건)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는 행위
- 특허제품의 판매/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특허제품을 보관하는 행위

### (b) 방법 발명인 경우

- 공정(방법)의 적용 행위
- 공정(방법)을 통해 얻어진 제품과 관련하여 상기 (a)에 언급된 행위

## 3) 특허권의 보호 범위 및 제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출원서에 포함된 발명의 설명 부분과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데 참조될 수 있다.

특허권은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만 인정된다. 특허 출원일(우선일)에 선의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는, 특허권에도 불구하고 실시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다. 이 실시할 권리<sup>43)</sup>는 해당 사업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 4)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ces)

이해관계인은 강제실시권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일로부터 4년이 도과하거나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이해관계인은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의 허용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수단(Sudan)에서 특허 발명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 특허 발명이 해당 제품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수단(Sudan)에서 특허 발명의 활용이 수입에 의해 억제되는 경우
-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의 실시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수단 정부는, 국방이나 경제 또는 공중 보건에 중요한 특허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허의 출원일이나 등록일에 관계없이 강제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수단(Sudan)으로의 수입에 관하여도 강제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다.

43) 대한민국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과 유사함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에 적절한 실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강제실시권자는 해당 특허에 관하여 다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강제실시권자는 실시권자의 인수 또는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비즈니스에 한해서만 강제실시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마. 노하우(technical know-how)<sup>44)</sup> 보호**

수단 특허법은 공개를 전제로 하는 발명 외에 노하우에 관하여 규정한다. 수단 특허법은, 노하우를 개발한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3자에 의한 불법 사용 및 공개로부터 노하우를 보호한다.

노하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특허권의 침해와 동일하게 사법구제 및 형사구제가 적용될 수 있다.

**2.2. 디자인<sup>45)</sup>**

**가. 보호대상**

수단 디자인법은, “디자인(산업디자인)은 모든 산업 제품 또는 수공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는 선(line)과 색채(colors)의 조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등록요건**

수단 디자인법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으며 후술되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출원에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아래의 신규성은 등록된 디자인이 갖추어야할 요건으로서 흠결시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된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은,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44) 노하우(know-how)는 무언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서 조직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고, 영업비밀(trade secret)은 조직 자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전문화된 유형의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정보이다. 노하우와 영업비밀 사이에 이와 같이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혼용되어 사용된다. 수단 특허법에서도 노하우가 영업비밀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5) 수단 디자인법(산업디자인법)은 1974년 제정되었고 디자인법 시행령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

수단 디자인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sup>46)</sup>가 규정되어 있는데,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 출원 디자인을 수단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박람회 등에 전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하였다면, 그 전시는 디자인의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창작자 또는 그로부터 디자인을 받을 권리는 받은 자는,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아랍어로 작성)는 아래와 같다.

- 출원인 정보
- 위임장 (간단한 서명/날인 또는 공증)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합법화된) 법인 설립 증명서
- 도면 (사진 또는 스케치)
-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재료에 대한 세부 정보
- 대략적인 치수
- 조약 우선권 자료(조약 우선권 주장시)

출원 신청서류가 구비되어있는지 여부, 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反)하지 않는지 여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여부 등이 심사된다. 우선권 주장 관련 서류가 미흡한 경우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출원은 등록되며 공보에 게시된다.

출원 이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86일(최근 5년 평균)이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면 공보에 게시된다. 디자인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갱신수수료를 납부하면 5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 디자인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이전) 가능하며 실시권 설정이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 보호될 수 있다.

46)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참조

1) 디자인 무효 소송

디자인 출원의 무심사주의를 보완하여, 수단에서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등록 디자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무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등록 디자인이 신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등록 디자인이 선출원주의에 반(反)하는 경우<sup>47)</sup>

2)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제3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할 권리가 부여된다.

- 상품 제조에 등록 디자인의 사용
-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전시/복제하는 행위

2.3. 상표

수단 상표법(Trade Marks Act)과 상표법 시행령은 1969년 제정되었다. 수단 상표법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the Minister of Commerce and Supply)은 상표에 관한 등록을 수행하는 등록처(Registrar)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에 관한登記부(the Register)는 상업登記소(Commercial Registry), 상공부, 또는 상공부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가. 보호대상

수단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Trade Mark)/서비스표(Service Mark)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시각적 기호이며,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Origin)는 상품/서비스가 일 지역 또는 국가 등에서 유래됨을 표시하는 표현 또는 기호이다.

나. 등록요건

상표 출원의 등록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 출원 표지(mark)가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경우
- 출원 표지가 지정 상품/서비스의 고유한 특성 또는 산업적 기능에 의해 부과되는 모양 또는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

47)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된 경우

- 출원 표지가 거래 과정에서 지정 상품/서비스의 품질, 수량, 목적, 가치 및 원산지와 같은 특수성을 나타내는 표시인 경우
- 출원 표지가 지정 상품/서비스의 관례가 되는 경우
- 출원 표지가 국가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생성된 기구의 상징, 이름 또는 이니셜과 유사한 표시인 경우(예외: 해당 국가/기구가 승인하는 경우)
- 출원 표지가 배타적 종교/종파/부족의 상징 또는 지도자의 초상화 또는 종파적 의미와 동일·유사한 경우
- 출원 표지가 오인/혼동을 유발하거나, 법률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상표 출원은 등록될 수 없다.

- 출원 표지가 제3자 소유의 표시와 유사하거나 그 일부를 사용하거나 번역본을 구성하여 대중(public)이 오인할 수 있는 경우
- 출원 표지가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sup>48)</sup>한 표지(mark) 및 동일한 지정 상품/서비스여서 대중(public)이 오인할 수 있는 경우
- 출원 표지가 다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rules for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에 반(反)하는 경우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상표 출원 절차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아랍어 또는 영어로 작성)는 아래와 같다.

- 출원인 인적 사항
- 위임장(합법화되어야 하고, 출원인이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 승인된 대리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함)
- 출원 상표(trademark)
- 상품류/서비스류 목록
- 출원 상표의 분류

48) 오인·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

상표 출원은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공식 공보에 게시되며, 게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사유는 후술된다.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실패하면, 상표 출원은 등록 결정된다.

등록 거절이유가 없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 2) 이의 신청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제기 통지서'를 제출하게 되며 사본은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출원인은 '이의 제기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처는 각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고려하여 상표 출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처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근거(사유)는 상표 출원의 등록 거절이유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한다.

- 출원 표지가 사기에 의해 획득된 경우
- 출원일 기준, 상표 출원인에게 출원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 출원인이 출원 표지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발생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등록 표장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 2) 상표권 양도

상표권은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양도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 사실이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시 수수료가 요구된다. 양도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양수인의 위임장(합법화된)
- 양도 증서
- 상표권자가 기업인 경우 법인 설립 인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3) 상표권자의 권리

상표권자는 제3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할 권리가 부여된다.

- 대중을 오인할 정도로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사용
-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기호, 상호의 사용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4) 상표권 무효 소송

다음과 같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등록처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상표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등록 상표가 등록 거절이유를 가지는 경우(변론 종결시 또는 판결시 기준)
- 등록 상표가 사기로 획득된 경우
-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이후 5년 동안 수단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상표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 2.4. 저작권<sup>49)</sup>

### 가. 보호대상

수단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예술 작품, 문학/음악 작품의 공연, 영화, 음원, 방송, 소프트웨어, 과학논문과 같은 저작물이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아래와 같이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저작자(또는 소유자)에게 제3자가 저작물의 복제, 배포, 변형, 저작물을 통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제적 권리는 양도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사용권이 실시될 수 있다.

도덕적 권리는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이며, 저작자로서 인정받을 권리, 저작물 출판 결정권, 저작물의 무 결손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도덕적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49) 수단 저작권법은 1996년 제정되었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부터 유효하게 된다. 저작권(저작권의 경제적 권리)의 만료 시점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되는 시점이다. 아래의 경우, 저작권(저작권의 경제적 권리)의 만료 시점은 저작물이 창작되거나 공개된 이후 25년이 되는 시점이다.

- 사진, 영화, 시청각 작품의 경우
- 저작자의 사망 이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인 경우
- 가명 또는 익명으로 출판/공개되는 경우

저작권의 도덕적 권리의 만료 시점은 저작자의 사망일이다.

### 라. 등록요건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수단의 저작권법은 등록처에 의해 저작권 기록부가 작성될 것을 규정한다.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 양도 계약은 그 등록이 의무적이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저작자가 수단의 국민이거나 저작물이 수단에서 최초 공개되는 것이다.

등록 신청 이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25일(최근 5년 평균)이다.

06

세이셸(Seychelles)

07

수단(Sudan)

08

에티오피아(Ethiopia)

09

우간다(Uganda)

10

짐바브웨(Zimbabwe)

### 3.1. 사법구제

수단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이 침해 위협을 받거나 침해당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방지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수단 특허법은, 공정 특허의 경우 해당 공정 특허에 의해 생산된 물건과 제3자가 생산한 물건이 동일하다면 제3자가 생산한 물건은 해당 공정 특허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한다.<sup>50)</sup>

수단 디자인법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디자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이 침해 위협을 받거나 침해당한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방지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수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증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침해로 인한 수입의 손실과 저작권자 평판 등이 고려된다. 법원이 침해증지판결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내리면, 피고는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수단 관세청은 위조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한다. 수단 관세청이 행하는 국경 조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자는 등록된 권리가 침해되거나 수입 제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세관에 해당 수입 제품의 유통 정지(압수/압류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에 국경 조치에 관한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자는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 정지 요청이 취소/해제된다. 그러나 수단 관세청은 필요한 경우 국경 조치를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50) 대한민국 특허법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과 유사함

### 3.3. 형사구제

수단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1,000파운드<sup>51)</sup>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재범의 경우(5년 이내), 벌금이 2배로 증가될 수 있다.

수단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상표법에 따르면, 수단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등록된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2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방조하는 자(者는) 5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또는/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수단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언론에 광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등록 상표가 적용된 상품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거나 조각하거나 인쇄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판매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거나 포장에 사용하거나 기타 노출에 의하여 출처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원산지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를 하거나,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표시되더라도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origin)에 '타입', '류(kind)', '이미테이션(imitation)'과 같은 기재를 표기하는 행위
- 등록 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표장이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단 디자인법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디자인법에 따르면, 수단에서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및 1,0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재범의 경우(5년 이내), 벌금이 2배로 증가될 수 있다.

수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단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벌금형(법원이 정함) 또는/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벌금형/징역형과 함께 저작권 침해물의 압수하여 파기할 수 있으며 일간지에 판결문을 게시할 수 있다.

51) 수단의 화폐 단위, 1 Sudanese pound = 20.43 KW (2020.10.27 기준)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VIII. 에티오피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5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5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70
- 04. 기타 \_ 172



## 1.1. 개요

에티오피아는 파리 조약 협약국이 아니며, 마드리드 협정/프로토콜, PCT나 WTO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우선권을 인정한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허여일로부터 3년째를 기점으로 매년 발명의 실시를 증명해야 하며, 매년 유지료를 선납해야 한다. 실용신안 소유자도 에티오피아에서 자신의 발명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한편, 해외에서 특허를 받았고 권리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 도입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 도입 특허는 국가차원의 기술의 채택, 활용, 개선 및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독점적으로 실행되는 제도이다.

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가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선이나 색상의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3차원적인 형태로 정의되며,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상표는 한 사람의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또는 상품의 형태, 포장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한다.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년이고, 6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에티오피아는 파리 조약, PCT 조약, 베른 협약, 마드리드 의정서 등 주요 지식재산권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베른협약, 파리협약, 마라케시 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비준 동의안 처리를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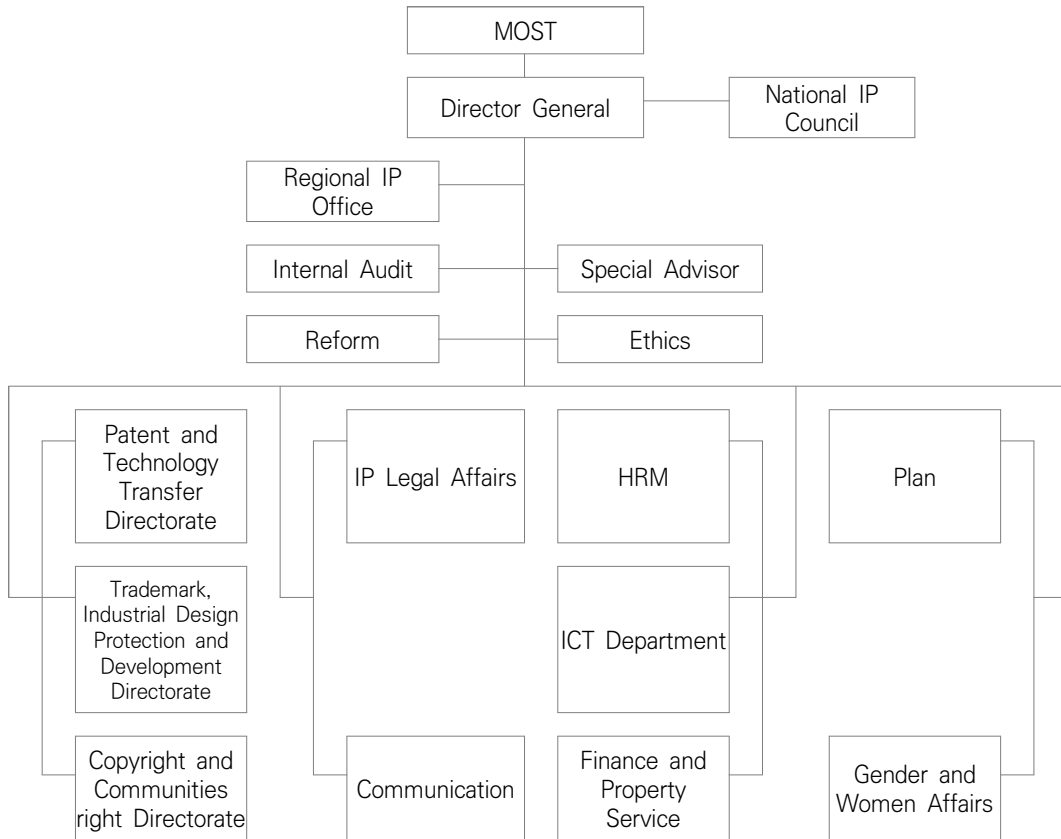
에티오피아는 다음과 같은 국제/지역협정의 회원국이다.

-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1982년)
- WIPO 조약(1998년)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및 관련 법률

에티오피아 지식재산청(EIPO)의 조직도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림] 에티오피아 EIPO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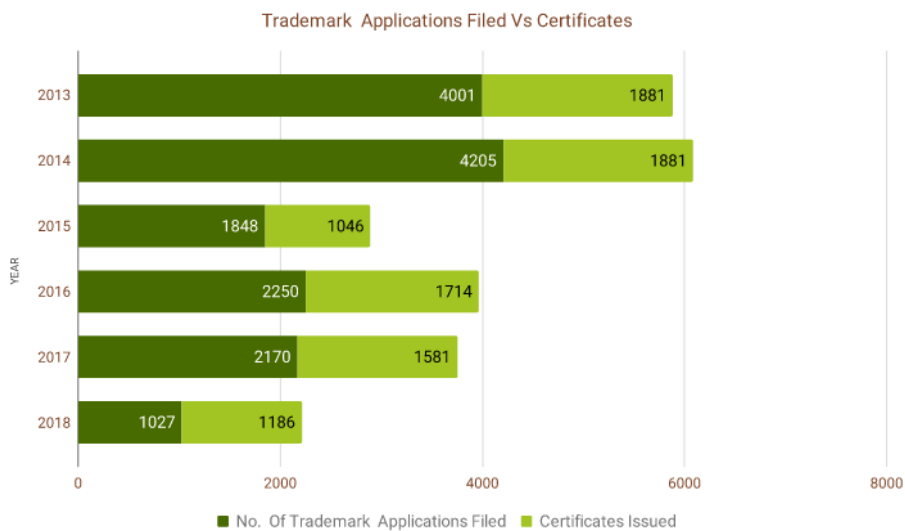
<b>사이트</b>	<a href="https://www.eipo.gov.et">https://www.eipo.gov.et</a>
<b>주소</b>	Kasanchis around Urael Church, P.O. Box 25322/1000, Addis Ababa, Ethiopia P.O.Box 25322/1000
<b>전화번호</b>	(+251)11 552 8000
<b>이메일</b>	tiscethio@gmail.com

EIPO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및 이용의 방지를 촉진
- 특허문서에 수록된 기술정보를 수집·정리·보급하고 그 활용을 촉진
-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정부에 연구, 분석 및 권고
-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지식 재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52)53)</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	22	1,274	2,931	-	-
2015	18	32	865	983	-	-
2016	10	26	1,073	1,177	-	-
2017	14	39	1,083	1,087	-	-
2018	13	49	542	485	-	-



52)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ET](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ET)  
 53) <http://www.ebti.gov.et/>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에티오피아는 파리 조약의 협약국이 아니며, PCT나 WTO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우선권을 인정한다. 에티오피아의 특허는 제품이나 공정에 관련되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다. 다만, 다음의 발명은 특허를 얻을 수 없다.

- 공공의 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행위
- 식물 또는 동물 품종 또는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과정
- 게임을 하거나 상업 및 산업 활동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이나 방법
- 과학적 이론과 수학적 방법
-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의 치료와 인체 또는 동물 신체에 시행되는 진단 방법에 대한 평가

에티오피아의 법률에 따른 특허의 종류는 이하와 같다.

-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 타국에서 이미 특허 받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입 특허[patents of introduction(or importation)]
-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

### 나. 등록요건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특허를 얻을 수 있다. 선행기술은 신청일 이전 또는 구두 공개, 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기간

#### 1) 출원시 요구사항

- 출원인 관련 세부정보
- 공증된 위임장
- 발명의 양도서(해당되는 경우)
- 영문 및 암하리어(청구항, 도면 및 요약서 포함)로 된 명세서
- 우선권 문서의 공증된 사본(해당되는 경우)

## 2) 조약 우선권

비록 에티오피아는 파리조약 협약국이 아니지만, 에티오피아 특허청은 우선권을 인정하고, 우선적 외국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적 청구권을 부여한다. 우선권 주장은 최초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3) 심사/절차

방식심사 뿐만 아니라 실체심사도 실시한다. 모든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실체심사가 뒤따른다. 실체심사는 외국 출원인이 다른 국가에서 해당 출원에 대해 부여한 특허의 사본을 제출하여 소위 도입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동일한 출원이 2개 이상의 특허 출원(우선일이 같은 경우)은 특허청에서 특허권 허여를 거부할 수 있다. 특허권이 허여되면 에티오피아 특허청은 관보에 특허권 허여에 대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또한, 특허증 및 특허권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특허권을 기록한다.

## 4) 이의신청

이의신청 관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5) 특허 심사기간

출원부터 특허 허여까지의 평균 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년, 도입 특허의 경우 약 4개월이 걸린다.

## 6) 대리인

에티오피아에 본적을 두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자는 허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에티오피아에 본적을 두지 않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발명가는 에티오피아에 본적을 둔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대리인의 특허출원 절차 진행을 위한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도입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 절차를 개시할 때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된다.

## 7) 거절결정 불복

지식재산권 거절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특허청의 최종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의 최종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 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등록의 효과

특허 소유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는 특허 발명의 제조,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도입 특허 소유자는 특허권자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특허권 행사의 제한

다만, 특허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권리행사 상의 제약이 있다.

- 비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이 행하는 행위
- 과학적 연구와 실험만을 위한 특허 발명의 활용
- 특허권자에 의해 에티오피아에서 시판되고 있는 특허 물품에 관한 소송
- 국가 안보, 영양, 건강 또는 필수 경제 분야 개발을 위한 특허 발명의 활용

에티오피아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 제한 조항이 있다. 특허권자는 과학적 연구와 실험 또는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행위나 특허권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시장에서 일어나는 생산물에 관한 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 또는 특허 받은 제품을 영공, 영토, 해상에 우연히 들어온 다른 국가의 항공기, 육상, 차량 또는 선박에 사용할 수 없다.

특허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지급에 따라, 특허청은 공익을 위해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 관청이 지정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3) 존속기간 및 유지관리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15년 후 만료된다. 그러나 발명이 에티오피아에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5년의 존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허여일로부터 3년째를 기점으로 매년 발명의 실시를 증명해야 하며, 매년 유지료를 선납해야 한다. 실용신안 소유자도 에티오피아에서 자신의 발명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 4) 강제실시권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위원회(에티오피아 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 특허 소유자가 선행 특허 또는 후행 특허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자신의 발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특허권자가 특허권 허여로부터 3년 또는 출원으로부터 4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에티오피아에서 발명품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5) 양도 및 라이선싱

특허, 실용신안 증명서 또는 특허 출원은 법률에 따라 권리 이전, 상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즉시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특허청에 기록되어야 한다. 소유권의 모든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양도시에는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허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과 기타 문서로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양도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후, 특허청은 소유권 변경을 기록하여 공개한다.

### 마. 심판제도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특허 또는 후술하는 도입 특허(patent of introduction) 및 실용신안의 무효를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에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은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 침해에 따른 특허권의 집행은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 특허의 대상이 특허를 획득할 수 없는 점을 입증할 경우
- 통상의 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발명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이해당사자는 판결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바. 비용

특허권을 허여받기 위해 특허청에 지불하는 평균 비용은 개인이 126.50달러이고 기업이 505달러이다. 반면, 실용신안을 허여받기 위한 평균 비용은 개인 신청자가 117.50달러, 기업이 470달러이다.

## 2.2 실용신안 및 도입특허

### 가.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을 보호한다. 즉, 기존 기술의 작은 개량을 수반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이 개발되었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은 실용신안 인증서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실용신안 인증서는 5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발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될 경우 5년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은 허여 또는 거절 전 언제든지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실용신안에 대한 심사는 특허에 적용되는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 나. 도입 특허

해외에서 특허를 받았고 권리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해 당사자의 선언에 따라 도입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 도입 특허는 국가차원의 기술의 채택, 활용, 개선 및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독점적으로 실행되는 방법이다.

도입 특허의 요건은 발명 특허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하며 동일한 형식에 따른다. 상기 요건에 추가하여, 도입특허의 출원인은 해당 외국 특허의 출원 번호, 날짜 및 출처 또는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도입 특허는 최대 10년까지 유효할 수 있으며 발명이 부여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발명의 사용을 증명하고 관련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타 특허에 적용되는 요건, 조건 및 허가 절차도 도입 특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2.3. 디자인

### 가. 개요

에티오피아는 파리조약 협약국이 아니며 WTO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에티오피아 특허청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에티오피아로의 출원서가 제출될 경우, 우선권 청구를 인정한다.

## 나. 보호대상

### 1) 디자인 보호 제외

기술적 결과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

### 2) 등록가능대상

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가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선이나 색상의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3차원적인 형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나 구성을 포함하며 공공질서나 도덕성에 반하는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신규성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디자인의 기본적인 특징이 에티오피아 또는 다른 국가에서 알려진 다른 디자인의 특징과 다를 경우,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가진다고 본다. 디자인이 제품의 반복적인 제조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 실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기간

### 1) 출원

디자인 등록 출원은 에티오피아 특허청(EIPO)에 접수하며, 출원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출원인 정보의 세부사항
- 위임장(공증된)
- 디자인 위임장(만약,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 그래픽 또는 그림
- 우선권 문서의 인증된 사본 및 검증된 영어 번역본(영문이 아닌 경우)

### 2) 디자인 분류

한 제품에 통합되는 하나의 디자인 또는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제품에 통합되어 세트로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디자인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 분류에 대한 명시적 요건은 없다.

### 3) 심사/절차

디자인 출원은 방식 심사의 요건 검토와 함께 디자인의 등록요건(예: 이전에 제출한 디자인에 의해 예상되지 않고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갖는지)에 대해 검토된다.

### 4) 이의

이의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및 유지관리

디자인에 대한 보호 기간은 5년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2회 5년씩 갱신할 수 있다.

### 2) 디자인 등록의 효과

디자인 등록권자는 디자인을 제조,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3) 침해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 디자인권의 표시/마킹 관련 조항도 없다.

## 2.4. 상표

### 가. 개요

에티오피아는 파리협약의 회원국이 아니며, 마드리드 협정/프로토콜이나 WTO의 회원국도 아니다.

### 나. 보호대상

#### 1) 상표의 정의

상표는 한 사람의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상표는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또는 상품의 형태, 포장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 2) 단체표장의 정의

"단체표장"이란 상표의 소유자인 조합원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업무와 구분하는 상표를 말한다.

#### 3) 유명상표의 보호

에티오피아는 파리조약 협약국은 아니지만, 상표 등록 및 보호에 대한 선언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상표가 에티오피아에도 잘 알려져 있다면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다. 등록요건

#### 1) 상표의 종류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제품 및 서비스 표시
- 단체 포장

#### 2) 색상 제한 여부

상표는 흑백(이 경우 모든 색상 조합에서 보호) 또는 색상(이 경우 등록된 색상 조합에서만 보호)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분류

국제상품 및 서비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가 적용된다. 출원서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 분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 4) 부등록상표

다음의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표시
- 소리 또는 냄새로 구성된 표시
- 공공의 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표시
- 지원자의 성(姓) 또는 동의 없이 다른 개인의 성(姓)만으로 구성된 표시
- 품질, 수량, 의도된 목적, 가치, 재화나 용역의 지리적 원산지, 생산 시기 또는 재화나 용역의 기타 특성을 지정하는 표지로만 구성된 표시
- 등록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의 언어 또는 경제 및 비즈니스 활동에서 관습화된 표지로만 구성된 표시
- 모든 국가, 정부간 또는 국제기구의 국기, 엠블럼, 이름 또는 공식표지와 동일하거나 모방한 상표
-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원과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 상품의 특성 또는 기술적 결과 획득에 필요한 형상으로만 구성된 표시
-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상표나 서비스에 대한 이전의 상표 등록이나 신청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대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에티오피아에서 다른 사람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잘 알려져 있거나 확립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또는 번역이 포함된 상표
- 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에티오피아에 잘 알려져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거나 번역되는 상표
-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보호한 문학 또는 예술적 권리 또는 사진이나 디자인에 대한 타인의 권리의 특징적인 제목을 포함하는 표시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기간

### 1) 조약에서의 우선권

에티오피아는 파리협약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에티오피아서의 출원이 최초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될 경우, 청구되는 우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출원절차

상표 등록 신청은 에티오피아 특허청(EIPO)에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 및 문서가 필요하다.

- 출원인의 정보 관련 모든 세부사항
- 영어와 암하리어로 된 위임장
- 자국등록 인증서의 인증된 사본
- 상표 사본
-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출원서는 하나의 상표만 포함할 수 있지만 분류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특허청(EIPO)은 상표와 관련하여 독점권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식화된 주의 통지 시스템을 관리한다.

### 3) 심사절차

에티오피아 특허청(EIPO)은 출원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출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어와 암하리어 두 가지 신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다.

### 4) 에티오피아에 도입된 온라인 상표 출원 시스템

2018년 12월, 에티오피아 특허청(EIPO)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온라인 상표 출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IP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EIPO와 WIPO 간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 상표 출원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에티오피아에서는 인쇄 기록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서 EIPO 업무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출원시 요구되는 위임장과 같은 문서의 원본 제출은 온라인 출원서가 심사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대리인에 의해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5) 에티오피아 특허청(EIPO)과 유럽 특허청(EPO)의 제휴

유럽 특허청(EPO)은 아프리카 여러 IP 사무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륙으로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EPO와 EIPO는 에티오피아의 국가 특허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특허 절차를 간소화하며,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특허 심사를 위해 현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격년제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실제로 이 협력사업의 영향은 EIPO에 제출된 출원서들을 처리하고 심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두 기관은 에티오피아에서 EPO에 부여된 특허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EPO는 모로코 및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먼저 EPO 특허 효력의 연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년이다. 갱신은 수수료 납부 후 6년 연속 시행될 수 있다. 갱신 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재화 및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표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다. 상표권 존재를 알리는 중간 주의 통지서(Interim cautionary notices)는 등록일자의 2주기와 4주기에 게재된다.

#### 2) 양도

상표권 양도에 대한 기록은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기록이 권장된다. 양도시 기록 요구 사항은 권한 위임장 및 양도증서이다.

#### 3) 라이선스

라이선스의 기록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제3자에 대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 라이선스의 기록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소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
- 실시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
- 라이선스 약관

#### 4) 상표 등록의 효력

상표권자는 또한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시나 표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용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상표의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기타 유사한 행위에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등록 마크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상표 등록은 등록이 적용되는 상표나 서비스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공고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IPO는 법률의 관점에서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절차

상표 등록에 반대하는 자는 EIPO에 근거서류와 함께 그 근거를 기재한 이의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EIPO는 출원인에게 사본을 발송하고, 출원인은 규정된 기간 내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표 출원인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면, EIPO는 이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다. EIPO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 3) 이의의 근거

이의를 성공시키려면, 상대방 당사자(이의신청인)는 출원서가 상표 등록 및 보호에 대한 선언서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4) 상표 무효

상표 등록은 이해관계인의 서면 요청 또는 EIPO 자체의 발의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는 등록이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06

세이셸(Seychelles)

07

수단(Sudan)

08

에티오피아(Ethiopia)

09

우간다(Uganda)

10

짐바브웨(Zimbabwe)

### 5) 사용요건 및 취소

상표는 에티오피아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바. 침해

#### 1) 상표 침해

등록 상표는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권한 없이 상표권자 전용으로 지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 2) 상표권 침해 예외

상표 등록은 상표권자에게 제3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 상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사용
- (단순한 식별이나 정보의 목적에만 국한되며 오도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이름, 주소, 가명, 지명, 지명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 품질, 수량, 목적지, 가치, 원산지, 생산시간 또는 공급에 관한 정확한 표시의 진정한 사용

등록된 상표 또는 기호 ®를 사용하는 등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표시는 선택사항이다.

### 사. 비용

(단위: ETB)

구분	수수료
상표출원	1,750
상표등록	3,000
상표갱신	2,200
상표의 소유권 이전 등록	1,300
상표의 라이선스 계약 등록	1,300

## 2.5. 저작권

### 가. 개요

저작권 관련 법률은 저작권 및 인접 권리보호에 관한 410/2004 선언(2004년)이며, 이 선언은 저작권 작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또한 공연자, 제작자,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한다. 에티오피아는 베른 협약의 회원국이 아니며 WTO의 회원국도 아니다.

### 나. 보호 대상

이하의 저작물이 원작이고 유형물로 된 경우(material form)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 책자, 팜플렛, 기사 및 기타 글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
- 연설, 강연, 설교 등 도덕적인 작품
- 음악 작품
- 무대 제작을 위해 창작된 작품, 드라마, 판토마임, 안무 작품, 기타 작품
- 음향 녹음 및 시청각 작품
- 건축 작품
- 도면, 그림, 조각, 판화, 석판 등의 미술 작품
- 영화 및 영화 작품
-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자료, 지도, 계획, 스케치 및 3차원 작품
- 컴퓨터 프로그램
- 번역, 적응 및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 수행
- 기계 또는 다른 형태로 읽을 수 있는 작업, 단순한 데이터 모음

저작권의 자격이 있는 저작물은 자동으로 보호되며, 별도의 등록 요건은 없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저작물은 독창적이어야 함
- 작업 내용을 기록, 고정 또는 기타 자료 형태로 축소해야 함
- 저자가 에티오피아 국민이거나 에티오피아에 정기적으로 거주해야 함
-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출판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처음 출판된 후 30일 이내에 에티오피아에서 출판된 저작물은 보호 가능함

- 제작자가 에티오피아에 본사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시청각 작품 보호
- 에티오피아에 세워진 건축물과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건물에 통합된 기타 예술 작품들은 보호 가능함

저작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이하와 같다.

- 기록, 절차 및 시스템, 작동 방법, 개념, 공식, 숫자 표, 발견, 단순 데이터
- 법적, 행정적 또는 법적 성격의 공식 문서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이 제공하는 보호는 도덕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수반한다.

저작권에 따른 경제적 권리는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실시권이나 라이선스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베끼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저작물의 재생산
- 저작물의 개선, 적응, 배치 또는 전환
- 매각 또는 대여로 공공에 대한 업무 처리
- 저작물 원본의 수입화
- 저작물의 전시
- 저작물의 성능 향상
- 저작물의 홍보 또는 대중과의 소통

작품의 저자는 경제적 권리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 또는 익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명예나 평판에 해가 되는 왜곡, 훼손 또는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권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 예술 및 음악 작품: 작가의 생애 + 50년
- 음향 녹음의 제작자: 50년
- 방송: 20년
- 컴퓨터 프로그램: 50년

#### 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에티오피아의 저작권 선언은 저작물의 복사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한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개인용 저작물 제작
- 교습을 목적으로 하거나 도서관, 박물관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작

세이셸(Seychelles) 06

수단(Sudan) 07

에티오피아(Ethiopia) 08

우간다(Uganda) 09

짐바브웨(Zimbabwe) 10



### 3.1. 사법구제

에티오피아의 연방 고등법원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특히 문제에 관한 연방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대법원 파기부(Cassation Division of the Federal Court)는 연방대법원 정규부(regular division)의 최종 결정에 대한 파기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 고등법원과 연방 대법원은 사건의 사실과 법률 문제를 모두 검토한다. 반면, 연방대법원의 파기부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의 근본적인 적용 오류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허법의 절차 규칙에 의하면 연방 고등법원은 지식재산권 절차를 청문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5명의 경험 있는 법률 및 기술 판사(legal and technical judges)들이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에 근무하고 있다. 일반 법원에는 전문화된 지식재산 전담 판사가 없다.

특허권자는 에티오피아의 민법에 따라 가처분, 손상 및 파괴로부터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자신에게 가해진 도덕적, 물질적 편견(moral and material prejudice)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근거한 비용 규모에 따라 고정된다. 청구 금액의 재무적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수수료는 ETB100의 고정 수수료를 갖는다.

법원은 공정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을 호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허관련 사건에서 특허청에서 지정한 숙련된 기술 및 법률 전문가는 발명의 특허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한다. 특허침해 전문가 증인(a patent infringement expert witness)의 역할은 전문증인으로서 특허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변론시 기술적 특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증거 및 정보 획득 메커니즘에 따라 지식재산 법원에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가 정식 절차(formal proceeding)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정보와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정식 절차가 시작된 후, 에티오피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출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은 당사자, 이해관계자, 증인 또는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하거나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소송에 대한 변론 기준을 규정하는 특별한 절차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민사소송법은, 변론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의존하는 중요한 사실의 간결한 형식의 진술만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 하에 추가적인 변론이나 증거자료로 보충할 수 있다.

소송에서 분쟁 중인 재산이 소송 당사자에 의해 손상 또는 이전될 위험이 있거나, 법령의 시행으로 부당하게 매각되거나, 피고가 채권자를 사기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재산을 제거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티오피아 연방 고등법원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관할하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특히 위조품이 상거래 경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권리침해 혐의와 관련한 관련 증거의 수집

사건을 심리한 뒤 법원은 지속적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다.

타인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침해행위의 성격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는 가처분, 침해제품 몰수, 침해에 사용된 포장 및 기구 압수, 훼손 등이 있다. 형사 제재에는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에티오피아에서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 3.3. 형사구제

형사 제재는 특허권자가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법적 구제책이다. 에티오피아 형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법하게 등록·보호된 기존 법률이나 협약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엄격한 징역에 처한다.

상표권 소유자 권리 침해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금고 형태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물품의 압류, 몰수, 파기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 4.1. 특허 및 디자인

- 제123/1995호 발명, 소발명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1995년)
- 제12조/제1997호 발명, 소발명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규정(1997년)

#### 4.2. 상표

- 상표등록 및 보호에 대한 등록 번호 501/2006(일부만 시행됨,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음)
- 상표 예치 및 국가 상표등록청 설치 지침(1986년)(Directive for the Deposit of Trade Mark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Trade Mark Register)

#### 4.3. 저작권

- 제410호 저작권 및 인접 권리 보호(2004년)
- 제481/2006호 식물 사육자 권리(2006년)
- 제482/2006호 유전자 자원과 지역사회 지식 및 공동체 권리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IX. 우간다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7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7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91
- 04. 지식재산 관련 법률 \_ 192
- 05. 관납료 \_ 193



### 1.1. 개요

우간다에서 특허권 등록은 ARIPO를 통한 출원, 개별국 출원, PCT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관은 발명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정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간다 심사관을 대신하여 ARIPO 특허청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특허권은 초기 존속기간이 15년이지만, 갱신 수수료의 지불과 그 발명이 우간다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실용신안은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7년간 보호된다.

영국의 디자인권은 자동으로 우간다로 보호가 확장되며, 보호기간은 영국에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다. 우간다를 지정하는 ARIPO 출원을 통해서도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긴 하나, 우간다는 아직 하라레 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디자인권이 우간다에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상표권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며,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ARIPO를 통한 출원 및 보호가 가능하다. 주지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표가 우간다에서 등록되기 전에 이미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경우, 상표 등록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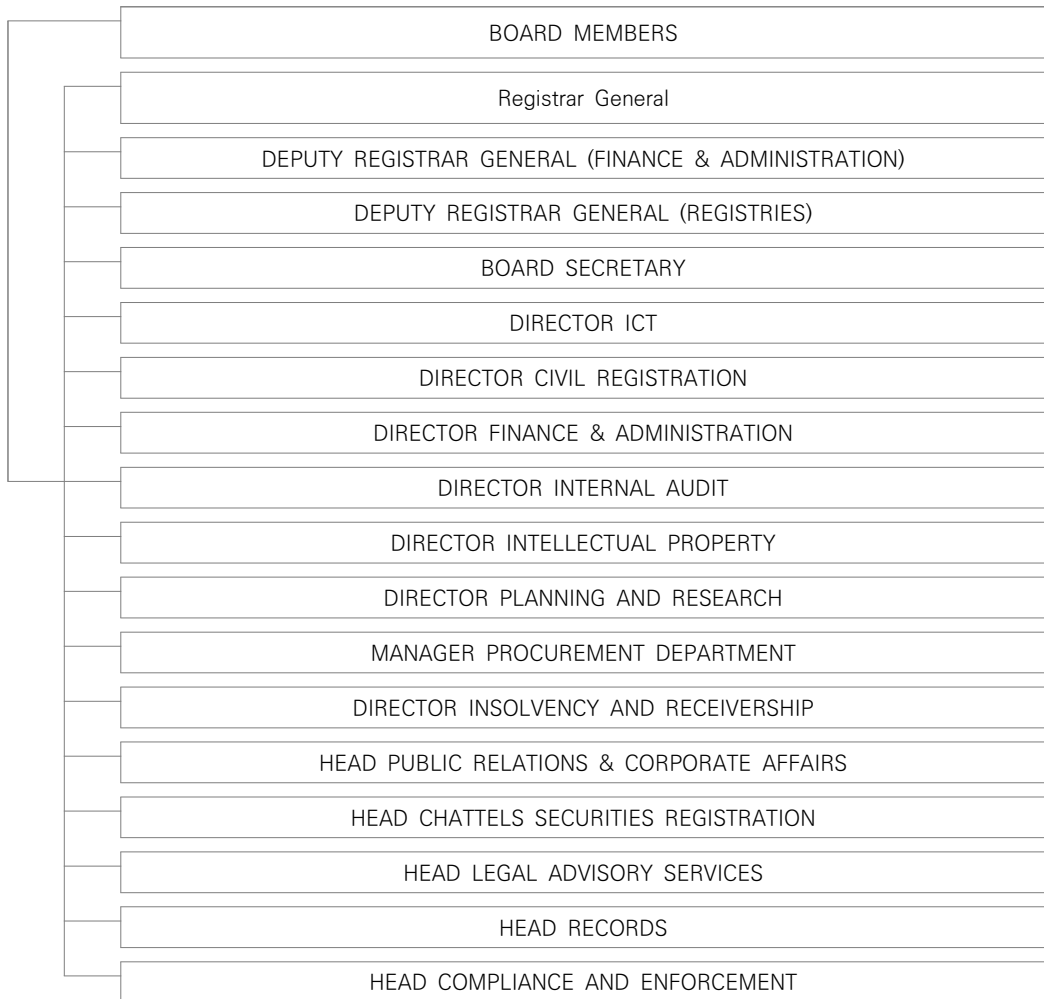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을 통한 침해물품 단속도 가능하다.

우간다는 다음과 같은 국제/지역 협정의 회원국이다.

- Banjul 프로토콜 (ARIPO) (2000년)
- Harare 프로토콜 (ARIPO) (1984년)
- 루사카 협약 (ARIPO) (1978년)
- 나이로비 조약 (1983년)
- 파리조약 (1965년)
- PCT 조약 (1995년)
- WIPO 협약 (1973년)
- WTO TRIPS 협정 (1995년)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그림] 우간다 URSB 조직도<sup>54)</sup>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및 우간다 등록서비스 관할국<sup>55)</sup> (Uganda Registration Services Bureau (URSB))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URSB는 우간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54) <https://ursb.go.ug/management/>

55) KOTRA. 우간다 국가정보 2018 p.30.

우간다 URSB의 주요 연락처 및 정보는 아래와 같다.

사이트	http://www.ursb.go.ug
주소	Amamu House plot 5, PO Box 6848, Kampala, Uganda
전화번호	+256 414 233 219
이메일	ursb@ursb.go.ug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56)</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5	3	1,076	1,590	-	-
2015	9	-	1,046	1,769	-	-
2016	16	-	1,291	1,753	-	-
2017	-	-	1,359	115	-	-
2018	6	-	-	-	29	-

56)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UG](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UG)



## 2.1. 특허

### 가. 개요

우간다를 지정국으로 하는 ARIPO 출원 또는 우간다 개별국 출원을 통해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 우간다에서는 하라레 의정서(ARIPO에서 특허 출원을 규정하는 조약)를 자국법에 시행하여 ARIPO 출원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려는 출원인에게 유효한 특허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우간다는 또한 2002년 특허법(개정)을 통해 국내법에 따라 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인정하고 우간다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조항과 우간다의 국내 단계 PCT 출원을 다루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 나. 보호대상

다음은 사항은 발명이라도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 발견과 과학·수학적 이론
-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또는 생성을 위한 생물학적 프로세스 및 이러한 프로세스의 생산물
-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순수한 정신적 행위, 게임을 하기 위한 제도, 규칙 또는 방법
- 수술이나 치료, 진단 방법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 방법(이 제한은 이러한 방법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단순한 정보의 제시

### 다. 등록요건

우간다 특허법은 특허요건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즉,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가져야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발명의 신규성은 절대적 신규성이 요구된다. 만약, 발명품이 선행기술에 의해 예측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면과 삽화를 포함한 서면 공개나 구두 공개, 사용, 전시 또는 비특허문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기간

### 1) 특허 출원 유형

특허 출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비조약 출원: 유효일이 출원 접수일인 경우
- 파리조약 협약에 따라 최초 출원일(우선일)이 출원일이 되는 출원
- 우간다 지정 PCT에 따른 국제 적용에 기초한 국내 단계 적용
- 우간다 지정 ARIPO 출원
- 둘 이상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분할출원
- 특허출원(거절 또는 허여 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용신안 출원

### 2) PCT/ ARIPO 출원

PCT 국내 단계 출원은 특허 등록처에(Resittrar of Patents) 제출된다. 하라레 프로토콜(즉, ARIPO 신청서)에 관한 출원서는 우간다 특허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RIPO 사무소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는 하라레의 ARIPO 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외국인 출원인은 현지 주소를 가져야만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ARIPO를 통한 특허출원은 ARIPO 특허청이 우간다에 진입하기 전에 심사한다.

### 3) 출원시 요구사항

- 출원인의 자세한 정보
- 위임장
- 발명자의 해결과제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출원인의 진술
- (영어로 된) 명세서(청구서, 도면 및 요약서 포함)
-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 4) 출원인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양도 문서가 필요하다.

06

세이셸(Seychelles)

07

수단(Sudan)

08

에티오피아(Ethiopia)

09

우간다(Uganda)

10

짐바브웨(Zimbabwe)

### 5) 유예기간

우간다는 출원일 직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발명의 공개는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자(predecessor)가 직함에 따라 수행한 행위 또는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자와 관련하여 저지른 남용에 의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 6) 조약 우선권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한 출원인은 우간다의 출원이 이전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초기 최초 출원을 우선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7) 심사/절차

우간다 출원은 형식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심사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우간다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다른 국가의 해당 출원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추가로 검색보고서(search report), 특허권 부여, 그리고 최종거절결정서에 대한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발명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정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간다 심사관을 대신하여 ARIPO 특허청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 마.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등록의 효과

특허 등록은 특허권자에게 발명의 제조, 사용, 행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발명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특허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보관
- 특허받은 공정/프로세스 사용
- 특허받은 공정/프로세스의 생산물에 대한 금지 행위

### 2) 존속기간 및 유지 관리

특허권은 초기 존속기간이 15년이지만, 갱신 수수료의 지불과 그 발명이 우간다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특허권의 유지보수 수수료는 출원일로부터 1주년부터 산정되지만 특허권 부여시 바로 납부한다. 이후 유지 보수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기일이 도래하는 식으로 납부된다. 기한 내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초과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갹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는 소멸된다.

### 3) 회복

갹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의 연차료 납부 유예기간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이해 당사자는 관리수수료 미납으로 인하여 소멸된 출원서 또는 특허의 복원을 심사관에 요청할 수 있다.

### 4) 양도 및 라이선스

양도와 특허/라이선스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출원인에 의한 (간단히 서명된) 위임장
- 양도 증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원본 또는 공인 사본)

### 5) 강제 실시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또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에 강제적인 라이선스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발명이 실행될 수 있지만, 우간다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우간다에서 특허 받은 발명품의 기존 실시 수준이 국내 시장에서 특허제품에 대한 수요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우간다에서 특허 받은 발명품의 수입에 의해 특허 받은 발명품의 실시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간다의 산업 활동 또는 상업 활동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우간다 특허법은 또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장관(the Minister)이 특허받은 발명을 정부 대리인에 의해 이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공보 게재

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의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특허를 허가한다. 허가된 특허는 공개공보(Gazette)에 게재된다.

## 7) 보정

보정은 특허권 허가 전이나 허가 후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보정도 출원서의 발명의 공개를 확장하면 안 된다.

## 바.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우간다 특허법은 제3자에 의한 특허권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

### 2) 특허 무효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법원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된 발명이 법률의 의미에 부합하는 발명이 아닌 경우
- 청구된 발명이 특허성에서 제외됨
- 특허권 부여 신청에 수반되는 설명 및 청구항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
- 특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그 권리가 없고,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았음

## 2.2. 실용신안

특허법은 새롭고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발명에 관하여 실용신안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용신안의 대상은 진보성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실용신안등록증은 갱신 가능성 없이 출원일로부터 7년 만에 만료된다.

실용신안 등록증의 허여 또는 거절 전, 언제든지 특허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허 출원도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 2.3. 디자인

### 가. 개요

우간다의 디자인 관련 법은 영국의 디자인 법(United Kingdom Designs Protection Act)에 기초하고 있다. 우간다는 산업 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나. 보호방법

영국의 디자인권은 자동으로 우간다로 확장된다. 또한 우간다를 지정하는 ARIPO 출원을 통해서도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간다는 산업 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ARIPO를 통한 디자인 등록은 가능하지만 ARIPO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이 우간다에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우간다에서 디자인권은 우간다까지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영국 디자인권 등록을 통하거나, 우간다를 지정한 디자인 등록 ARIPO 출원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외 취득 경로는 다음과 같다.

ARIPO	OAPI	파리조약
○	X	○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및 유지 관리

영국 디자인권은 영국에서 그 권리가 지속되는 한 우간다에서 유효하다. ARIPO를 통한 디자인 등록 기간은 10년이다.

### 2) 디자인 등록의 효과

영국 디자인의 등록권자는 우간다에서 특권과 권리를 가진다.

## 마. 심판(소송)제도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영국에서의 디자인 등록이 취소(Revocation)될 수 있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우간다에서 디자인의 독점권이 취득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2.4. 상표

### 가. 개요

우간다는 파리협력 조약국이며, ARIPO(Banjul 프로토콜) 및 WTO/TRIPS 협정 가입국이다. 우간다 상표 취득 가능 경로 및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ARIPO	OAPI	마드리드	서비스 분류	주지상표
O	X	X	Nice 분류 (9판)	인정

### 나. 보호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 법(Old Act)에 의한 규칙이 아직 시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분류나 등록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표법은 또한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뿐만 아니라 상표의 방어적 등록과 일련의 상표(series of trademark)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등록요건

### 1) 상표의 종류

다음의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다.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 인증마크
- 방어상표
- 일련의 상표(series of trademarks)

절대등록사유(absolute grounds for registration)와 관련하여, 등록원부의 Part A에 등록하도록 상표를 제안하는 경우, 상표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표가 거절될 수 있다. 등록원부의 Part B에 등록하도록 제안된 상표는 상표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다.

상표는 이전에 등록한 상표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적인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설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
-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설명
- 동일한 설명의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그 밖에도 상표 등록이 (상대방의 이용자 권리로 인하여) 혼동이나 기만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법이나 도덕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적 측면에서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상대적 근거가 있다.

### 2) 색상 제한 여부

부호나 마크는 색상을 포함하도록 정의된다.

### 3) 분류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히 분류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지만, 국제 상품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Nice Classification) 9판이 적용되고 있다. 상품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일 출원은 한 분류만 지원할 수 있다.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조약 우선권

우간다는 파리조약 협약국이며 우간다 등록처(Registry)는 우선권 출원을 승인한다.

### 2) 출원

출원서는 법무헌법부(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주관으로 운영되는 우간다 등록서비스국(URSB: Uganda Registration Services Bureau)에 제출한다.

출원서에는 다음의 정보 및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출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출원서와 함께 제출할 (간단히 서명한) 위임장
- 등록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
- 표준 단어 표시(standard word mark)가 아닌 경우 상표 표시의 인쇄본

### 3) 등록 절차

출원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총 시간은 대략 24개월이다. 상표 출원서는 형식 및 실체적 요건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후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한다. 공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4) 심사

출원서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된다.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떠나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서는 공보(Gazette)에 게재된다. 이의신청이 60일 이내에 없을 경우 등록증서가 발급된다.

## 마.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 등록의 효력

상표법은 양도행위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관한 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가지며 이 독점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등록부의 특징

등록부 Part A에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 상표권자에게 주어진다. 상표권자는 이 독점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등록부 Part B에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자가 특정 상황에서 가처분(간섭)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에게 유사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 3)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7년의 최초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후 10년의 연속 기간 동안 갱신되며 10년간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은 해당 연도 차수 만료 전 3개월 이내 또는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상표가 취소된다. 다만,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 및 갱신·복구 수수료 납부시 이를 복원할 수 있다.

## 4) 양도

등록 상표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체의 영업권 또는 영업권 없이,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양도 가능하며, 양도의 기록(recording of assignment)도 가능하다.

양도 기록에 필요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명한 위임장
- 등록번호 또는 등록증명서 사본

## 5) 라이선스 부여/등록된 사용자

라이선스나 등록 사용자의 기록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간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라이선스를 기록하도록 권장한다.

## 6) 오류 정정

심사관이나 법원은 출원 접수 전이나 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원서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표법이나 규칙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등록 상표의 수정이나 등록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 7) 주지상표 보호

주지상표의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상표법은 우간다에 등록하기 전에 이미 다른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되었다면, 상표 등록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상표 취소 신청은 등록 후 7년 이내에 해야 한다.

### 바. 심판제도

#### 1) 이의 및 절차

상표법은 심사관이 허여를 공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의에 대한 사본은 출원인에게 보내야 하며,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이 허여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반대 의견서를 보내지 않으면, 출원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 심사관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은 후, 등록이 허여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누구나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2) 이의 근거

출원서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 이유로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상표의 등록요건과 일치한다.

#### 3) 불사용 상표 취소/무효

등록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법원 또는 상표등록처(Registrar of Trade Marks)에 신청하여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 상표는 등록 상표권자 측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와 관련하여 상표의 실질적인 사용이 없는 경우
- 등록된 상표의 소유주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용이 없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등록된 상표는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 관계인의 조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등록된 사용자로 기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허가한 이용에 의존할 수 없다.

## 4) 기타 이유의 상표 취소/무효

위에서 정한 미사용 상표의 취소/무효 외에 다른 이유로도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다:

- 등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서 등록한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및 이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증명할 경우, 농업인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에 상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해당 방어 등록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어상표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부에 기재가 누락, 오류, 결함 또는 잘못 남아 있는 기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 또는 등록기관에 소정의 방법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또는 등록기관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사항의 작성, 삭제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표의 등록 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등록에 대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오류로 인해 등록되지 말아야 할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부에서 등록 상표의 말소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 5) 상품 표시(Marking of goods)

상품 표시는 선택 사항이다.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 1) 보호 대상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문학, 과학, 예술에 관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다.

- 기사, 책, 팜플렛, 잡지, 강의, 연설, 설교 및 유사한 성격의 다른 작품들
- 극적이고 작품과 음악 작품
- 영화 작품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작품들을 포함한 시청각 작품과 음향 기록
- 안무 작품, 판토마임
-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데이터 뱅크(electronic data banks) 및 기타 수반되는 자료

- 그림, 그림, 사진, 타이포그래피, 모자이크, 건축, 조각, 판화, 석판, 태피스트리 등의 작품들
- 수공예든 산업 규모든 응용 미술 작품
- 지리, 지형, 건축, 과학과 관련된 삽화, 지도, 계획, 스케치 및 3차원 작품
- 원작을 구성하는 파생 작품.
- 민속과 전통 지식 과학 예술 작품
- 번역, 개조, 편곡 및 기타 기존 작품의 변형과 같은 파생 작품과 백과사전이나 문집과 같은 기존 작품의 모음.

2) 저작권 제외: 보호에서 제외되는 항목

- 아이디어, 개념, 절차, 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것

### 3.1. 사법구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그 특허를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하기 직전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위해 침해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손해배상
- 특허침해나 지속적 침해방지를 위한 가처분신청
- 기타 민사구제

디자인의 등록권자는 침해가 일어난 시기에 디자인권을 인식하지 않았고 디자인권의 존재를 자각하는 합리적 수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피고에 대해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디자인 등록이 존재함을 스스로 알 수 없고 합리적인 수단이 없음을 증명하는 피고로부터 디자인의 침해에 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 침해적 사용이 상표 소유권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침해적 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 범위를 고려하여 기만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피고가 이미 등록된 상표의 합법적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다음과 같다.

-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는 금지 명령
- 손해배상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 부당이익(account of profits) 환수

### 3.2. 행정구제

우간다 상표는 세관 기록(customs records)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가능하다.

세이셸(Seychelles) 06

수단(Sudan) 07

에티오피아(Ethiopia) 08

우간다(Uganda) 09

짐바브웨(Zimbabwe) 10

#### 4.1. 특허

- 특허법, 216장 (1993년)
- 특허법 (개정) (2002년)
- 특허규정 (1993년)

#### 4.2. 디자인

- 영국 디자인(보호)법, 218장 (1937년)

#### 4.3. 상표

- 상표법 제 17호 (2010년)
- 상표 규칙(1953년 폐지된 무역상표법 217장에 따라 제정되어 명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함)
- 상표법, 217조 (1953년) (2010년 법률로 개정)

#### 4.4. 저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006년)
- 저작권법 제215장 (1964년) (2006년 법으로 개정)

# 05

## 관납료

지식재산권 종류	상세 정보		가격 (Ugx & Us\$)		
	기간		UGX (Shs)	Dollars (\$)	
특허	특허 출원 기본료		100,000/=	\$100	
	실질 심사료		100,000/=	\$150	
	특허권 허여		90,000/=	\$100	
	우간다 공개공보에 특허 공개		우간다 인쇄 및 출판 회사(UPPR: Uganda Printing and Publishing Corporation)에 비용 납부 가능		
	특허 출원 유지료/연차료 annual for application or patent under regulation 35 (1) of S.I No.12of 2017		2 년차	50,000/=	\$50
			3 년차	70,000/=	\$70
			4 년차	90,000/=	\$90
			5 년차	110,000/=	\$110
			6 년차	130,000/=	\$130
			7 년차	150,000/=	\$150
			8 년차	190,000/=	\$190
			9 년차	210,000/=	\$210
			10 년차	230,000/=	\$230
			11 년차	250,000/=	\$250
			12 년차	270,000/=	\$270
	13 년차	290,000/=	\$290		
	14 년차	310,000/=	\$310		
15 년차	330,000/=	\$330			
16 년차	350,000/=	\$350			
17 년차	370,000/=	\$370			
18 년차	390,000/=	\$390			
19 년차	410,000/=	\$410			
기한 연장 신청:					
a)특허권		50,000/=	\$50		
b)실용신안권		15,000/=	\$50		
과태료(regulation 35 (3) of S.I No.122017)		20,000/=	\$20		

06

세이셸(Seychelles)

07

수단(Sudan)

08

에티오피아(Ethiopia)

09

우간다(Uganda)

10

짐바브웨(Zimbabwe)



실용신안	실용신안 출원 및 형식심사 비용	30,000/=	\$50	
	실질 심사료			
	실용신안증명서	50,000/=	\$50	
	등록된 실용신안 연차료	등록 이후 1년차	30,000/=	\$50
		등록 이후 2년차	30,000/=	\$50
		등록 이후 3년차	60,000/=	\$100
		등록 이후 4년차	60,000/=	\$100
		등록 이후 5년차	60,000/=	\$100
		등록 이후 6년차	60,000/=	\$100
		등록 이후 7년차	60,000/=	\$150
		등록 이후 8년차	100,000/=	\$150
		등록 이후 9년차	100,000/=	\$150
		등록 이후 10년차	100,000/=	\$150
등록 이후 11년차	100,000/=	\$150		
디자인	디자인출원 형식심사 비용	50,000/=		
	디자인 실질 심사			
	디자인 등록증	20,000/=	\$20	
	등록된 디자인 갱신 비용	100,000/=	\$250	
	허여된 디자인권의 보호 회복 신청	100,000/=	\$150	
	과태료(section 76 (1) of the Act)	50,000/=	\$100	

IX. 우간다(Uganda)

상표	출원서 접수	50,000/=	\$150
	예비 심사 청구	25,000/=	\$40
	조사료	25,000/=	\$65
	인증서	25,000/=	\$40
	공개 (Application is advertised in the gazette.)	Fess paid directly to UPPC	
	공개일 이후 5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특허 등록증이 등록 이후에 발행된다.	100,000/=	\$250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공개된다.	100,000/=	\$250
	상표출원인이 반박진술을 제출하는 비용	50,000/=	\$150
	상표권 획득 6개월 경과 후, 양도 등록	100,000/=	\$250
	상표권 획득 12개월 경과 후, 양도 등록	120,000/=	\$300
	상표권 획득 6개월 이내, 양도 등록	35,000/=	\$75
	이름 변경	25,000/=	\$40
	상표 등록 갱신	100,000/=	\$250
저작권	등록 신청	50,000/=	
	우간다 공보에 공개되는 비용		
	공개일 이후 60일 이내에, 저작권 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 드는 비용	비용 없음	
	등록된 저작권의 양도 및 이전 비용	50,000/=	

06

세이셸(Seychelles)

07

수단(Sudan)

08

에티오피아(Ethiopia)

09

우간다(Uganda)

10

짐바브웨(Zimbabwe)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X. 짐바브웨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9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05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19



## 1.1. 개요

특허 보호는 짐바브웨 지식재산청에 직접 국내 출원하거나, ARIPO를 통하여 출원하거나, 또는 짐바브웨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짐바브웨는 ARIPO를 통한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규정하는 하라레 의정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ARIPO 출원을 통해서 유효한 특허 또는 디자인을 취득할 수 있다. 짐바브웨가 지정된 ARIPO의 반출 의정서 하에 출원된 출원에 대해서도 특별규정이 있어서 출원이 ARIPO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법에 따라 짐바브웨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디자인 등록 후, 어느 때든 누구나 등록된 제품에 대해 산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짐바브웨에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짐바브웨의 디자인 출원은 방식 심사만 시행되며, 유명 상표는 소유자가 사용할 의사 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방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문학, 음악, 및 미술 작품(사진 제외)의 경우, 저작권은 저자의 일생동안 및 사후 50년이다. 사진 및 다른 작품의 경우, 대중에 이용 가능한 때 또는 발행된 때부터 5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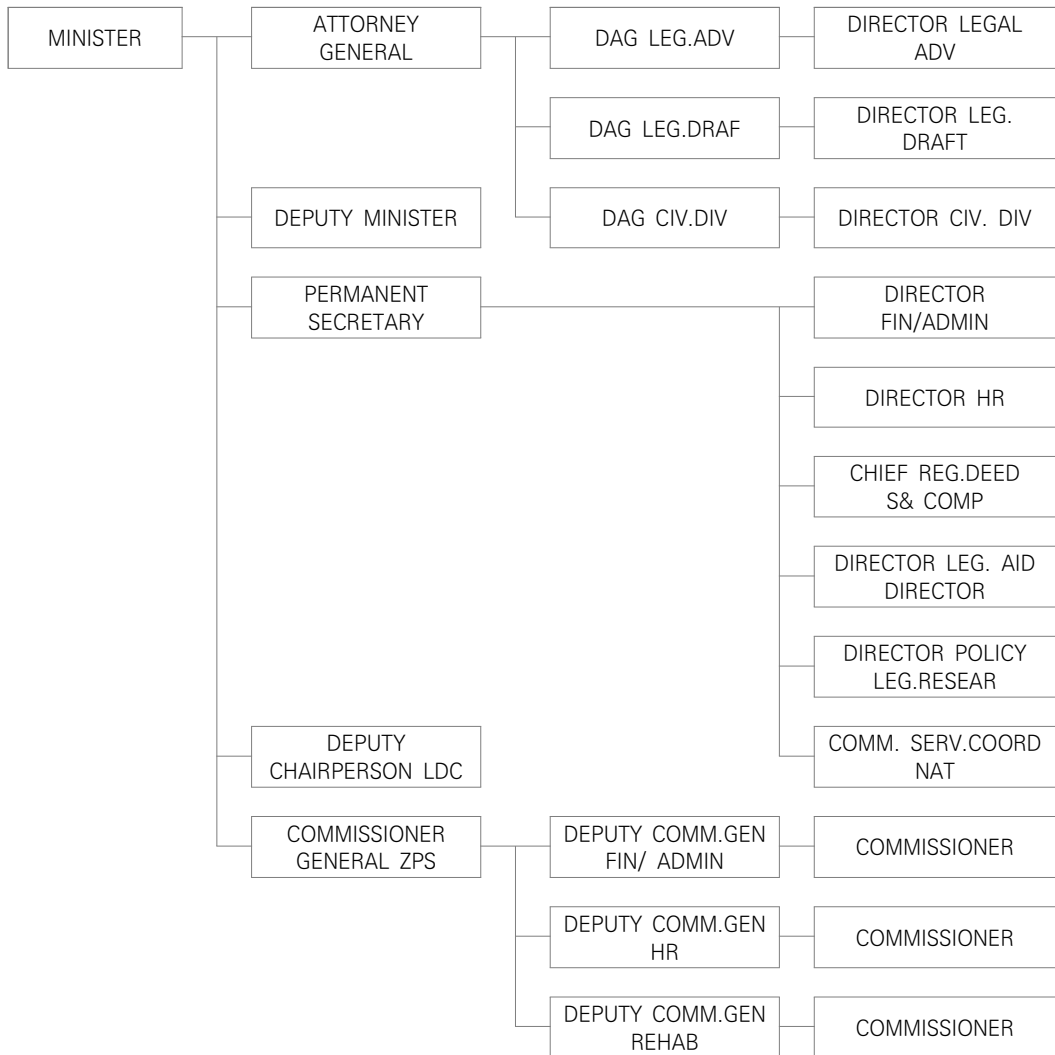
짐바브웨는 다음의 국제/지역 조약의 가입국이다.

- 1997 반출 의정서(ARIPO)
- 1980 베른 조약
- 1984 하라레 의정서(ARIPO)
- 1980 루사카 협약(ARIPO)
- 1980 파리 조약
- 1997 특허협력 조약(PCT)
- 1981 WIPO 조약
- 1995 WTO/TRIPS 협정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관련 법률

### 가. 지식재산 관련 기관

[그림] 짐바브웨 지식재산청 조직도



짐바브웨는 현 정부에서 이전의 28개 행정부처를 20개 부처로 축소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Legal and Parliamentary Affairs) 산하 증서 등록부(Chief Registrar of Deeds)의 업무이다. 이들 하부조직으로 지식재산관련 기관은 지식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있다.

## X. 짐바브웨(Zimbabwe)

이들 기관은 다른 정부 기관, 사무소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한다. 또한 지식재산 회의, 세미나, 워크숍, 위원회 및 국제 포럼에서 짐바브웨 정부를 대표한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청(Copyright Offices)<sup>57)</sup>

기관명	Competent administration Zimbabw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ZIPO) Ministry of Justice, Legal and Parliamentary Affairs
주소	Century House East, 38 Nelson Mandela Avenue, P.O Box CY 177, Causeway, Harare, Zimbabwe
전화	(263 4)775 544 / 6
팩스	(263 4) 777 372
이메일	fmaredza@justice.gov.zw
담당자	Mr. Fidelis Maredza (Head Controller of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 2) 지식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s)

기관명	Competent administration Zimbabw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ZIPO) Ministry of Justice, Legal and Parliamentary Affairs
홈페이지	www.dcip.gov.zw
주소	Century House East, 38 Nelson Mandela Avenue, P.O Box CY 177, Causeway, Harare, Zimbabwe
전화	(263 4) 775 544/6 (263 4) 781 835
팩스	(263 4) 777 372
이메일	fmaredza@justice.gov.zw vmabiza@justice.gov.zw
담당자	Mr. Fidelis Maredza(Head Controller of Patents, Trademarks and Industrial Designs) Mrs. V. Mabiza(Secretary for Justice, Legal and Parliamentary Affairs)

57) [https://www.wipo.int/directory/en/details.jsp?country\\_code=ZW](https://www.wipo.int/directory/en/details.jsp?country_code=ZW)

### 3) ARIPO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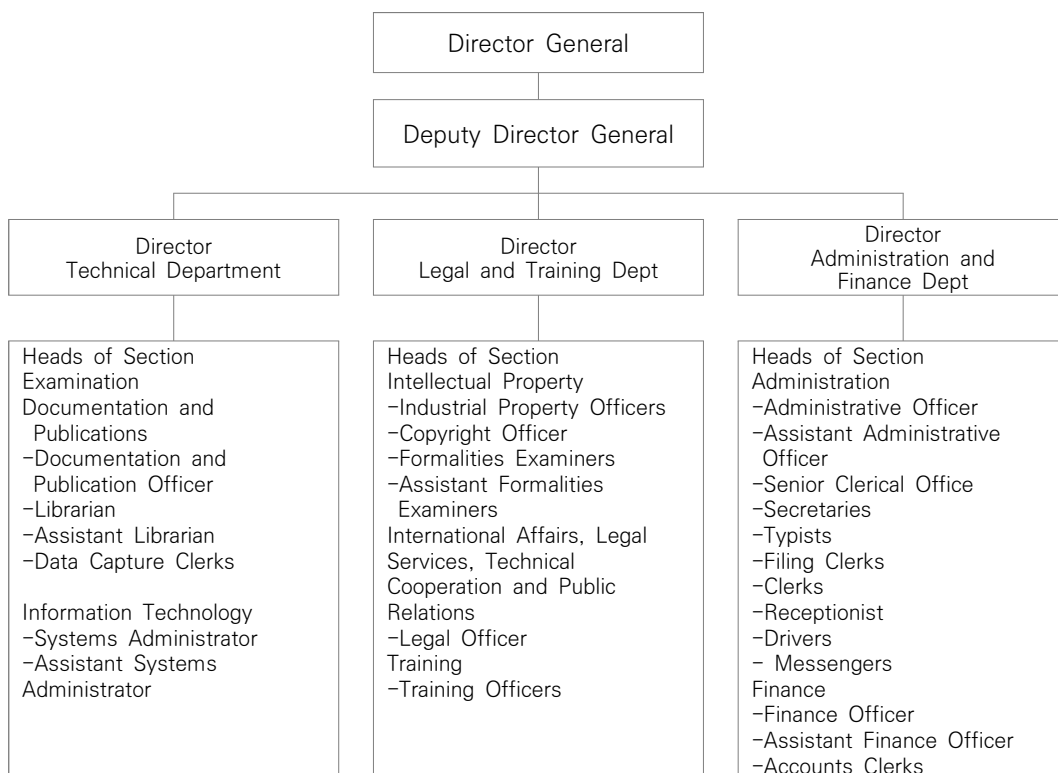
#### 가) 일반현황

- 성격: 아프리카 정부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기구
- 연혁: 1976.12.9 Lusaka 협약에 의해 창설(1978 발효)  
.1981. ARIPO 사무국 설립
- 위치: 짐바브웨 Harare

#### 나) 주요임무

- 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
- 특허 허여 및 상표·산업디자인 등록
- 허여된 특허 및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행정
- 중소기업, 정부, 연구기관, 발명자에 대한 정보제공
- 회원국 자문, 회원국 특허청 교육, 인식제고 활동

#### 다) ARIPO 사무국 조직도





## 라) 회원국

- 가입국(Member State, 18개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리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르완다

## 마) Harare 프로토콜(특허산업 디자인분야, '84.4.25 발효)

- ARIPO에 특허 허여, 산업디자인·실용신안 등록 권한 부여
- 단일 출원 및 ARIPO의 실체심사
  - (가입국)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ARIPO 회원국 가입

## 바) ARIPO 사무국 인원

- 현재 45명(특허 심사관:5+3(예정)명, 상표 심사관 4명)

## 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

짐바브웨는 상표법으로 1974년 상표법 No. 2(Chapter 26:04) 및 1974년 상품 표장법 No. 9(Chapter 14:13)을 개정된 2001년 개정법 No. 22이 있고, 최근에 개정된 2005년 상표 규정이 있다. 특허법으로는 1971년 특허법 No. 26(Chapter 26:03)이 개정된 2002년 특허법 No. 9이 있다.

또한, 디자인법으로는 1971년 산업 디자인법 No. 17(Chapter 26:02)을 개정된 2001년 개정 디자인법 No. 25이 있고, 저작권법으로는 2000년 저작권 및 인접 권리법 No. 11(Chapter 26:05)을 개정된 2004년 저작권법 No. 32 및 최근 개정된 및 2006년 저작권 및 인접권리 규정이 있다.

관련 분야의 법률로는 2001년 개정 식물 육종가의 권리법 No. 11 및 1973년 식물 육종가의 권리법 No. 53(Chapter 18:16)을 개정된 2001년 개정법 No. 22가 있다.

현재 지식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he Patents Acts Chapter 26:03

The Trade marks Acts Chapter 26:04

The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Act Chapter 26:05

The Industrial Designs Act Chapter 26:02

The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s Act, Chapter 26:07

The Armorial Bearings, Names, Uniforms and Badges Act Chapter 10:01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Chapter 26:06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58)</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	-	310	1,682	-	-
2015	9	19	285	2,399	-	-
2016	8	5	155	3,086	-	-
2017	-	-	-	-	-	-
2018	-	-	-	-	-	-

<sup>58)</sup>[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ZW](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ZW)

## 2.1. 특허

### 가. 보호 대상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사람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수술 방법
- 미생물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
- 미생물학적 과정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의 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

### 나. 등록요건

#### 1) 등록 가능한 발명

발명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2) 신규성 상실 예외

공표된 대상이 특허권자에 의한 것이고, 짐바브웨에서 발명이 합리적인 기술적 시험 목적 이외에 특허권자 또는 그의 전임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출원이 공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출원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또는 조약 우선일 전에 공개되어도 상실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 1) 출원 시 제출 서류

특허 출원인은 다음의 프로세스 중 하나로 출원할 수 있다.

- 비-조약 출원
- 파리 조약 하에 최초 출원된 우선일이 유효일이 되는 조약 출원
- 짐바브웨가 지정된 PCT 하에 국제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단계 출원
- 짐바브웨를 지정한 ARIPO 출원
- 완성된 명세서 제출로 완성되는 임시 출원
- 원 특허 발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정에 관한 부가 특허 출원

세이셸(Seychelles) 06

수단(Sudan) 07

에티오피아(Ethiopia) 08

우간다(Uganda) 09

짐바브웨(Zimbabwe) 10

하라레 의정서 하의 출원은 짐바브웨 특허청(이 경우 진행을 위해 ARIPO청으로 이전됨)이나 하라레에 있는 ARIPO청에 출원할 수 있다.

임시 명세서가 제출된 임시 출원은 완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 12개월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3개월간 연장 가능하다. 정식 명세서가 제출된 비-조약 국내 정식 출원은 처리되기 전에 언제든지 임시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원이 처리되기 전 어느 때든 첫 번째 출원의 요지의 일부에 대해 새로운 출원이 제출되면, 후 출원은 첫 번째 출원일자로 앞당겨질 수 있다.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세부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영어 명세서(청구항, 도면, 요약서를 포함)
- 우선권 서류 인증사본(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 양도 서류(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단순히 사인된) 등

## 2) 출원인

출원은 발명자 또는 양도에 의해 발명 출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자가 단독 또는 타인과 함께 출원할 수 있다.

## 3) 심사

법에는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식 심사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출원이 되면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통보되며 특허 공보에 공고된다.

## 4) 이의 신청

정부를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이 당해 출원에 대해 출원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출원이 이의 신청인의 권리를 기만하는 경우
- 청구된 발명이 발명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발명이 자명한 경우
- 발명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

-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기재하고 규명하지 못한 경우
- 특허청구 범위가 보호를 청구하는 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한 경우
- 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 완성된 명세서가 임시 출원 또는 선출원된 조약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요지이며, 이러한 요지가 신규성이 없는 경우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본인이 실시하거나 다른 실시자를 통해 이하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갖는다.

- 짐바브웨에서 특허된 기계, 제품 또는 물질 조성을 제조, 사용하고 판매를 제안하는 것
- 기계, 제품 또는 물질 조성을 수입하는 것
- 짐바브웨에서 특허된 기법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 짐바브웨에서 특허된 기법 또는 방법으로 얻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를 제안하고 판매하는 것
- 특허된 기법 또는 방법으로 얻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것

### 2)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다음의 경우에 제한된다.

- 개발 및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을 위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제출에 관계된 합리적인 목적으로만 특허된 발명을 제조, 사용하고 판매하는 경우
- 수입의 비용이 특허권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적다면, 특허권자 또는 그의 실시자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시장에 내놓은 특허된 제품을 다른 사람이 수입(병행 수입)하는 경우

### 3) 특허권 효력 기간

특허 기간은 출원일 또는 국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연차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산료를 지불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된다.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소멸된 특허는 소멸된지 3년 내에 특허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4) 양도 및 라이선스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청에 기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단순히 사인된 양도 서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라이선스 계약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5) 강제실시권

이해 당사자는 라이선스에 대한 초기 요청으로부터 6개월 내에 합리적인 기간으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을 수 없다면, 특허된 발명이 합리적인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들은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로 간주된다.

- 짐바브웨에서 실시가 가능함에도 특허된 발명이 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고 이러한 불 실시에 만족스런 이유가 없을 경우
- 짐바브웨에서 상업적 규모의 실시가 특허된 제품의 수입에 의해 방해되는 경우
- 짐바브웨에서 요구가 적정한 정도 및 합리적인 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특허된 발명의 구매, 라이선스 또는 사용에 대해 특허권자에 의해 부과된 불공정한 조건에 의해 짐바브웨의 산업이 악영향을 받는 경우

또한 강제실시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여될 수 있다.

-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3년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짐바브웨에서 특허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 특허가 식품이나 약품으로, 또는 식품이나 약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의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발명이 수술 또는 치료 장치 또는 환경보호에 관한 것이거나, 발명이 국가의 기술적 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 종속 특허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 특허(종속 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발명의 사용 또는 실시가 비상 상황 또는 전쟁의 특정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

**6) 특허 취소/무효**

이해 당사자는 방식 및 실질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이유로 법원 또는 지식재산 법원에 특허 취소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무효 사유는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하다.

**7) 침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침해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일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금지 명령, 벌금, 손해 배상, 및 구금을 포함한다.

**8) 실시의무**

특허된 발명은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3년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으면 강제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다.

**2.2. 디자인****가. 보호대상**

디자인은 어떤 산업적 과정이나 수단에 의해 물품에 적용된 모양, 구성,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을 의미하며 완성된 물품에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특징이며, 방법이나 구성 원리 또는 기술적 및 기능적 고려 사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양 또는 구성의 특징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등록 요건**

디자인이 등록 가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적이 있어야 한다.

**다. 취득절차****1)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인 세부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양도서류(필요한 경우)
- 디자인 표현
- 우선권서류 인증사본(필요한 경우)

## 2) 출원의 종류

- 출원일이 유효일이 되는 비-조약 국내 출원
- 파리 조약 하에 선출원된 우선일이 유효일이 되는 조약 출원
- 짐바브웨를 지정하는 ARIPO 출원

비-조약 출원 및 조약 출원은 디자인 등록청에 출원된다. 하라레 의정서 하의 출원은 짐바브웨 디자인청에 출원하거나(이 경우 진행을 위해 ARIPO청으로 이관된다), 하라레에 있는 ARIPO청에 출원할 수 있다.

## 3) 우선권

짐바브웨는 파리 조약 가입국이므로, 우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4) 심사 청구

짐바브웨의 디자인청은 방식 심사를 수행한다. 디자인에 대한 실체 심사도 진행된다. 실체 심사는 신규성 및 디자인의 독창성에 대해 진행한다.

## 5) 신규성 의제

디자인의 신규성은 ① 소유자에 의한 디자인의 기밀 공개에 의해, ② 제3자의 악의적인 공개에 의해, ③ 디자인을 포함하는 상품에 대한 첫 번째 기밀 주문의 수락에 의해, ④ 공인된 정부 직원과 디자인에 관한 연락에 의해서는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람회에서 디자인의 전시는 사전에 등록청에 통지하고 출원이 전시 개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된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6) 이의 신청

디자인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누구나 이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짐바브웨에서 디자인권의 권리 기간은 10년이고,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5년간 연장된다.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로부터 삭제된다.



디자인 등록이 삭제된 경우, 소유자는 삭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삭제 기간 동안 디자인이 선의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야 하고, 불사용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 2) 양도 및 라이선스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처에 기록되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사인된 위임장과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원본 또는 인증사본)이다.

## 3) 강제실시권

짐바브웨에서 등록 디자인은 실시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요건이 있다. 실시하지 않으면 강제실시권이 청구된다. 디자인 등록 후, 어느 때든 누구나 등록된 제품에 대해 산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짐바브웨에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짐바브웨에서 등록 디자인은 실시 의무가 있는바, 실시되지 않으면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다.

## 4) 침해

침해 소송은 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침해 구제는 금지 명령, 손해배상 및 침해 복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를 갖는 침해 제품의 인도를 포함한다.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 1) 상표의 정의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한 표지로 정의되며, 어떠한 기업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표 소유자는 상표의 어느 부분이던지 분리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므로, 소유자는 전체 및 별개의 상표로서 상표의 일부의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 2) 상표의 종류

이하는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

- 상품 표지 및 서비스 표지
- 인증마크
- 단체 표장
- 유명 상표의 방어표장
- 시리즈 상표
- 상표의 일부

법은 상표는 등록원부의 파트 A 또는 파트 B에 등록, 인증마크는 등록원부의 파트 C에 등록, 방어 상표는 등록원부의 파트 D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 유명 상표의 방어 상표

유명 상표는 소유자가 사용할 의사 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방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은 또한 소유자가 조약국 국민이거나 조약국에 효과적인 상업적 설비를 갖는 경우인 소위 익숙한 외국상표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유자는 익숙한 외국 상표의 재생산 또는 모방을 구성하고, 이러한 사용이 기만 또는 혼동을 야기하여 외국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해할 경우 짐바브웨에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나) 시리즈 상표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재료 특성은 서로 유사하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세서만 다르고, 숫자, 가격, 질 또는 장소 이름에 대한 명세서만 달라서 구별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색채에 대한 수 개의 상표를 청구하는 자는 하나의 등록에 이러한 상표를 시리즈로 등록할 수 있다.

## 3) 색채에 대한 제한

상표는 전체 또는 일부에 하나 이상 특정 색채로 제한할 수 있다. 상표가 색채에 대한 제한 없이 등록되면, 모든 색채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된다.

## 나. 취득절차

### 1) 우선권 주장

짐바브웨가 파리 조약 가입국이므로 먼저 출원한 외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한다면, 조약국에서 먼저 출원한 외국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다.

짐바브웨가 지정된 ARIPO의 반출 의정서 하에 출원된 출원에 대해서도, 특별 규정에 의하여, ARIPO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짐바브웨 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2) 출원서류

출원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세부사항
- 단순히 사인된 위임장
- 보호될 상품 및 서비스
- 상표 견본
- 우선권서류 인증 사본(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3) 상품의 분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가 적용된다. 각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 4) 심사

상표 출원은 출원 자체의 등록 가능성 및 선등록 및/또는 계류 중인 출원과 의 충돌 여부가 심사 된다.

### 5) 이의 신청

누구나 공고 후 2개월 내에 등록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연장은 기록 사무관에 의해 허락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의신청 사본은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출원을 지지하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반박 의견서의 제출이 없으면 상표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이의 신청인은 반박 의견서의 사본을 제공받은 후 2개월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인의 증거제출이 기간 내 없으면 이의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 상표가 식별 가능하지 않음(등록부 파트 A에서의 등록에 대해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 가능하거나 사용 또는 다른 상황 하에 식별 가능하게 될 수 있음)
- 상표가 식별 가능하게 되지 않을 때(등록부 파트 B에서의 등록에 대해)
- 상표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때
- 상표의 사용이 법에 반하는 경우
- 상표가 추악한 주제를 포함할 때
- 상표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 상표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 또는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
- 상표가 국가 또는 정부 간 조직의 문장, 깃발, 다른 엠블럼 또는 보증마크의 요소를 포함, 동일하거나 모방한 경우

#### 다.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규정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일 기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규정된 기간 내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로부터 상표가 삭제된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가 삭제된 3년 내에 상표가 삭제 기간 내에 사용되었거나 이러한 불사용에 대한 만족스런 이유를 제공하면서 상표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2)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상표 등록권자는 등록 상표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상표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 이외의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기만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를 구성한다. 이러한 상표 침해에 대해 권리자는 타인의 권한 없는 상표 사용을 방지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또한 타인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3) 상표의 취소/삭제

상표 등록은 다양한 상황 하에 취소되거나 등록원부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 상표를 사용하려는 선의의 의도가 없고,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5년의 연속된 기간에서 상표가 선의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갱신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소유자의 잘못이나 태만으로 기만이나 혼동을 야기하게 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
- 상표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조건 위반의 경우

## 4) 사용 의무 및 취소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상표등록은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할 선의의 의도 없이 등록되거나 상표 취소 청구 전 1달 까지 선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즉, 취소 청구일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선의 없이 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5) 양도

영업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표의 양도가 가능하며 제3자에 대해 효과가 있으려면, 양도는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양수인의 위임장
- 양도 서류

## 6) 라이선싱/등록 사용자

라이선싱 및 등록 사용자 계약이 가능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히 사인된 소유자의 위임장
- 단순히 사인된 사용자의 위임장
- 라이선스/등록 사용자 계약
- 법정 선언 및 사건 진술

## 2.4.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문학 작품
- 음악 작품
- 미술 작품
- 시청각 작품
- 사운드 레코딩
- 방송
- 신호전달 프로그램
- 출판된 판(Published editions)

문학 작품은 연극 작품, 무대 연출, 필름 시나리오, 방송 스크립트, 편지, 리포트, 메모, 강연, 연설 및 설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의 표 및 컴파일을 추가로 포함한다.

미술 작품은 그래픽 작품, 사진, 조각, 콜라주, 건축 작품, 예술적 장인의 작품을 추가로 포함한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소유권은 본래 저자에게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에 고유한 경제적인 권리와 인격권이 있다. 경제적인 권리는 이전이나 라이선싱 될 수 있으나 인격권은 저자에게 남아 있다.

인격권은 저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자로서 식별되고 인식될 권리, 작품의 왜곡, 절단, 또는 명예나 평판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경멸적인 행동도 반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인격권은 저자의 일생 동안 양도할 수 없으며 이전할 수 없다.

저작권은 소유자가 다음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 작품을 재생산하는 것
- 작품을 발행하는 것
- 작품을 짐바브웨 내로 수입하거나 짐바브웨에서 수출하는 것
- 작품을 대중에 공연하는 것

- 작품을 방송하거나 작품이 전파되게 하는 것
- 작품의 각색물을 만드는 것

#### 다.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문학, 음악, 및 미술 작품(사진 제외)의 경우, 저작권은 저자의 일생동안 및 사후 50년이다. 사진 및 다른 작품의 경우, 대중에 이용 가능한 때 또는 발행된 때부터 50년이다.

##### 2)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싱

저작권은 양도에 의해 이전될 수 있으며, 라이선싱 될 수 있다. 양도는 서면에 의해야 하고 양도인 또는 라이선스의 사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 3) 저작권 보호의 예외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으로부터 배제된다.

- 연구, 개인적 사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상술한 행위를 하는 것
- 학교에서 교수용으로 또는 교육 목적으로 상이하게 사용하는 것
-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작품을 대체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복제품을 만드는 경우
- 의회 또는 법원에서 작품의 사용
- 비평, 리뷰 또는 뉴스 리포트용으로 작품의 사용
- 작품을 인용하기 위한 사용
- 음악 작품의 개인적 녹음 및 방송

##### 4)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유보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사적용도 이외에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한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부착, 이익의 계정, 침해 물품의 인도를 포함한다. 손해 배상은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특정 침해 행위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 2.5. 식물 육종가의 권리

### 가. 개요

짐바브웨에는 식물 육종가의 법으로는 2001년 식물 육종가의 권리법 No. 11 및 1973년 식물 육종가의 권리법 No 53(Chapter 18: 16)을 개정한 2001년 법 No. 22이 있다.

짐바브웨는 신규 식물변종을 위한 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가입하지 않았다.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짐바브웨 식물 육종가의 권리법 하에 보호된다.

### 나. 보호 대상

최근 규정된 식물 32종의 종류만이 보호된다.

### 다. 등록 요건

식물 육종가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려면, 변종은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구별되며 일정하고 안정해야 한다.

### 라. 출원시 제출 서류

식물 육종가의 권리 출원을 위해서는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출원서식
- 위임장
- 양도 서류
- 규정된 기술적 질문지
- 어디서든 수행된 DUS(Distinct, Uniform, Stable) 검사 결과
- 재생산 가능한 물질의 샘플

### 마. 우선권 주장

UPOV 가입 국가에서 선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바. 보호기간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허여일로부터 20년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 03

##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짐바브웨 정부는 모든 지식재산권 문제, 분쟁, 침해, 유예 및 기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 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식재산 법원을 고등법원 내에 2017 년 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원은 지식재산 분쟁, 특히 상업적 성격의 분쟁의 해결을 가속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고등법원법, 치안법원법 및 소액청구법원 법의 섹션 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재판장은 재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2명 이상의 고등법원 판사를 고등법원 내 지식재산 전문판사로 임명한다. 또한 재판장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을 지식재산 사건의 결정에 관여하는 평가자로 지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법원의 재판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침해 소송은 법원이나 민사 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침해 구제는 금지 명령, 손해배상 및 침해 복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의 침해 제품의 인도를 포함한다.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는 금지 명령, 손해배상 및 부정당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인도를 포함하며, 손해 배상은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제는 파트 B 등록의 경우에 특정 상황에서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

세이셸(Seychelles) 06

수단(Sudan) 07

에티오피아(Ethiopia) 08

우간다(Uganda) 09

짐바브웨(Zimbabwe) 10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XI. 케냐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2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27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41
- 04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_ 245



## 1.1. 개요

케냐의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케냐에는 제3자가 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이해관계인은 특허 부여의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등록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케냐에서 실용신안이라는 용어는 “혁신(innovation)”의 용어로도 불리어 진다. 특허 출원과 달리 실용신안에는 진보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체 심사가 행해지지 않는다.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는 PCT 특허 출원은 국내단계의 출원을 케냐 특허청에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 PCT 출원의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케냐 특허청에 국내단계 진입하여야 한다. ARIPO 의정서에 따라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여 ARIPO가 부여한 특허는 케냐 특허청이 자국 산업재산법에 따라 부여한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등록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5년이다. 등록 디자인은 이후 갱신 출원을 함으로써 두 차례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기 전, 인용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디자인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케냐는 ARIPO 의정서의 회원국이지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케냐가 가맹하고 있는 것은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ARIPO (하라레) 의정서 뿐이다. 따라서,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는 ARIPO 특허 및 디자인 등록은 유효하지만, ARIPO 의정서에 따라 등록된 ARIPO 상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케냐의 상표 대리인이 ARIPO 의정서에 따라 ARIPO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없다.

선행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조사는 케냐 특허청의 특허국 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미화 100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 출원은 실체 심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특허,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실체 심사가 진행된다.

케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의 조약, 국제 협정, 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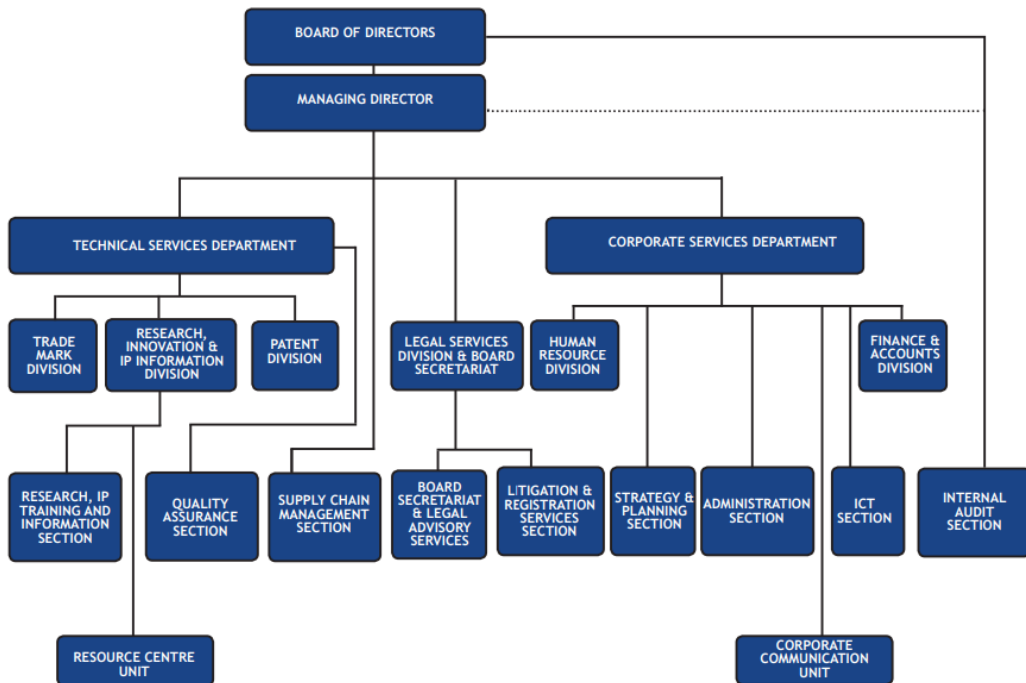
-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1971년 베른 협약
- 세계 저작권 협약
- 허가없는 레코드 복제에서 음반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1971년의 제네바 조약
- 파리 협약(1967년)

- 브뤼셀 조약(위성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전달)
- 식물의 신제품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 특허 협력 조약
- 특허법 조약
-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 1994 년 상표법 조약
- 세계 무역기구 협정(1994년 TRIPS 협정)
- 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ARIPO(하라레) 의정서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 가. 조직도

케냐 특허청의 조직도 아래와 같다.



## 나. 지식재산 관련기관 연락처

케냐 지식재산 관련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1) 상표, 특허 및 디자인권 취득

기관명	케냐 특허청
주소	P.O. Box 51648 - 00200, Nairobi, Kenya
이메일	info@kipi.go.ke

## 2) 종자 및 식물 품종 권의 취득

기관명	케냐 식물 위생 검역소
주소	P.O. Box 49592 - 00100, Nairobi, Kenya
이메일	kephisinfo@kephis.org

## 3) 저작권 등록

기관명	케냐 저작권위원회
주소	P.O. Box 3467 - 00100, Nairobi, Kenya
이메일	info@copyright.go.ke

## 4) 위조품 단속

기관명	위조품 단속기관(ACA)
홈페이지	<a href="http://www.aca.go.ke">http://www.aca.go.ke</a>
주소	Kenyatta Avenue, Teleposta Towers, 4th Floor, P.O. Box 47771 - 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 202280000
이메일	info@aca.go.ke

5) 세관

기관명	Kenya Revenue Authority(KRA) Customs Services Department
주소	Commissioner of Customs Services 12th Floor, Times Tower Building, Haile Selassie Avenue, P.O. Box 48240 - 00100, Nairobi, Kenya
담당자	Julius Musyoki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59)</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32	75	-	-	78	17
2015	137	56	4,684	6,187	73	12
2016	144	59	-	-	89	15
2017	135	43	5,321	6,736	141	7
2018	244	42	-	-	170	7

59)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KE](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KE)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산업재산법 상 "발명"은 신규하고 유용한 기술(물리적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방법, 기계, 제품 또는 합성물로서 자명하지 않은 것 또는 이들에 대한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으로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업 또는 산업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나. 등록요건

케냐 산업재산법 상 발명의 특허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산법 하에서 다음의 발명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 순수하게 정신적인 행위, 게임을 하는 규칙과 방법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간 또는 동물의 몸의 처리 방법 및 상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진단 방법(다만, 당해 방법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
- 단순한 정보의 제시
- 공중 위생의 알려진 제품의 치료 목적의 사용
-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및 안전, 인도주의 및 환경 보전에 반하는 발명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 출원 서류/비용

케냐 특허청이 요구하는 출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다음의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 완전한 명칭 및 주소
- 명세서, 청구, 도면 (해당하는 경우) 및 초록
-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대응하는 외국 출원 서류의 인증된 진정한 사본



- 출원인이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명한 국내 특허 대리인을 위해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에는 소정의 양식 IP 39를 사용해함
- 공식 출원 수수료는 미화 150 달러이며(출원인이 국내 특허 대리인을 세운 경우) 위임장 제출 수수료는 미화 50 달러임
- 청구항이 10개항을 초과하면 항당 미화 20 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함

## 2) 우선권 주장 서류

유효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선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출원인은 케냐 특허청에서 권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인정할 수 있는 6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먼저 원본 서류의 인증된 진정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3) 위임장 요구 사항

출원서 제출시 공증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4) 변리사 대리

출원인이 케냐에 비거주자인 경우, 출원 및 후속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케냐의 국내 대리인은 케냐 특허청에 특허 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 5) 심사 청구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정의 양식 IP8을 사용하여 실제 심사 청구를 하고 공식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 또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6) 신규성 유예 기간(Grace period)

발명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12개월 이전에 출판에 의한 공개(도면 및 기타 도해를 포함한다)의 방법 또는 구두 공개, 전시로 공개한 경우,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으면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 공개가 상기 12개월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 의한 행위이거나 또는 출원인(또는 그 이전 권리자)에 대해 타사의 남용에 의한 공개이거나 모두 신규성 의제의 사유에 해당된다.

## 7) 이의신청

케냐에는 출원인에게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제 3자가 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이해관계인은 특허 부여의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 8) 심사처리 기간

공식 심사처리 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방식심사의 결함은 특허청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실체심사에 대한 답변은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9) 선행권리 조사 및 비용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양식 IP43에 의해 공식적인 신청을 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등록 특허 또는 계류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조사를 케냐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00 달러의 공식 조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만약 조사의 대상이 계속 중인 특허 출원에 관련된 경우 케냐 특허청은 해당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될 때까지 해당 출원에 관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미공개 특허 출원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 출원 번호
- 출원인의 명칭
- 출원일
-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우선일 및 선원이 이루어진 국가 및 선출원의 출원 번호

## 10) PCT 출원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는 PCT 특허 출원은 그 국내 단계의 출원을 케냐 특허청에 할 수 있다. 따라서 PCT 규정에 따른 국제 특허 출원을 할 출원인은 자신이 특허 보호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회원국의 하나로서 케냐를 지정국으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 PCT 출원의 출원일(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 개월 이내에 케냐 특허청에 국내단계 진입하여야 한다.

또한 PCT 출원을 통해 지역 특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출원은 하라레에 있는 ARIPO 특허청에 제출하고 등록되면, 케냐의 국내 특허 내지는 케냐 특허청(KIP)에 제출된 국내 단계로 이행된 PCT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1) ARIPO 출원

케냐는 아프리카 지식재산청의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ARIPO 의정서)의 회원국이다. 케냐 산업재산법 제59조는 ARIPO 의정서에 따라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여 ARIPO가 부여한 특허는 케냐 특허청이 자국 산업재산법에 따라 부여한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라. 특허권의 효력

등록된 특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권자는 등록특허를 통해 제3자가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독점한다.

(a) 특허가 제품에 대해 부여되는 경우

-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신청을 하고 판매 및 사용하는 것, 또는
- 제품의 판매 신청을 하고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b) 특허가 방법에 대해 부여되는 경우

- 방법을 사용하는 것, 또는
-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얻은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신청을 하고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 마. 심판/소송제도

케냐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의 소를 케냐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취득한 경우 등록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케냐 산업재산법에 따라 해당 특허나 상표의 등록 취소의 소를 케냐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심판원은 따로 없음)

소송의 제기는 출원의 거절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정의 양식 (IPT5)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 제기비용으로는 400 달러의 공식 수수료를 납부한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건수에 달려있다.

또한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의한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판결의 상소를 항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이유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출원 비용

선행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조사는 케냐 특허청의 특허국 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미화 100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외 주요 수수료는 이하와 같다.

	Kshs	USD
출원료	3, 000	150
가출원	1, 000	50
실체심사 청구	5, 000	250
공보료	3, 000	150
등록료	3, 000	150
연차료-2년(이후 변동됨)	2, 000	300

아프리카 지역 특허청(ARIPO)의 주요 수수료는 이하와 같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료	USD 250	USD 100	USD 50
지정료(지정국 수에 곱함)	USD 75	USD 20	USD 10
발송료	Kshs 5000	Kshs 5000	Kshs 5000

## 2.2.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케냐에서 실용신안은 기구, 공구, 전기 및 전자 회로, 수예의 구조 또는 다른 물체 또는 그 일부로서 대상의 더 나은 또는 다른 기능의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 또는 이전 케냐에서 얻지 못한 유용성, 이점, 환경 보전 혜택, 절약 또는 기술적 효과를 부여하는 구성의 모양, 외형 또는 배치를 말한다. 또한 실용신안은 새로운 효과를 갖는 미생물 또는 기타의 자기 복제 물질, 유전자원의 산물 약초를 포함한다. 실용신안이라는 용어는 “혁신(innovation)”의 용어로도 불리어 진다.

특히 출원과 달리 다음의 요건은 실용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비자명성 또는 진보성
- 실용신안 출원은 실제 심사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출원인이 출원의 실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정식 청구를 하고, 공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실용신안 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관납료는 다음과 같다.

	Kshs	USD
출원료	1, 000	50
가출원	500	50
공보료	3, 000	150
등록료	3, 000	150
연차료-2년(이후 변동됨)	1, 000	50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은 "선 색채의 조합, 또는 선 색채와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입체적인 모양, 다만, 당해 조합 또는 모양은 산업 또는 수공예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며, 또한 산업 또는 수공예 제품의 모양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sup>60)</sup>

산업재산법(IPA: Industrial Property Act)에서는 복수의 물품을 단일 물품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도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다른 조합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일부가 디자인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갖는다.

60) IPA 제84조

## 나. 등록요건

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및 독창성이다. 케냐에서는 IPA<sup>61)</sup>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 입체적 형상을 갖추지 않은 것
- 「특별한 외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
- 그 형상 및 그 밖의 디자인의 특징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실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신규성'이 없는 것
-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시 제출서류

케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의 완전한 명칭과 주소
- 디자인을 실제로 구체화하고 있는 물품의 견본
-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인 상품의 설명
- 디자인의 새로운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간단한 기술
- 디자인 창작자(복수 가능) 또는 디자이너(복수 가능)의 완전한 명칭과 주소
- 대응하는 선원의 외국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인증된 진정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 2) 심사 청구

케냐 특허청이 방식심사를 완료하는 대로 디자인 출원의 실체심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구하는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61) IPA 제84조, 제86조

### 3) 이의 신청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기 전, 그 인용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디자인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 출원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 IP23으로 케냐 특허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어 등록증이 발행된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를 산업재산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디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디자인 등록의 상세한 내용이 IP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 IPT 14로 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출원인은 등록거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케냐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산업재산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의 소송을 청구한 경우, 해당 소송의 반대 당사자는 케냐 특허청이 된다. 산업재산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케냐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4) ARIPO 출원

케냐는 아프리카 지식재산청의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ARIPO 의정서)의 회원국이다. 케냐 산업재산법 제92조(4)는 ARIPO 의정서에 따라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여 ARIPO가 부여한 디자인은 케냐 특허청이 자국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부여한 디자인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이루어 인용 된 경우)에서 5년이다. 등록 디자인은 이후 갱신 출원을 함으로써 두 차례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 마. 비용

디자인 출원시 비용은 공식 출원 수수료 150 달러와(출원인이 국내 특허 대리인을 세운 경우) 위임장 제출 수수료로 50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선행 등록된 디자인의 조사는 케냐 특허청의 특허국 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미화 100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양식 IP43에

의해 공식적인 신청을 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등록 디자인 또는 계류 중인 디자인 출원에 대한 정보조사를 케냐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이 비거주자 인 경우에는 100 달러의 공식 조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Kshs	USD
출원료	3, 000	150
공보료	3, 000	150
등록료	1, 000	50
연차료-(출원일부터 5년 이후)	10, 000	500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케냐 상표법에 의하면 상품을 위한 상표, 서비스용 서비스표,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및 평면 상표와 입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동법은 기본적으로 1984년 영국 상표(개정)법에 의해 폐지된 1938년 영국 상표법의 규정을 참고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리적 표시(GI), 소리, 맛과 냄새의 상표 또는 주지 상표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표법에서 "표장"은 특징적인 모양(제품에 관해 "특징적인 모양"은 제품 용기의 모양이나 윤곽을 말한다), 표어, 도안, 브랜드, 제목, 라벨, 꼬리표, 명칭, 서명 단어, 문자 또는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며, 평면적인지 입체적인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상표에 표시되는 외국어 또는 기호의 영어 번역을 상표 등록 출원에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어 상표도 등록 가능하다.

### 나. 등록요건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에 의해 수시로 개정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니스 분류)를 준수하고 있다. 케냐 상표국이 준수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 분류는 니스 분류 제10판이다. 케냐에서는 여러 분류를 지정 상표 로 하여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



표장이 등록 적격이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12조의 식별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지리적 명칭, 성 및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장은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국기, 국장 국장의 무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장도 등록 할 수 없다.

케냐 상표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출원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자국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국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한다. 케냐 상표국은 평면 또는 입체 표장을 심사할 때 영국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의 형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체 표장은 등록할 수 없으며, 그러한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서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제출해야한다.

- 출원인의 명칭과 주소
- 표장을 등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상품 및 서비스 출원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 제10판에 따라 지정된 분류에 해당해야 함
- 표장의 선명한 흑백 또는 컬러 인쇄
- 표장 내에 존재하는 외국어 또는 스와힐리어 단어의 영어 번역
- 표장의 등록 출원을 할 대리인은 상표 출원절차를 진행하도록 자신에게 위임된 취지가 기재된 서명된 위임장
- 상표국에 정식 수수료의 납부  
(상표국에 대한 수수료는 표장의 등록을 요청 분류의 수에 따라 결정)

또한 상표 출원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상표 출원인이 임명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모든 기입된 양식 TM 2호
- 모든 기입된 출원 양식 TM 32호 (서류 송달을 위한 주소를 기입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상표 대리인의 주소를 포함한다.)
- 인지를 붙여 낱씨를 기입하고 서명된 위임장(TM 1 호)로서 대리인을 임명하고 표장 등록 출원을 위임한다.

\* 이러한 양식은 2003 년 케냐 상표 (개정) 규칙에 함께 공식 상표 국 규칙을 게재하는 사이트<sup>62)</sup>에서 제공함

상표법 제63조(1)에서는 일반적으로 케냐 밖에 거주하거나 또는 케냐 외에 사업소를 가지는 출원인이 상표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구는 비거주자가 출원 목적으로 케냐 상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표 등록을 직접 출원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출원한 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케냐 상표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상표 대리인으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3조(3)은 케냐 국민이며, 케냐 고등법원 변호사, 또는 2001년 산업재산권법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 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상표 대리인의 역할을 자격을 갖춘다고 규정한다.

케냐에서 상표 출원은 실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허,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실제 심사가 진행된다.

## 2)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공보에 출원 공개일로부터 60 일간이다. 이러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근거로 이의 신청인은 해당 표장이 케냐에서 자신의 마크로서의 명성 또는 영업권을 획득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출원의 대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신의 표장을 케냐에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충분히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상표법 제15A조는 케냐에 등록되지 않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표장의 소유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표장이 이의 대상이 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케냐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질 정도로 충분히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한다.

## 3) 유명 상표

케냐 상표법에는 '유명' 상표 등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15A조에는 표장이 케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권리자가 증명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파리 조약 또는 WTO/TRIPS 협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상표에 관하여 이를 유명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4) 심사기간

상표국은 보통 출원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62) "Trademarks Rules"사이트 : <http://www.kenyalaw.org/lex//sublegview.xql?subleg=CAP.%20506>

#### 5) 마드리드 협정/의정서

케냐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으며, 협정 및 의정서 및 공통 규칙의 규정은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는 출원이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모든 표장에 적용된다.

#### 6) ARIPO 출원 관련

케냐는 ARIPO 의정서의 회원국이지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케냐가 가맹하고 있는 것은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ARIPO(하라레) 의정서 뿐이다. 따라서, 케냐를 지정국으로 하는 ARIPO 특허 및 디자인 등록은 유효하지만, ARIPO 의정서에 따라 등록된 ARIPO 상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케냐의 상표 대리인이 ARIPO 의정서에 따라 ARIPO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없다.

### 라.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에서는 상표, 서비스 마크, 평면 상표 또는 입체 상표, 방호 표장, 단체 표장 및 증명 표장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등록 상표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인용된 경우)에서 10년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등록을 10 년간 갱신할 수 있다.

등록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또는 혼동을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표 침해소송을 케냐 고등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상표 소유자에게 부여된다.

### 마. 비용

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표장의 조사는 케냐 상표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상표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해당 조사를 위해 대리인이 상표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21 달러 상당이다.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케냐의 저작권 보호의 주요 준거법은 2001년 저작권법(케냐 법률 제130장)과 1995년 저작권(개정)법 제9호 및 2004년 저작권 규칙과 2011년 저작권(개정) 규칙이다.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의 자격을 가지는 저작물은, 문학적 저작물, 음악적 저작물, 미술적 저작물, 시청각적 저작물, 레코드, 방송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특정할 수 없는 저작자에 의해 케냐 내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학적, 음악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을 포함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지며 케냐 전통 문화유산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는 '민간 전승물'에도 저작권 보호를 부여한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저작권자는 케냐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 등록부에 자신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방법으로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권의 일단 증거를 구성하지만, 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행위에 종사할 경우 문학적, 음악적, 미술적 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원 저작물의 형태 또는 원 저작물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실질적 부분을 물리적인 형태로 복제하거나
- 원 저작물의 전체 또는 실질적 부분을 판매, 대여, 리스, 임대차, 대출 또는수입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반포
- 원 저작물의 형식 또는 원 저작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실질적 부분을 공중에게 전달시키는 것.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 보호의 존속 기간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저작권법의 제23조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문학적, 음악적 또는 사진 이외의 미술적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에서 50년

- 시청각 저작물 및 사진은 저작물이 최초로 작성된 날, 공중이 저작물을 최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또는 최초로 발행된 날 중 가장 늦은 해의 말에서 50년
- 레코드는 레코드가 작성된 해의 말에서 50년
- 방송은 방송이 진행되던 해의 말에서 50년

## 2.6 기타

### 가. 영업비밀/불공정 경쟁 행위

케냐에는 영업비밀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없다. 케냐의 영업비밀은 영국 보통법의 적용 원칙과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법령에는,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WTO/TRIPS 협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은 등록하지 않고도 무기한 보호된다. 대상 정보가 영업 비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TRIPS 협정 제39조의 일반적 기준이 케냐에 적용된다. 즉, 해당 정보가 비밀이며, 해당 정보를 통상 취급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용이하게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에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의해, 예를 들면 기밀 유지 계약 등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영업비밀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대상 정보를 허가 없이 입수하는 것이며, 독자적인 발견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부정 경쟁 관련한 케냐의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로 할 수 있는 규정은 파리 조약 제10조의 2에 불과하다.

### 나.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케냐 특허청의 상표국 및 케냐의 다른 부처에서도 지리적 표시(GI) 등록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 3.1. 사법구제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건 및 사칭 통용 사건은 케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들 사건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케냐 항소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항소가 헌법 문제를 포함하고 있거나 케냐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등 대법원이 상고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항소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케냐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디자인 및 실용신안 침해, 취소 및 무효 소송을 동 법에 의해 설치된 산업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산업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케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법원에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 및 취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케냐 변호사회에서 발행한 유효한 업무 허가증을 소지한 케냐 고등법원에 의해 허가된 변호사이어야 한다. 케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에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재판 전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케냐에서 자신의 하나 이상의 케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유사한 상품에 붙여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고 있음이 드러난 모든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케냐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 소송은 상표권자가 그 하나 이상의 표장을 케냐에서 등록했을 경우에만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케냐에서 등록하고 있지 않으나 그 상표를 붙인 자신의 상품을 그 상표가 케냐에서 영업권을 획득하는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하나 이상의 표장을 붙인 유사한 상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사칭 통용 소송을 케냐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2008년 위조품 단속법(Anti Counterfeit Act)과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실시 규칙은 위조품을 수입, 제조, 조립, 포장, 보관, 판매하고 있다고 위조품 단속 기관(Anti Counterfeit Agency : ACA)이 판단할 근거가 있는 케냐의 시설을 적발하고 위조품을 압수하고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조품 단속법에 의해, 케냐 항구에 지정된 선박에 도착하는 상품화물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위조품을 유치하고 압수하는 법적 권한이 케냐 세관(Kenya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 부여되어있다. 다만, 케냐 세관은 상표 등록제도가 없으며 직권으로 통관 금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 가. 케냐 위조품 단속기관(ACA)

ACA의 기능은 적발이나 모방품을 압수하고, 그러한 상품의 수입자, 제조자 및 소매상인을 형사 소추하고, 그러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벌금, 그리고 압수한 위조품의 몰수 및 폐기를 명하는 명령을 획득하는 것이다.

### 나. 케냐 세입청(KRA)의 세관

KRA의 기능은 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올바른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데 있다. 위조품 화물의 도착 예정에 관련하여 위조품 단속법 제34조에 의거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접수하면 위조품을 유치하여 압수할 수 있다.

위조품 단속법 제34조는 세관에 대하여 위조품 화물을 압수, 검사, 유치하기를 원할 경우 피의 위조품을 압수하고 유치하도록 양식 ACA10을 사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양식 ACA11을 사용한 완전한 손실 보상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는 통관보류를 신청하는 근거로 하는 케냐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완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신청의 근거가 되는 등록된 상표 또는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등록증 및 갱신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정 제품 또는 저작물의 견본도 신청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ACA 또는 세관에는 보증금, 담보 또는 예금을 일절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케냐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서 위조품 단속법 제32조 하에서 ACA에 고소한 자 또는 위조품 단속법 제34조 하에서 특정 상품을 압수하여 유치하도록 세관장에게 신청한 자는 ACA에 대한 고소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양식 ACA9 또는 ACA11이 서명된 손실 보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지식재산권 사전등록

등록된 상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ACA에만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케냐 세관에는 사전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ACA에서는 세관으로부터 요청되지 않는 한 사전 등록된 상표의 세부사항을 세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 3.3. 형사구제

위조품의 제조, 포장, 수입 및 판매를 방지하거나 금지시키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위조품 단속법에 근거하여 위조품 단속기관(ACA: Anti Counterfeit Agency)에 고소하고 적발, 압수 및 소추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케냐 상표법 하에서 고소인에 의해 케냐에서 등록된 하나 이상의 상표가 복제되었거나, 케냐 산업재산법 하에서 고소인에 의해 케냐에서 등록된 특허,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이 복제되었거나 또는 케냐 저작권법 및 규칙에 따라 고소인이 소유하고 근거로 하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 고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1만 실링 수수료
-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서하고 고소인의 등록된 지식재산이 모방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하나 이상의 케냐 상표등록증의 인증된 진정한 사본을 첨부한 선서진술서 양식(ACA12)
- 양식 ACA9을 사용해 고소인에 의해 서명된 피의 위조품의 부당한 압수, 제거 또는 유치 청구로 인해 ACA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서
- 양식 ACA15(본 매뉴얼의 부속서에 첨부하는 사본)를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고소인)가 그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자를 임명하는 위임장과 공식 수수료 1,000실링

위조품단속법 하에서는 침해품 전체의 외장 또는 외관이 사칭 통용의 대상이 되어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상품과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어느 정도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ACA에는 그것만을 근거로 침해상품을 압수할 권한은 없다. 케냐에서 등록해 근거로 삼을 만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미등록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사칭 통용 소송을 케냐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ACA 검사관은 위조품 단속법에 따라 시설에 출입해 위조품을 압수하고 침해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ACA는 압수품을 특정하여 압수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침해 당사자에게 그 목록을 제공하고 상품을 소정의 안전한 위조품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상품이 보관되어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고소인의 신원에 관하여 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CA는 압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침해 당사자를 형사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압수품을 반납해야 한다.



저작권의 자격을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의 소유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분을 허가 없이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복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고등법원에 이러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자격으로 케냐 저작권 위원회에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할 별도의 필요는 없다. 만국 저작권 조약과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에서 저작권자는 허가 없이 그 저작물의 어느 한 부분을 복사하는 임의의 자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케냐에서 제기할 수 있다.



# 04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 산업재산법
- 저작권법
- 상표법
- 종자 및 식물 품종법
- 위조품 단속법(ACA) 2008년

케냐(Kenya) 11

코트디부아르(Ivory Coast) 12

탄자니아(Tanzania) 13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XII. 코트디부아르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4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52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66



# 01

## 지식재산제도 개요

### 1.1. 개요

코트디부아르에서 발명은 방기 협정에 의거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방기 협정은 특허권 부여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제기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 출원은 특허권 허여 또는 거절 전에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특허받은 발명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은 선 또는 색상의 배치가 해당 배열을 통해 산업용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 연속 2번의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보호대상은 식별력이 있고 기만적이지 않은 상표 및 다른 거래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이다.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수수료 납부 후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코트디부아르가 가입한 국제, 지역 협정은 다음과 같다.

PCT	방기협정 (OAPI)	베른조약	헤이그 협정	파리조약	WIPO 조약	WTO/TRIPS 협정
가입 (1991년)	가입 (1982년)	가입 (1962년)	가입 (1993년)	가입 (1963년)	가입 (1974년)	가입 (1995년)

## 1.2. 지식재산관련기관

### 가. 아프리카 불어권 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사이트	<a href="http://www.oapi.int/">http://www.oapi.int/</a>
주소	Rue Hyppodrome 158, Place de la Préfecture. Yaoundé-Cameroun
전화번호	(237 2) 222 057 00
이메일	oapi@oapi.int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는 1977년 3월 체결된 방기 협정(Bangui Agreement)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식재산 관련 지역기구로서, 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르,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의 주로 불어를 사용하는 17개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16개국이 연합한 불어권 지역의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OAPI(Organic Africaine de la Properté Intelligentielle) 회원국이다. OAPI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 공통된 행정절차에 의해 통일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조성을 위한 통일 입법제도 채택
- 각 회원국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청의 역할을 할 공통 기관의 신설
- 개별 회원국의 국가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타이틀로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화한 절차를 제공

카메룬 야운데에 본사를 둔 OAPI IP 사무소는 방기 협정에 따라 부여된 OAPI 지식재산권 등록, 유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 사항을 처리한다. 침해사건의 소송절차 등 분쟁행위는 통상 분쟁이 발생한 회원국의 법원이 담당한다. OAPI 회원국들은 파리협약, 부다페스트 조약, PCT 협정, WTO/TRIPS 협정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나. BURIDA**

음악, 영상물, 공연물 등에 관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코트디부아르 저작권사무소(BURIDA; Bureau Ivoirien du Droit d'Auteur)이다. BURIDA는 총회, 이사회, 총회 및 감사로 구성된다.

사이트	https://www.buridaci.com/web/
주소	BP V 258 Abidjan
전화번호	(225) 22 41 22 11
이메일	info@buridaci.com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63)</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2	-	696	-	209	-
2015	24	-	754	-	131	-
2016	16	-	851	-	204	-
2017	21	-	925	-	145	-
2018	23	-	1,175	-	92	-

6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1](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1)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 공공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착취(발명의 착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관련된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생물학적 과정 이외의 동식물의 번식을 위한 식물 품종, 동물종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과 그 과정의 산물을 주제로 하는 발명
- 사업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순전히 정신적 행위 또는 게임 수행
- 인체나 동물의 신체를 수술이나 치료로 치료하는 방법(진단법 포함)
- 단순한 정보 표시
- 컴퓨터 프로그램
- 장식성 작품
- 문학, 건축, 예술 작품 또는 기타 미적 창작물

### 나. 등록요건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은 제품, 과정 또는 그 사용과 관련되며, 발명품은 수공예, 농업, 어업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하지 않은 발명은 특허를 얻을 수 없다. OAPI에 출원서 제출일이나 우선일 이전에 서면 공개(도면 및 삽화 포함)나 사용 또는 전시 등의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모두 선행기술로 간주된다.



## 다. 취득절차

### 1) OAPI 일반절차

특허 문제는 방기 협정의 부속서 1에서 다룬다. 특허 출원은 OAPI 사무소에 접수하거나 회원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출원인이 먼저 회원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출원서는 5일 이내에 국가 특허청에 의해 OAPI로 전송되어야 한다. OAPI는 PCT의 회원이기 때문에 PCT 출원을 통해서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2) 특허출원유형

방기 협정에 따라,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파리협약을 통하지 않는 출원
- 파리협약을 통한 출원(출원일이 파리협약에 따른 최초 우선일 경우)
- OAPI 지정, PCT에 따른 국제 적용에 따른 국내 단계 출원
- 분할출원(둘 이상의 발명을 원용하는 경우)
- 원 특허의 발명에 대한 보정 또는 수정사항의 추가 신청

### 3) 출원

특허 출원은 출원인 본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이 OAPI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원인은 대리인이 대표해야 한다. OAPI가 인가한 에이전트만 OAPI에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다.

### 4) 출원 시 요구사항

- 출원인의 자세한 정보
- 서명된 위임장
- 영어 또는 프랑스어 명세서(청구서, 도면 및 초록 포함)
- 우선권 문서(해당되는 경우)
- 발명의 양도(해당되는 경우, 단순 서명)

참고로 OAPI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 5) 분할 출원

하나의 그룹으로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 출원서는 다수의 출원서, 즉 분할 출원서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출원서는 상위 출원서의 출원일을 갖는다. 분할 출원 신청은 OAPI에서 발행한 관련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6) 추가 인증서/특허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체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변경, 보정 또는 추가를 통해 추가 인증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추가 인증서는 주 특허 존속기간과 함께 종료된다. 인증서 신청은 인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특허 신청서로 전환할 수 있다.

#### 7) 출원인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출원인과 다를 경우 OAPI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8) 신규성 유예기간

발명의 공개가 공식 또는 공식으로 인정되는 전시회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공개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경우, 출원일이나 우선일 이전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 9) 조약 우선권

코트디부아르는 파리협약 가입국이므로 우선권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다른 협약 국가의 출원에 기초하여 협약 우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10) 심사/절차

특허 출원에 대해 이하의 사항에 대한 방식 심사가 이루어진다.

- 발명에 제외된 주제의 포함 여부
- 명세서의 공개에 근거하여 청구항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발명의 동일성 여부 및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11) 이의신청

방기 협정은 특허권 부여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제기를 위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지 않는다.

12) 공개

허여된 특허는 OAPI 공보에 게재된다.

13) 보정 또는 수정

특허 명세서의 보정은 특허권 허가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은 기록될 수 있으며, 출원서에 수정할 수 있다. 기록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명된 위임장
- 명의변경 증명서 사본

**라. 특허권의 효력**

1) 존속기간 및 유지 관리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매년 특허 출원에 대해 유지료 및 연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출원일(또는 유예기간 내에)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2) 회복

수수료 납부 기한 전, 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연간 유지보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서/특허권이 소멸된다. 권리의 복원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먼저 중요되는 날 이전에 가능하다. 복원 신청은 'OAPI Restore'에서 할 수 있다.

3) 양도 및 라이선스

특허권은 부분적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 및 라이선스는 기록되어야 하며, 양도를 위한 기록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명된 양도인의 위임장
- 공증된 양도증서(영어 또는 프랑스어 또는 검증된 번역이 수반된다.)

또한 라이선스를 위한 기록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실시자별 서명된 위임장
- 특허권자의 서명된 위임장
- 공증된 특허 라이선스 약정서(프랑스어, 영어 또는 검증된 번역서 필요)

#### 4) 강제실시

특허권의 강제실시는 이하의 두 가지 상황에서 부여할 수 있다.

##### 가) 미사용(non-working)에 대한 강제실시

특허발명이 아래와 같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실시는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다.

- 특허 받은 발명이 회원국 중 하나에서 미사용하고 있는 경우
- 이러한 영역에서의 특허 발명의 사용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호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특허권 소유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약관에 따른 실시권 부여를 거부하며, 그 결과 해당 영토에서의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의 설립이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나) 종속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

특허 받은 발명이 이전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실시될 수 없고, 이전 특허의 소유자가 종속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전 특허에 따른 강제적인 라이선스를 민사 법원에 강제 실시 신청을 통해 부여할 수 있다.

#### 5) 특허권의 효과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특허 받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위임하며, 위임 업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제품,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보유하는 것
- 그 공정의 이용에 직접 기인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공정을 이용하는 것

## 마. 심판제도

방기 협정은 특허의 무효, 취소,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몰수는 출원 유지료 및 연차료가 제 때 납부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특허권 무효는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허의 무효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발명이 비특허주제로 구성된 경우
- 명세서의 기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OAPI에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 2.2. 실용신안

방기 협정의 부속서(Annex II)는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구성, 즉 새로운 배열 또는 새로운 구성요소 장치를 수반하는 발명에 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과 인증서의 발급을 규정한다. 실용신안은 수공업, 농업, 어업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 출원은 특허권 허여 또는 거절 전에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선 또는 색상의 배치는 해당 배열을 통해 산업용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해당 제품 제조의 패턴이 될 수 있다면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하다. 다만, 공공정책이나 도덕성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이 발명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 출원을 통해 보호를 얻어야 한다.

##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기간

### 1) 일반절차

코트디부아르에서 디자인권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은 1977년 방기 협정이며, OAPI 회원국은 국가 IP법을 포기하도록 요구되었는바, OAPI 등록은 각 OAPI 회원국에서 유효한 단일방식으로서의 디자인권 보호를 제공한다.

디자인 출원 신청은 OAPI 사무소 또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코티드부아르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는, 담당 부처가 출원서를 OAPI 사무소에 5일 이내에 전송해야 한다. OAPI의 디자인 출원은 OAPI 직접 출원을 통하거나 또는 헤이그 협정 하의 국제 출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 2) 출원유형

디자인 등록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OAPI 출원
-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서
- 헤이그 협정에 따른 OAPI 지정 국제 출원.

### 3) 출원서류

단일 출원서에는 로카르노 협약에 따라 동일 분류에 속하거나 동일한 세트 또는 범위의 물품에 속할 경우, 100개 이하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출원 시, 요구서류는 이하와 같다.

- 신청자의 자세한 정보
- 위임장
- 디자인의 적절한 표현
-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 제품의 종류 명세서
- 지정서류(해당되는 경우, 단순서명)
- 우선권 문서의 공인 사본(해당되는 경우)

4) 디자인 분류

로카르노 협정(Locarn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Designs)에 의한 분류가 적용된다.

5) 조약 우선권

우선권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 청구는 출원 시점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심사 절차

OAPI 사무소는 출원서가 방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충족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거절이유 통보가 내려진다. 출원인은 3개월의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된다. OAPI 사무소가 방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면 디자인을 등록하고 공보에 공표한다.

7) 이의신청

방기 협정에 의하면 디자인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조항이 없다.

**다. 디자인권의 효력**

1) 존속기간 및 유지관리

디자인 등록의 기간은 최초 5년으로, 5년 연속 2번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가 미납되면 등록이 만료된다. 등록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시작된다.

2) 디자인권의 회복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은 신청자/소유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수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회복 신청은 OAPI 복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상소위원회에 상소 가능하다. 등록이 만료된 후 디자인 사용을 시작한 제3자는 디자인권이 복원된 후에도 해당 디자인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복된 디자인권은 OAPI 저널에 규정된 형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케냐(Kenya) 11

코트디부아르(Ivory Coast) 12

탄자니아(Tanzania) 13

### 3) 양도 및 실시권

디자인은 부분적 또는 전체 양도가 가능하다. 이는 OAPI가 보관하는 특별 등록부에 기록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명된 위임장
- 실시허가자로부터의 서명된 위임장
- 영어 또는 불어로 번역된 검증실시 계약서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식별력이 있고 기만적이지 않은 상표 및 다른 거래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가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출원서는 OAPI 사무소에 제출한다. 출원서는 OAPI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OAPI 사무소는 제출된 출원서가 형식 심사 및 실질 심사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등록 시, 상표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등록권자에게 상표 증명서가 발급된다.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평균 12개월이 소요된다.

### 다. 상표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수수료 납부 후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상표 소유권자가 OAPI 회원국 중 한 국가의 국토 내에서 상표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갱신할 수 있다. 연차료 납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 2) 양도

상표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OAPI 사무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상표권 변경은 기록되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 단체 표장은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법적인 합병의 경우, 산업재산을 담당하는 장관이 합병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단체에 대한 단체표장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상표권의 소유권 변경시 기록 요구사항은 이하와 같다.

- 인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명된 위임장
-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공증된 영어 또는 프랑스어의 검증된 번역이 수반되는 위임장

## 3)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설정이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이 필요하다. 모든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시 실시권자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러한 품질관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러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상표권의 라이선스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자의 서명된 위임장
- 실시자의 서명된 위임장
- 쌍방이 서명하고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사용권 계약

## 4) 상표등록으로 부여된 권리

상표 등록은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와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상표 등록은 제3자의 선의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상표 등록은 OAPI 회원국에서 상표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된 상품과 관련하여 OAPI 회원국 내에서 상품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 라.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이해당사자는 상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자는 OAPI 사무소에 이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OAPI 사무소에 서면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무소는 상표권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서 사본을 보내게 되며, 대리인은 3개월의 기간(한 번 연장 가능) 내에 회신할 수 있다. 진술서에 대한 회신은 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전달된다. 상표 출원인의 회신이 정해진 기한 내 OAPI 사무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이의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규정된 표시가 아니거나,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없는 표시
- 표시에 구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표시를 적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 기호나 물질 또는 엠블럼으로 구성되는 경우
- 상표가 다른 상표권자의 등록 마크 또는 출원일 날짜나 우선일이 더 이전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대중이 혼동하기 쉬운 상표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공공정책이나 도덕이나 법률에 반하는 경우

### 2) 상표 무효/취소

상표 등록은 등록 신청을 반대할 수 있는 사유 또는 등록이 이전 권리와 상충될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상표의 무효 사유는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같다.

상표 무효 신청은 OAPI 회원국의 민사법원에 이해관계인, 검찰청 또는 전문단체가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특정국에서의 상표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당 국가에서만 상표가 무효로 선언된다. OAPI 회원국 중 두 곳 이상에서 상표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둘 이상의 OAPI 회원국에 또는 모든 OAPI 회원국에서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에 상표 무효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이 우선권과 상충되는 것이 무효화 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의 소유자만 상표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상표는 등록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등록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OAPI 사무소에 통보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무효는 공표일로부터 유효하다.

파리협약의 6 bis와 TRIPS 협정 제16조에서 말하는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OAPI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와 혼동하기 쉬운 등록 상표의 무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표 무효 신청은 선의로 신청된 경우 상표 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3) 사용요건 및 취소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OAPI 회원국의 어느 한 국가의 국토 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소유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등록상표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를 등록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까지 취소를 확장할 수 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의 허가된 사용은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 사용으로 간주된다.

최종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OAPI 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며, OAPI 사무소는 이를 상표 특별등록대장(Special Register of Marks)에 기록하고 공표해야 한다. 상표의 취소는 OAPI의 모든 회원국에 유효하다.

### 마. 비용

상표 출원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표 검색에 대략 100 USD, 단일 분류의 상표 등록에 400 USD가 소요된다.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

코트디부아르는 베른 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TO/TRIPS 협정의 회원국이며, 다음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1) 문예 작품 등 독창적인 것

- 컴퓨터 프로그램
- 강의, 주소, 설교
- 뮤지컬 작품
- 드라마 작품
- 안무 작품
- 시청각 작품
- 미술 작품(미술, 그림, 조각 등)
- 건축 작품
- 사진 작품
- 응용미술 작품(공리적인 기능을 가진 창작물)
- 일러스트, 지도, 계획 등
- 민속적 표현

2) 파생 작품 및 소장품(다음 포함)

- 번역 등
- 작품집, 민속 표현, 자료집 등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된다.

- 민간용 복제
- 교직에 사용
- 도서관 및 자료실별 복제
- 재판용 복제
- 정보 목적용
- 입법성 공문
- 당일의 뉴스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자는 방기 협정에 규정된 경제적 권리 및 도덕적 권리를 모두 포함한 저작권의 첫 소유자이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작품을 창작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권리가 사업주 또는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도덕적 권리는 저자에게 주어진다.

저작권 소유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저작물을 이용하며 거기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

- 작품의 재생
- 작품의 번역, 적응, 변형
- 저작물의 사본을 일반에 배포
- 공공장소에서 작업 수행
- 작업을 방송하거나 TV로 송신

#### 다. 저작권의 효력

##### 1) 저작권 기간

작품에 관한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생전에 더해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도덕적 권리는 무한히 지속된다. 응용 미술 작품에 관한 경제적 권리는 작품을 만든 후 25년간 보호된다.

##### 2) 저작권 존속 요건

저작자가 OAPI 회원국의 국적을 갖고 있거나, 거주지 또는 본부를 회원국에 두고 있는 경우, 또한 작품이 회원국에서 처음 출판되는 경우에 저작권은 존속된다.

#### 라. 저작권 등록

저작권의 등록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할 때 자동으로 형성된다.

## 2.6. 기타

방기 협정의 부속서(Annex) IX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록을 다룬다.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독창적이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 2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최초 상업적 사용일 또는 신청일(둘 중 더 이른 것)에 효력을 발생하며, 10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

### 3.1. 사법구제

코트디부아르 사법부는 3심제로 운영된다. 1심 재판부, 고등법원 및 대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 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자에게 유보된 행위를 수행할 때 발생한다. 특허권자는 침해가 발생한 회원국의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가 허가하지 않은 수취,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 행위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 나. 상표권 침해

상표 등록으로 부여된 권리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으로도 집행될 수 있다.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한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시에 상표 사용이 허가된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침해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실시권자는 침해에 대한 자신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침해절차에 개입할 권리도 있다. 등록 상표의 사용을 3년 이상 용인한 경우에는 등록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

상표의 선사용권을 입증하려는 자는 관련 상표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립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된 서면 또는 인쇄물을 증거로 하여 상표의 선사용권 관련 주장을 OAPI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OAPI 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 다.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권의 침해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식소송으로 판결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권리를 침해하여 고의로 저질러진 침해행위는 형사범죄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규정된 벌금의 부과를 위한 모든 형사 소송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로 검사가 제기해야 한다.

###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압류는 관할구역 내의 민사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침해물품의 압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소멸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는 고소인에게 압류가 발효되기 전에 보안을 위하여 비밀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압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항상 보안이 요구된다. 신고인은 압류가 실행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민사 또는 형사)를 취해야 한다. 고소인에 의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가 된다. 위반 물품뿐만 아니라 위반 물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기구에 대한 몰수도 규정되어 있다. 추가 압수물은 유죄 판결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3.3. 형사구제

상표권의 특정 침해행위는 범죄 및 형사행위에 해당하며, 상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물품에 다른 물품에 속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위조 또는 부정하게 부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알고 판매하거나, 이 표시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구매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부정하게 모방을 하거나, 부정 모방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부정하게 모방된 상표나 물품의 성격에 대해 구매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부착된 물품을 고의로 판매하거나, 그 표시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등록상표를 받고 자신이 등록한 것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물품의 성질상 구매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정보를 이용하는 것.

위와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벌금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5. 아프리카

### XIII. 탄자니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7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75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85
- 04. 지식재산관련 법령 \_ 286





## 1.1. 개요

탄자니아 합중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은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위치하며 탕가니카 섬, 잔지바르 섬, 펴바 섬(탕가니카 동쪽 해안에 위치)으로 구성되어 있다. 탕가니카(Tanganyika)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영국 신탁통치령이었으며 잔지바르(Zanzibar)는 1890년 이후 영국의 보호령이었다.

이 중 잔지바르(Zanzibar)는 특정 분야에서 입법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탄자니아의 지식재산권 체제는 두 개의 별도의 독립된 법적 시스템을 수반하고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두 개의 별도의 관할 구역 및 별도의 지식재산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에서의 특허권 보호는 각 영토에서 별도의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며, 특허권자나 실시자가 그 특허가 탄자니아에서 사용되고 있었거나 미실시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5년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허 보호는 탄자니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ARIPO 또는 국내 출원을 통해 탕가니카에서 획득할 수 있다. 탕가니카 특허법은 또한 PCT 적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탕가니카에서는 PCT 국내단계 적용을 통하여 유효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탄자니아에는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정식 절차 및 제도가 없기 때문에, 탄자니아 내에서 직접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탕가니카는 ARIPO의 회원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는 탄자니아를 지정하는 ARIPO 출원을 통해 가능하다.

탄자니아의 상표 등록은 BRELA(Business Registration and Licensing Agency)에 의해 관리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소유주가 상표와 관련된 영업권을 설정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다음과 같은 국제/지역 협정의 회원국이다.

- Banjul 프로토콜 (ARIPO) (1999년)
- 베른 조약 (1994년)
- Harare 프로토콜 (ARIPO) (1999년)

- 루사카 협정 (ARIPO) (1983년)
- 니스 협정 (1999년)
- 파리협약 (1963년)
- PCT 조약 (1999년)
- WIPO 협약 (1983년)
- WTO/TRIPS 협정 (1983년)
- 식물의 신제품보호에 관한 조약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다. ARIPO는 회원국들의 자원을 산업재산 문제에 함께 모아 재정과 인적자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가. 탄자니아 본토

#### 1) 탄자니아 저작권 협회(COSOTA: Copyright Society of Tanzania)

동 협회는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며, 구체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이트	www.cosota.go.tz
주소	COSOTA, Copyright Society of Tanzania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Benjamin Mkapa) Building, Nelson Mandela Road, Mabibo External P. O. Box 6388, Dar es Salaam - Tanzania
전화번호	+255 784 464007
이메일	info@cosota.go.tz

2) 탄자니아 특허청(Registrar of Patents with 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 BRELA)

BRELA는 특허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나. 잔지바르 섬**

1) 잔지바르 섬 저작권 협회(COSOZA)

예술 작품의 등록, 보호,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제공 및 소유주에게 로열티 배분을 다룬다.

<b>사이트</b>	<a href="http://cosoza.or.tz/">http://cosoza.or.tz/</a>
<b>주소</b>	Ministry Of Constitutional Affairs & Good Governance, Zanzibar, Tanzania P.O.Box 4085, Zanzibar, Tanzania - TANZANIA, UNITED REPUBLIC OF
<b>전화번호</b>	+255 24 22 320 58
<b>이메일</b>	info@cosoza.or.tz

2) 잔지바르 법무장관회의소(Attorney General's Chamber: AGC)

법무장관 회의소는 잔지바르 혁명정부(Revolutionary Government of Zanzibar)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와 헌법부(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내의 독립기관이다. 중의원 및 혁명회의(내각)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한 법무장관(AG)이 회의소를 이끈다. 법무장관은 사법행정, 개발을 위한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 창조하며 통치 구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입법, 입안 등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장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 법률 자문 제공
- 정부를 위한 민사 소송 또는 반정부 소송에서 정부 대표
-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대한 정부 자문 또는 대표
- 모든 법률 및 기타 법률 문서 작성 및 초안 작성

3) 호적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사이트	http://www.kubzanzibar.org
주소	Mambo Msiige Building, Kelele Street, Shangani, P.O.Box 772, Zanzibar, Tanzania
전화번호	+255 2422 36324
이메일	registrarnz@kubzanzibar.org, jose.meque@ipi.gov.mz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64)</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	4	-	-	-	-
2015	1	1	-	-	-	-
2016	-	-	-	-	-	-
2017	-	-	-	-	-	-
2018	25	-	-	-	-	-

64)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TZ](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TZ)

## 2.1. 특허

탄자니아 헌법은 재산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그 보호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허는 특허법(Patents (Registration) Act of 1995)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탄자니아 공화국은 탕가니카와 잔지바르라는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별도의 지식재산 관련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허 보호는 각 영토에서 별도로 획득해야 한다.

### 가. 보호대상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수반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다음은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얻을 수 없다.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생물학적 과정 및 그 생산물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 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성을 위한 생물학적 과정
- 사업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정신 행위 또는 게임 수행
- 컴퓨터용 프로그램
-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체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이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단순한 정보 표시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특허 보호는 탄자니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ARIPO 또는 국내 출원을 통해 탕가니카에서 획득할 수 있다. 탕가니카는 하라레 의정서(ARIPO에서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규제하는 조약)를 자국법에 인정했다. 따라서 ARIPO 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려는 출원인에게 유효한 특허 보호가 제공된다.

탕가니카 특허법은 또한 PCT 조약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탕가니카에서 PCT 국내단계 진입을 통하여 유효한 특허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라.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나 실시자가 그 특허가 탄자니아에서 사용되고 있었거나 미실시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특허기간은 10년으로, 5년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허 출원유지료/연차료는 미결 출원서와 허가된 특허 모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며 6개월의 초과 납부비용 유예기간이 있다. 연간 유지 수수료는 기한 전이나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서/특허권이 취소된다.

## 마.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서 교부 또는 거절 전 언제든지 특허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허 출원도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전환할 수 있다.

## 바. 강제실시권

고등법원은 특허 받은 발명이 효과가 없거나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 2.2. 디자인

탄자니아를 지정하는 ARIPO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ARIPO에서 추가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 까지이다.

탄자니아 현지에서는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정식 절차 및 제도가 없다. 이에, 직접 탄자니아 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 탕가니카는 ARIPO의 회원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는 탄자니아를 지정하는 ARIPO 출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RIPO)나 영국 특허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는다면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IPO에 등록된 디자인 및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부에 기재하고 양도될 수 있으며, 잔지바르 현지로의 양도 및 이관도 가능하다. 탄자니아는 ARIPO 하라레 협약(Harare Protocol)을 통해 특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협약(1982년 탄자니아는 유효)을 비준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법에는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에서는 영국 디자인 등록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

특허(등록)법은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권자의 권리와 특권을 디자인 등록 기간 동안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 섬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3. 상표

### 가. 개요

탄자니아, 즉 탕가니카는 파리협약, ARIPO(Banjul Protocol), 니스 협정, WTO/TRIPS의 회원국이다. 상표 신청은 파리 협약의 관점에서 협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될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상표는 무역 및 서비스 상표법(the Trade and Service Marks Act)를 따른다. 상표와 특허 등록은 BRELA(Business Registration and Licensing Agency)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소유주가 상표와 관련된 영업권을 설정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보호된다.

상표 출원은 BRELA의 탄자니아 상표 사무소(Tanzanian Trademark Office)에서 소정의 양식을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상표는 할당된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 섬은 모두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를 적용한다.

또한 탄자니아에서 보호가능한 상표 시스템을 정리하면 이하의 표와 같다.

ARIPO	OAPPI	MADRID	서비스표	유명상표
O	X	X	O(10판)	O

### 나. 보호대상

#### 1) 상표의 종류

다음 유형의 상표가 등록 가능하며, 인증 또는 단체 상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및 서비스 상표
- 마크의 일부
- 일련의 표시



## 2) 주지상표의 보호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의 복제, 모방, 번역을 구성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한다.

### 다. 등록요건

#### 1) 색의 제한

상표법은 상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 이상의 지정된 색상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상의 제한 없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그 상표는 모든 색상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상표의 부분 등록

상표권자가 상표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체 및 그 일부를 별도의 상표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3) 복수의 상표(series of marks) 등록

하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복수의 상표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 상표가 중요한 세부사항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재(statement)에 관해서는 다른 경우
- 위치의 수, 가격, 품질, 이름 또는 기타 특징 없는 문자나 색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 상표를 1회 등록으로 복수로(시리즈로) 등록할 수 있다.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절차

출원은 상표 등록관(Registrar of Trade and Service Marks)이 관리하는 상표 서비스 사무소(Trade and Service Marks Office)에 제출한다. 출원시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출원인의 자세한 정보

- (간단히 서명된) 위임장
- 상표의 전자 표본(electronic specimens)
-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목록
-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권 서류(인증된 사본)

## 2) 심사 절차

심사관은 출원서를 심사하여 방식 및 실질적인 이유 중 상대적(formal, substantive, relative grounds)인 이유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관은 출원서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경우, 출원을 허가하여 상표저널(Trade and Service Mark Journal)에 이의 제기의 목적으로 출원을 공고한다.

## 3) 분류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가 적용되며 하나의 출원이 하나의 분류에 적용된다.

## 4) 조약 우선권

탕가니카는 파리 조약의 회원국이다. 다른 조약국에서 상표 출원을 한 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탕가니카 출원을 접수한 경우, 선출원과 같은 날짜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마. 상표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7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10년간 갱신할 수 있다.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등록은 우선일로부터 계산된다.

### 2) 양도

상표의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등록부(register)에 등록해야한다. 양도시 기록 요구 사항은 양수인으로부터의 위임장 및 양도 증서를 포함한다.

### 3) 라이선스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사용권 계약의 기록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용권자의 (단순 서명된) 위임장
- 라이선서에 의한 (단순 서명된) 위임장
- 사용권 계약

## 바.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이의는 상표 출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이의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 절차

이의 신청인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후 증거를 제출한다.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통지 사본을 발송하고,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출원의 등록이 타당한 이유를 기재한 반론을 심사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출원인이 이러한 반론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반론을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한다. 상대방에게는 반대의 통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소정의 기간이 허용된다.

상대방의 제출 의견서는 심사관에 의해 다시 출원인에게 송달된다.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자신의 반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상대방은 2개월 동안 이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이의 신청은 심사관에 의해 심리된다.

### 3) 이의의 근거

이의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상표 사용이 법률 또는 도덕에 위배되거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지리적 또는 기타의 기원, 제조 공정, 특성 또는 그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기만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표가 상품의 형태, 구성, 색상, 또는 용기로만 구성되는 경우
- 상표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전사를 구성하고, 국내에서 잘 알려진 회사 또는 회사 이름과 혼동 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속하는 경우
- 상표가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동일하거나, 동일하거나 밀접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표가 그러한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대중을 속이거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전에 탄자니아에서 사용한 미등록 상표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탄자니아에서 동일하거나 밀접한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한 미등록 상표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경우
- 제3자가 탄자니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나 회사명과 상표가 유사하여 대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상표권 정정

상표권 등록과 관련하여 오류의 수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 심사관 또는 법원에 작성항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부에 항목의 삽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생략된 경우
- 등록부에 항목이 잘못 남아 있는 경우
- 등록부에 오류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오류 수정을 위한 신청서에는 출원인의 이익의 성격, 출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그가 요구하는 사항을 완전히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해야한다. 단, 심사관은 등록 상표권자가 오류 수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부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심사관은 등록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하기의 사항에 대한 오류 수정을 실시한다.

- 등록권자의 이름, 주소,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 이름과 주소 변경사항 기록
- 상표의 입력을 취소
- 상품이나 서비스 사양을 수정
- 면책 조항 또는 각서를 입력(enter a disclaimer or memorandum)
- 오류를 수정하거나 등록권자의 이름 또는 주소 변경을 입력

## 5) 사용요건

등록된 상표권은 취소 요청일 전 1개월까지 3년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한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는 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가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취소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3년 이상의 불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 등록 상표의 취소 신청을 심사관 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사. 침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서비스 또는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해 무역 또는 사업의 과정에서 상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등록상표의 특색이나 평판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표장은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한다.

다만, 등록 상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 자신의 이름 또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업상의 전임자의 이름을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
- 제품의 성격과 품질에 대한 성실하게 기술한 자에 의한 사용

### 아. 관습법 상의 권리(Common law rights)

특정 관습법 상의 권리는 인정되고 보호된다. 즉, 상표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사람의 사칭통용(passing off)에 대한 소송의 권리 또는 관련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법의 어떠한 규정도 등록 상표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또는 그 전임자)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자. 상품 표시

범례 "등록 상표" 또는 적절한 약어(예 : Regd.TM) 또는 기호 ®은 선택 사항이다.

## 2.4. 저작권

### 가. 개요

탄자니아 본토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저작권 및 인접(Neighboring) 권리법이다. 이 법은 문학, 예술, 민속,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저작권과 인접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른 IP 법안과 유사하게, 본 법은 독창적이고 창조성 있는 문예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

탄자니아는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을 비준했다. 이에 탄자니아에서의 저작권은 탄자니아에서 행해진 모든 작품과 탄자니아에서 처음 출판된 작품들이 작가의 국적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 나. 권리기간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보호 기간은 자연인의 경우 작가의 수명에 50년을 더한 것이다. 공동 저작자의 경우 보호기간은 더 오래 산 저작자의 생애와 그의 사후 50년이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특정 예외에 따르며, 저작물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50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거나 처음 출판된 날 중 가장 최근의 날로부터 50년이다.

시청각 작품은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처음 출판된 것 중 가장 최근의 날짜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응용 미술품은 작품을 만든 날부터 25년간 보호된다.

### 다. 저작권 집단관리

탄자니아 저작권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저작권 관리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 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탄자니아의 저작권 협회(COSOTA: Copyright Society of Tanzania)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저작권 등록을 관리하며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탄자니아 저작권 협회 설립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밖의 참여 행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
- 2) 로열티 및 그 밖의 보수를 징수·보급
- 3) 저작물, 제작물 및 작가 조합의 등록부를 유지 관리

- 4) 분쟁 발생시 저자의 권리에 관한 조사·홍보 및 증거자료 제공
-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사항이 있는 자료의 인쇄·발간·유통
- 6) 법에 따른 모든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 역할

잔지바르 섬에서는, 2003년의 잔지바르 저작권법(Zanzibar Copyright Act of 2003)을 따른다. 이 법은 COSOTA와 유사한 기능과 임무를 가진 Zanzibar 저작권 협회(COSOZA)를 설립하였다. COSOZA의 사무실은 잔지바르 법무장관회의소(Attorney General's Chamber) 산하의 등기소(Registrar General) 산하에 있다.

## 2.5. 경쟁법

탄자니아의 경쟁법은 에너지 및 수도 시설 규제 기관법(EWURA), 표면 및 해상 운송 규제 기관법(SUMATRA), 탄자니아 민간 항공 규제 기관법(TCA), 탄자니아 통신 규제 기관법(TCA), 탄자니아 통신 규제 기관법(TC)에 의해 주도된다. 특히 탄자니아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는 주된 법은 공정 경쟁법(FCC)이다. 이 법의 제 5(6)조에는 "단독으로 행동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 개인의 점유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10조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자가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03

##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침해행위는 침해의 성격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 관할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가처분,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형사 제재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포함된다.

탄자니아에서 대부분의 산업재산권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반면 형사적인 제재는 하지 않는다. 원고는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상업법원(commercial courts of law)에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대한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ve orders)을 신청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기존의 침해행위 외에도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기 쉬운 도구를 수입하거나 소유하는 자에게 과실을 부여하는 등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케냐(Kenya)

11

코디부코트(Coast)

12

탄자니아(Tanzania)

13



#### 4.1. 특허

- Patents (Registration) Act of 1994, Chapter 217, incorporating Patents Act no 1 of 1987 (as amended by Acts no 13 of 1991 and no 18 of 1991)
- Patent Regulations, 1994

#### 4.2. 디자인

- Ordinance no 25 of 1936, Cap 219

#### 4.3. 상표

- Trade and Service Marks Act no 12 of 1986
- Trade and Service Marks Regulations, 2000
- Merchandise Marks Act no 20 of 1963
- Merchandise Marks Regulations, 2008

#### 4.4. 저작권

-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Act no 7 of 1999
-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Recordings) Regulations, 2006
-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Registration of Members and their Works) Regulations, 2005

#### 4.5. 관련 권리

- New Plant Varieties (Plant Breeders' Rights) Act no 22 of 2002
- Plant Breeders' Rights Regulations, 2008.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권별 목차

1. 아시아		2. 유럽		3. 북미·중남미	
01. 대만	1	01. EU	1	01. 미국	1
02. 라오스	21	02. 그리스	17	02. 캐나다	35
03. 말레이시아	45	03. 네덜란드	35	03. 과테말라	65
04. 몽골	75	04. 덴마크	61	04. 도미니카공화국	85
05. 미얀마	95	05. 독일	77	05. 멕시코	103
06. 방글라데시	119	06. 루마니아	103	06. 베네수엘라	131
07. 베트남	141	07. 벨기에	119	07. 브라질	149
08. 스리랑카	169	08. 불가리아	133	08. 아르헨티나	175
09. 싱가포르	189	09. 세르비아	151	09. 에콰도르	193
10. 인도	215	10. 스웨덴	175	10. 칠레	213
11. 인도네시아	233	11. 스위스	197	11. 코스타리카	235
12. 일본	259	12. 스페인	217	12. 콜롬비아	253
13. 중국	295	13. 슬로바키아	239	13. 쿠바	275
14. 캄보디아	321	14. 영국	253	14. 파나마	293
15. 태국	345	15. 오스트리아	281	15. 파라과이	313
16. 파키스탄	367	16. 이탈리아	295	16. 페루	335
17. 필리핀	389	17. 체코	307		
18. 홍콩	419	18. 크로아티아	323		
		19. 폴란드	339		
		20. 프랑스	355		
		21. 핀란드	379		
		22. 헝가리	399		
4. 중동		5. 아프리카		6. 러시아·CIS·대양주	
01. 모로코	1	01. 가나	1	01. 러시아	1
02. 사우디아라비아	29	02. 나이지리아	25	02. 벨라루스	27
03. 아랍에미리트	51	03. 남아프리카공화국	45	03. 아제르바이잔	47
04. 알제리	79	04. 모리셔스	71	04. 우즈베키스탄	63
05. 오만	99	05. 모잠비크	87	05. 우크라이나	85
06. 요르단	123	06. 세이셸	111	06. 카자흐스탄	105
07. 이라크	149	07. 수단	131	07. 키르기스스탄	123
08. 이란	169	08. 에티오피아	149	08. 뉴질랜드	143
09. 이스라엘	189	09. 우간다	173	09. 호주	157
10. 이집트	209	10. 짐바브웨	197		
11. 카타르	233	11. 케냐	221		
12. 쿠웨이트	249	12. 코트디부아르	247		
13. 터키	269	13. 탄자니아	269		
14. 튀니지	293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 현지 IP-DESK 전문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지원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신청기업	출원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신청
KOTRA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사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 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사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 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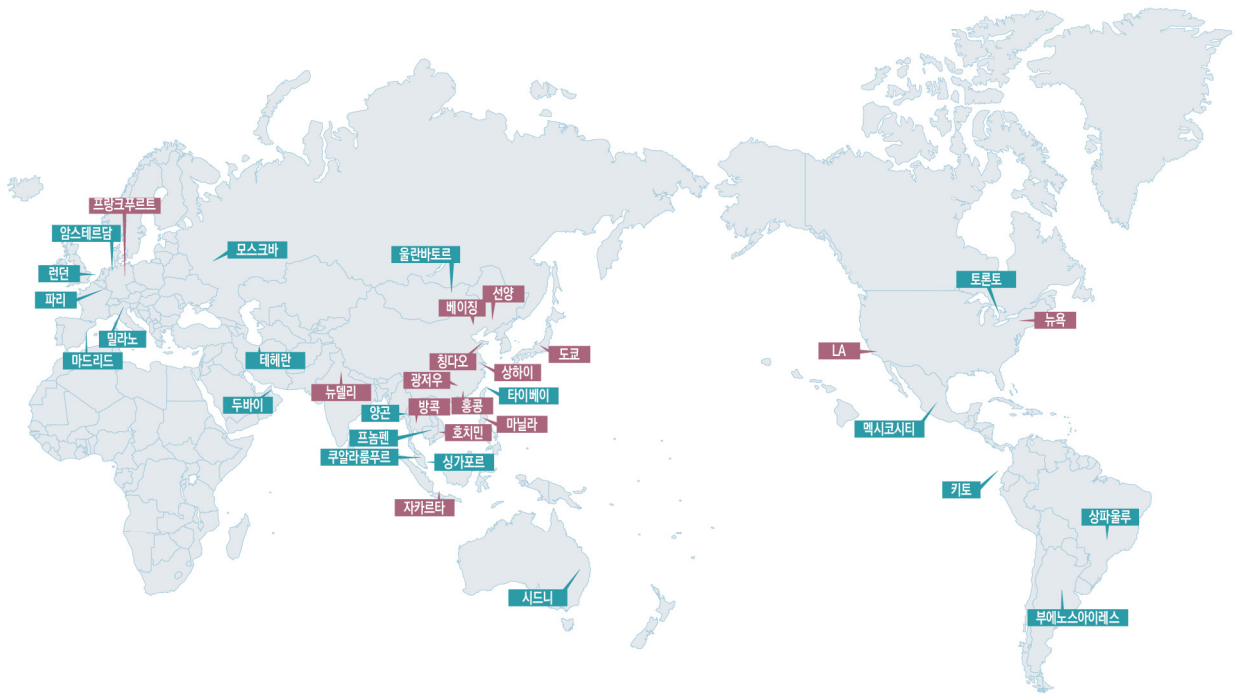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 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9개국 15개소  
●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수행 : 20개국 20개소

###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뉴욕	1-646-918-5594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일본	도쿄	81-3-6273-4638
태국	방콕	66-2-035-1558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상하이	86-21-5108-8771(118)
		86-21-5108-8771(116)
	칭다오	86-532-8388-7931(209)
	광저우	86-20-2208-1600(1405)
	선양	86-24-3137-0770(813)
	홍콩	852-3465-2921

###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KOTRA자료 20-239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5. 아프리카

---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발행일 : 2020년 12월  
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전화 : 02-3459-3357/3359  
작성기관 : 법무법인(유한) 다래  
홈페이지 : www.kotra.or.kr

---

**ISBN** 979-11-6490-572-0 (94320)  
979-11-6490-573-7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